



한 · 중 · 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李彰洙 · 朴芝賢 · 金鎔澤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주관연구기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협력연구기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한 · 중 · 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 · 중 · 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李彰洙 · 朴芝賢 · 金鎔澤

주관연구기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협력연구기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발 간 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지역주의는 1990년대에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후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현재 GATT/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수가 180건에 달하며,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EU가 2004년 5월 10개국의 신규회원을 받아들임으로써 25개국의 회원을 지닌 경제통합체로 확대되었으며, 미주에서는 북미와 중남미 34개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추진 중에 있어 또 하나의 거대한 무역블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세계경제의 1/5을 차지하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차원에서의 어떠한 지역무역협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부터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간 FTA에 관한 협동연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해인 2003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참여하여 한·중·일 FTA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4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도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중·일 FTA의 국내 산업별 파급효과와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의 연구를 보완하는 한편 한·중·일 FTA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중·일 FTA가 한국 제조업과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분석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제시되는 한편, 지난 2년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던 한·중·일 FTA가 한국 서비스부문에 주는 시사점도 연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농업 및 서비스 관련 3권의 보고서가 발간되며, 이 보고서들 외에도 2005년도 총괄보고서에는 한·중·일 FTA의 한국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가 분석되고 수산업 부문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FTA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면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영문 총괄보고서에서는 총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진행된 본 협동연구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13개 연구기관 연구진 외에도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집필 및 심의자로 참여 하였습니다. 본 협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협동연구 추진과정에서 이환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 및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의 노고가 컸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협동연구 보고서들이 한국의 FTA 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崔松和

2005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보고서 시리즈 번 호	보고서 제목	책 임 집필기관
05-01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5-02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5-03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5-04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5-05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서 언

본 연구는 ‘한·중·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입니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중·일 FTA 협동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중·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에서는 1,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중·일 FTA의 영향 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중·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농업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의 영향과 시사점)를 분석·평가하고 농업부문 대외경제정책의 장기적 방향 등 한국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FTA 연구는 FTA의 특화전개 효과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민감 품목을 선정하고 농업피해액(산출 및 소득 감소액)을 계산한 후,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FTA 경험을 볼 때 FTA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고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교열위 농업 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시장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FTA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의 농업은 NA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면서 NAFTA 이후 교역, 생산 및 재배면적 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칠레 FTA 등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정책자금이 예상보다 적은 수의 농가가 신청하여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특화전개보다는 FTA 회원국간 무역량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까지 포함하여 모든 산업이 FTA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접근방식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한·중·일 FTA에서도 특화전개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인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며, 비교열위 농산물이 붕괴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론, 경험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FTA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을 시도하고, 한·중·일 FTA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FTA 효과로 특화전개와 함께 무역량 증가를 전제하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총 7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중·일 FTA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중·일 FTA 관련 국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후 FTA 추진시 협상논리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원의 이창수 연구위원, 박지현 전문연구원과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도움을

준 본원의 송유철 연구위원, 정성춘 부연구위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어명근 연구위원, 조규대 전문연구원, 문한필 초청연구원 및 서진교 연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중·일 FTA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추진전략 검토 및 대응전략 마련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李 景 台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중·일 FTA 협동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중·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중·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중·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의 영향과 시사점)를 분석·평가하고 농업 부문 대외경제정책의 장기적 방향 등 한국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쌀을 제외한 완전자유화 시나리오와 함께 민감품목을 인정하는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한국 및 일본의 쌀을 제외하고(한국의 경우 쌀협상 결과 반영, 일본의 경우 GTAP 기준연도에서의 관세화유에 반영) 양국 모두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중국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하여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 및 일본은 곡물, 채소·과일, 기타작물 등 고관세품목에서 70%의 관세 삭감, 쌀 부문은 양허 제외, 기타품목은 무세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CGE 정태모형(시나리오 ST-1, ST-2)과 자본축적모형(시나리오 CA-1, CA-2)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한·중·일 FTA로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농업품목(쌀 제외)은 곡물, 기타작물 및 과일·채소 등이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중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 및 일본에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곡물은 정태모형에서 43.03%,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47.26%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작물은 정태모형에서 15.54%, 자본축적모형에서 15.84%, 과채류의 경우는 정태모형에서 4.04%, 자본축적모형에서 3.60% 감소하고 있다. 현재 WTO DDA 농업협상에서는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거나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가 도입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한·중·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 감소는 CGE 결과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유사할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중·일 FTA의 경우 농업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력(RCA, TSI)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이다.

시나리오 1에 따른 농업부문의 산출액 감소, 즉 피해규모를 보면 그 규모가 예상보다 미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생산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곡물(약 8억 1천만~8억 9천만 달러), 기타작물(약 6억 3천만 달러) 및 과일 및 채소(약 4억 7천만~6억 1천만 달러 수준) 등이다. 이 세 품목에서의 산출액 감소는 정태모형에서 약 21억 달러 수준에 이르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약 19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육류 및 기타가공식품의 산출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정태모형에서는 각각 5억 3천만 달러, 17억 달러의 생산액 증가가 있으며,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는 각각 6억 1천만 달러, 20억 달러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예상보다 미미하다.

다음으로 FTA 시나리오에 따른 거시경제효과를 살펴보면, 한·중·일 FTA로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쌀 제외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의 GDP는 수량기준으로 정태적으로는 0.47%, 동태적으로는 3.52% 증가(금액기준으로는 정태적으로 2.29%, 동태적으로는 4.54% 증가)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수량기준으로 각각 0.04% 및 0.88% 증가(금액기준으로는 각각 -0.04% 및 0.69% 증가)하며, 일본의 경우는 수량기준으로 각각 0.01% 및 0.22% 증가(금액기준으로는 각각 1.43% 및 1.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 시장규모가 큰 나라 쪽으로 산업특화가 발생하는 경향)보다 제품의 생산지역 특성(동종제품의 국가간 이질성)에 따라 발생하는 아밍턴 효과가 한·중·일 FTA에서 지배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한·중·일 FTA로 한국은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 확대되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향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FTA 결과 무역특화 효과보다 교역량증대 효과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NAFTA 10년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NAFTA 체결 이후 경쟁력을 반영한 특화가 진전되었다기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즉 경쟁력 및 비교우위 취약품목군에서도 FTA 이후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교열위 농업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시장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FTA의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부분균형분석에 기초한 비관적 견해와 달

리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단, 한·중·일 FTA의 경우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국내 산업간 자원이동의 유인이 크며, 이에 따라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할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CGE 분석 및 NAFTA 10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결국 FTA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무역변화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반영하여 특화가 전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전자를 압도하게 된다.

무역패턴 변화에 따라 특화가 전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의 국내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경쟁력 없는 취약품목은 수입수요 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략으로 한·중·일 FTA 협정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품목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겠다. 한·중·일 FTA 체결 이후에는 한·중·일 FTA로 타격을 받은 취약산업을 보상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군에 대해서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의 특화전개 효과를 가정한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역량증대 효과에 대비하는 정책적 구상일 것이다. 한·중·일 FTA로 회원국간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중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산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FTA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차별화 전략을 거론할 수 있겠다. 국산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재화로, 또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아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품질·한국특유 농산물을 중국의 고급 농산물 수요시장 및 일본의 틈새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재배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가공 후 한·중·일 역내 시장에 재수출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특화전개 대응전략 및 무역량 증가 대응전략이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패턴 변화 및 무역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한·중·일 FTA의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예상되는 한·중·일 FTA의 두 가지 직접적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직접적 대응전략만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완료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및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흐름 속에서 한·중·일 FTA 대응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농외소득 비중을 증가시키고 전 국민적 합의하에 농업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가는 대응책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총 7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응전략은 역시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이다. 한·중·일 FTA 협상전략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화 또는 다년간 협상수준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5장 및 부록 3에 상술. 관세철폐에서 제외해야 할 초민감품목으로 미곡을,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감축 예외 또는 최소 감축을 추진해야 할 고민감품목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를, 그리고 관세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을 추진해야 할 민감품목으로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옥수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 체결 이후에는 무역 자유화로 타격받은 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6장 1

절에 상술).

두 번째 전략은 농업 품목 중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나 산업내 무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협상안에 반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6장 3절에 상술).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 상위품목인 당류, 면류, 주류, 사탕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고, 유제품, 인삼류 등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 수출 상위품목인 채소류(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와 축산물(돼지고기 등)에 대한 친환경·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대응전략은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이다. 중국에 FDI 형태로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일본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네 번째 대응전략은 친환경·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이다(6장 4절에 상술). 국내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선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측면은 물론 원산지표시제 및 성분검사 등 유통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노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리 농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감 유지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화다.

나머지 세 가지 대응전략은 한·중·일 FTA의 직접적 결과를 넘어서는 농업 구조조정 및 농촌대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다.

다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외소득 증대방안이다(6장 5절에 상술). 농가소득의 절반이 농업소득이며, 다시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소득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 비중이 큰 특징을 갖는다. 쌀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10%, 농외소득 비중이 9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농외소득이 소

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농산물개방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작다. 우리나라도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FTA 농업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민 및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혁신체 창출이다. 현재 농민은 한편으로는 UR 이후 농업개방 경험에 근거하여 개방농정에 대해 정부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농업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농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민 및 정부는 정부지원정책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농산물 수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농민에 대한 단기적이고 선택적인 피해보상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농민의 장기적·잠재력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도리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와 영리적 현실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민이며, 그 역할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농민의 책임감을 복돋우고 혁신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농민단체도 대정부 협상으로 보상을 극대화하는 역할에서 농업 기업가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가공·수출하는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응전략은 농업개방 예시제다. 과거 제조업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방스케줄을 공표한 바 있다. 기업은 이에 맞추어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 개방체제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 및 속도를 공표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창의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WTO DDA 협상 결과 및 고령농 자연은퇴 전망, 그리고 사회보장성 예산확충 전망을 고려하여 품목별 개방시점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된 시점보다 더 빨리 개방하여 농가피해가 발생한다면 취약산업 피해보상대책에 근거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발간사	1
서언	5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27
제2장 한 · 중 · 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35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36
가. 국별 생산성	36
나. 농업교역 구조	38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45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54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54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62
제3장 한 · 중 · 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67
1. 선행연구 결과	68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69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69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72
다. 한·중·일 FTA와 한·중 및 한·일 FTA의 차별성	74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78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78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84
4. 한·중·일 FTA와 한·중 및 한·일 FTA 비교	93

제4장 한·중·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98
2. 이론적 고찰	99
가. 전통적 무역이론	99
나. 산업내무역 이론	100
3. NAFTA 10년의 경험	103
4.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106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111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111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113

제5장 한·중·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119
가. 제1단계	121
나. 제2단계	121

다. 제3단계	122
라. 제4단계	123
마. 제5단계	124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125
가. 한·중 FTA	126
나. 한·일 FTA	129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131

제6장 한·중·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35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136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136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137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138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144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146
2. 농업 구조조정	150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150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151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153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157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157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159
4. 친환경·고품질 차별화전략	169
5. 농외소득 증대방안	173

가. 농외소득 실태	173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175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79

1.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180
가. 시나리오	180
나. 거시경제효과	180
다. 생산변동	181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182
마. 한·중·일 FTA와 한·중 및 한·일 FTA의 차별성	183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184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184
나. 한·중·일 FTA의 7대 대응전략	186
다. 민감품목 선정	187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188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188
나. 수출경쟁력 강화	191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192
라. 친환경·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192
마. 농외소득 증대	193
바. 경영혁신체 창출	195
사. 농업개방 예시제	196

참고문헌 197

부록	203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204
부록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209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231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246
 Executive Summary	 279



표 차례

표 2-1.	한·중·일 농업생산성 비교	37
표 2-2.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 현황	39
표 2-3.	주요 대중 적자품목 및 대일 흑자품목	44
표 2-4.	역내 농업부문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2001~03년)	51
표 2-5.	한·중·일 주요 경쟁력지표(2001~03년)	53
표 3-1.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표	83
표 3-2.	한·중·일의 산업별 실행관세율(GTAP Data)	84
표 3-3.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효과	87
표 3-4.	한·중·일 FTA에 따른 생산변동(자본축적모형)	89
표 3-5.	한·중·일 FTA에 따른 산출액 변화	91
표 3-6.	한·중·일 FTA에 따른 교역변화(시나리오 1)	92
표 3-7.	FTA별 거시경제효과 비교(농산물 및 축산물 50% 관세인하 효과) ..	94
표 3-8.	FTA별 생산액 변화 비교(농산물 및 축산물 50% 관세인하 효과) ..	95
표 5-1.	RCA_j^k 값에 따른 품목군 분류기준	121
표 5-2.	제2단계에 의한 변화	122
표 5-3.	제3단계에 의한 변화	123
표 5-4.	제4단계에 의한 변화	124
표 5-5.	각 단계별 품목군 변화(HS 4단위)	125
표 5-6.	한·중 제1품목군(강경쟁력 후보품목)	126

표 5-7. 한·중 제2품목군(경쟁력 약품목)	127
표 5-8. 한·중 제3품목군(민감품목)	128
표 5-9. 한·중 제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129
표 5-10. 한·일 제1품목군(강경쟁력 후보품목)	130
표 5-11. 한·일 제2품목군 및 제3품목군(경쟁력 약품목 및 민감품목)	131
표 5-12.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132
표 5-13.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132
표 5-14.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133
표 5-15. 민감품목 분류	133
표 6-1. 국내보조 사용 현황	140
표 6-2. 사용 가능한 국내보조 규모(예상치)	142
표 6-3. 휴경·생산중립 기준 비교	144
표 6-4. 농가 계층분화 동향	150
표 6-5. 쌀농업의 경영규모별 임차지 비율 변화	151
표 6-6. 대상품목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구분	162
표 6-7. 경쟁력 수준에 따른 대책 구분	163
표 6-8.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172
표 6-9. 농가소득 추이와 도농간 소득격차	174
표 6-10. 농외소득 추이	174
표 6-11. 한국·일본·대만의 농외소득 비율	175
표 7-1. 민감품목 선정	188



부표 차례

부표 2-1. 시나리오별 채소류 소득 추정	218
부표 2-2. 시나리오별 과일소득 추정	220
부표 2-3. 시나리오별 축산소득 추정	221
부표 2-4.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 추정	225
부표 2-5. 대일 농산물 수출품목별 유형과 향후 전망	229
부표 3-1. 동시다발적 FTA하에서의 민감품목 선정기준	233
부표 3-2. 민감품목 분류	234
부표 3-3. 한·중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 비교	235
부표 3-4. 한·중·일 농산물 RCA 지수(1997~2002년)	236
부표 3-5. 한·중·일 수출 RCA 지수에 의거한 한국농산물 민감품목	236
부표 3-6.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237
부표 3-7. 주요 수입농산물의 중국산 비중과 수입형태	240
부표 3-8. 주요 품목의 양허관세율(2004년)	241
부표 3-9.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242
부표 3-10.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243
부표 3-11. 품목별 지역집중도(2000년)	243
부표 3-12. 민감품목 분류	244
부표 3-13. 주요 품목별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	245
부표-1. 한·중·일 농산물 RCA 지수(1997~2002년)	270

부표-2. 한·중·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 결과 비교	271
부표-3. 중국산 수입금지 식물	272
부표-4. 중국산 축산물 수입금지 품목	273
부표-5. 일본산 수입금지 식물	274
부표-6. 일본산 축산물 수입금지 품목	275



글상자 차례

글상자 6-1. WTO 농업협정하의 국내보조정책 유형	139
글상자 6-2.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144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 농업수출의 대한민국 수출총액 비중	40
그림 2-2. 한국의 중국 농업제품 수입비중	41
그림 2-3.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41
그림 2-4. 한국의 대일 무역흑자(농업)	42
그림 2-5. 한국 농산물 수출의 대일 수출총액 비중	43
그림 2-6.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축산 RCA)	46

그림 2-7.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농산물 RCA)	47
그림 2-8.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 가공식품 RCA	47
그림 2-9.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축산 TSI)	48
그림 2-10.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농산물 TSI)	49
그림 2-11.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가공식품 TSI)	49
그림 3-1. CGE 모형 체계: 1국, 2부문, 2요소	77
그림 4-1. FTA 파급효과 및 이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107
그림 6-1. Blue Box 적용 방식(휴경 방식)	143
그림 6-2. 농가소득보전대책(직접지불 형태)	145
그림 6-3. 기준 소득과 보호 수준	145
그림 6-4.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예산업 경쟁력제고 방향	164
그림 6-5.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169
그림 6-6.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체계	170
그림 6-7.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171



부그림 차례

부그림 2-1. KREI-ASMO 구조 개요	210
부그림 2-2. KREI-ASMO 재배업부문 모듈 기본구조	211
부그림 2-3. KREI-ASMO 축산부문 모듈 기본구조	211
부그림 4-1. 절대무역량 변동	250

부그림 4-2. 미국의 무역액 상대적 비교(NAFTA 회원국과 비회원국)	250
부그림 4-3. 미국과 NAFTA 회원국 간 무역점유율 변화	251
부그림 4-4. 무역성장률 비교	252
부그림 4-5.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가축류)	254
부그림 4-6.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가축류)	254
부그림 4-7.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가축류)	255
부그림 4-8.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가축류)	256
부그림 4-9.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육류)	257
부그림 4-10.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육류)	258
부그림 4-11.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육류)	258
부그림 4-12.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육류)	259
부그림 4-13.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곡물류)	260
부그림 4-14.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곡물류)	261
부그림 4-15.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곡물류)	261
부그림 4-16.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곡물류)	262
부그림 4-17.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채소류)	263
부그림 4-18.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채소류)	263
부그림 4-19.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채소류)	264
부그림 4-20.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채소류)	265
부그림 4-21. 미국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채소류)	265
부그림 4-22.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과일류)	266
부그림 4-23.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과일류)	267
부그림 4-24.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과일류)	267
부그림 4-25.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과일류)	268

부그림 4-26. 미국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과일류)	269
부그림-1.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1차산업 RCA)	276
부그림-2.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축산 RCA)	276
부그림-3.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농산물 RCA)	277
부그림-4.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가공식품 RCA)	277
부그림-5.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1차산업 TSI)	278
부그림-6.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축산 TSI)	278

제1장 서론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세계경제의 1/5을 차지하는 핵심지역이다. 자본과 기술의 일본, 풍부한 노동력과 커다란 잠재시장을 보유한 중국, 개발경험과 역동성의 한국, 이들 3국간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시장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한·중·일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에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세와 각종 비관세조치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경쟁이 제한되어 왔던 중국 및 일본산 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개방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여부는 우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요 농산물의 수입가능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어명근 외 2004).

한·중·일 FTA의 거대한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체제상의 차이,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와 한국 및 일본에서의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강한 반발이 국민경제 전체의 잠재적 이익극대화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한·중·일 FTA의 실현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과 최근 급격히 제고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부문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중·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 생산구조 및 구조의 변화, 생산성, 그리고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중·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중·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중·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를 분석·평가하고 농업부문 대외경제정책의 장기적 방향 등 한국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1, 2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한 3국의 농업경쟁력 정성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한·중·일 FTA에 따른 대응전략(한국 농업의 수출증대방안 및 고부가가치화 등 대내적 농업 구조조정)과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농업소득·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 농업 세부품목에서의 민감품목 선정 등이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중점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요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심사항은 과연 FTA로 무역장벽에 의해 지연되었던 산업특화 혹은 품목특화가 빠르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다.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서 수입재가 급증하고 국내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특화가 전개된다. 이 경우 대중국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농업은 한·중·일 FTA로 큰 타격이 예상되며, 농업문제가 FTA 협상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기존의 FTA 연구는 FTA의 특화전개 효과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농업피해액(산출 및 소득 감소액)을 계산한 후,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FTA 경험을 볼 때, FTA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고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교열위 농업 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시장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FTA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 농업은 NA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면서 NAFTA 이후 교역, 생산 및 재배면적 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칠레 FTA 등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정책자금의 예상보다 적은 농가 신청으로 소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특화전개보다는 FTA 회원국간 무역량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까지 포함, 모든 산업이 FTA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론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FTA에 의한 관세 혹은 비관세 형태의 무역장벽 철폐는 회원국간의 무역량을,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무역량보다 크게 증가시키면서, 특히 소규모 국가의 시장접근을 확대시켜, 비교열위 품목일지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동 이론이 옳다면 한·중·일 FTA에서도 특화전개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인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며, 비교열위 농산물이 붕괴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이론 및 시사점의 근본적 차이는 결국 중국산 쌀과 한국산 쌀이 동질적인 단일재화인지 이질적인 다른 재화인지에 대한 소비자선호 체계에 대한 가정의 차이인데, CGE 모형에서는 불완전 대체성(아밍턴 가정)으로 이를 개념화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후자의 이론에 근거하여 FTA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을 시도하고, 한·중·일 FTA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의문사항으로 한·중·일 FTA의 농업개방 효과와 한·중 FTA 및 한·일 FTA 개별효과의 합계와의 유사성 또는 차별성 여부다. 부분균형분석의 경우 분석체계상 양자의 효과를 차별화하기 힘들며, 결국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중 FTA 농업개방의 부정적 효과에 의해 압도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체계에서는 한·중·일 농업개방에 의해 새로이 균형에 도달하는 균형조건체계(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및 환류효과 반영)와 한·중 FTA 및 한·일 FTA에 의해 도달하는 균형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한·중 FTA 및 한·일 FTA의 균형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중·일 FTA와 한·중 FTA 및 한·일 FTA의 합계 두 경우는 비교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한·중, 한·일 및 한·중·일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분석틀 및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볼 때,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액이 다른 FTA와 비교한 상대적 평가에서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세 번째 관심사항은 한·중 및 한·일 교역구조의 특성 파악 및 FTA시 민감품목의 선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32개 주요 교역 농산물 품목 및 HS 4단위 농업 186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국 교역의 특성 및 민감품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에서 상품양허시 해당상품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적인 양허안을 낸다. 국내적으로 민감도가 큰 농산물의 경우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안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5장에서 무역실적 비교우위(RCA)지수, 양국간 무역특화지수(TSI), 한국 수입시장점유율 등 무역지수를 가지고 민감품목을 선정하고자 한다(부록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국내 농업현실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결과를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관심사항은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FTA 체결에 따른 취약산업에 대한 대응전략은 크게 국경대책(대외협상부문)과 국내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경대책으로는 피해가 매우 큰 민감품목을 협상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는 방안, 동식물 검역체계 구축 및 관세인하를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

이행기간을 차등적용하는 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내대책으로는 소득보전직불제, 소득안정보험 등 소득보전대책, 탈농 및 작목전환, 규모화·특정계층의 선별 육성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 단수 등 생산성 제고대책과 생산비 절감대책, 품질차별화·브랜드화·친환경생산대책 등 경쟁력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FTA의 특화전개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FTA 효과로 특화전개와 함께 무역량 증가를 전제하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총 7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1 참고).

첫 번째 대응전략은 역시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상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전략은 농업품목 중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나 산업내 무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협상안에 반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응전략은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이다. 중국에 FDI 형태로 진출, 계약재배한 후 중국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일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네 번째 대응전략은 친환경·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이다. 국내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선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측면은 물론 원산지표시제 및 성분검사 등 유통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 대응전략은 FTA의 직접적 결과를 넘어서는 농업 구조조정 및 농촌대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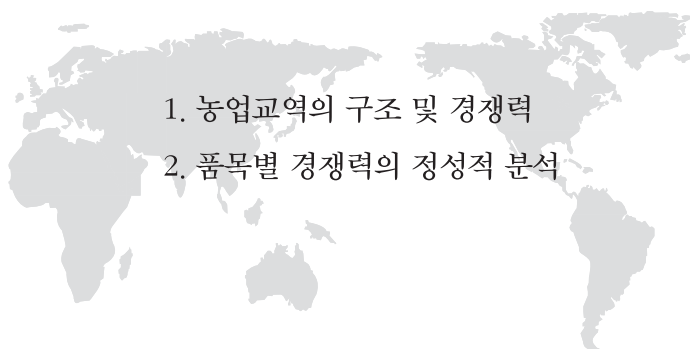
다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외소득 증대방안이다. 농가소득의 절반이 농업소득이며, 다시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소득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민 및 농민단체

가 주체가 되는 경영혁신체 창출이다. 마지막 대응전략은 농업개방 예시제다. 과거 제조업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방스케줄을 공표한 바 있다. 기업은 이에 맞추어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 개방체제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 및 속도를 공표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창의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표된 시점보다 더 빨리 개방하여 농가피해가 발생한다면 취약산업 피해보상대책에 근거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중·일 FTA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중·일 FTA 관련 국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리고 향후 FTA 추진시 협상논리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한·중·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중·일 FTA 협동연구가 이루어졌다.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 생산 구조 및 구조의 변화, 생산성, 그리고 교역구조를 분석하였고,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중·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 1절에서 무역구조 및 경쟁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2절에서는 1, 2차 연도 연구결과의 핵심사항인 품목별 경쟁력에 대한 정성분석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¹⁾

2002년 현재 농업의 토지생산성은 한국이 10a당 853달러로 중국(227달러)은 물론 일본(518달러)보다도 높았다. 농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이 2만 7,377달러로 중국(1,034달러)의 27배, 한국(9,133달러)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1인당 경지면적과 자본액이 중국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인당 농업생산액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 자본생산성은 중국이 1.16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은 0.27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자본장비율(자본/노동 비율)과 자본집약도(자본/토지 비율)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가장 높았기 때문이며, 중국의 경우는 농업부문 GDP에 비해 연말 농가보유 생산적 고정자산가치가 낮았기 때문이다.

1) 1, 2차 연도 연구인 어명근 외(2003, 2004)를 요약한 총괄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표 2-1. 한·중·일 농업생산성 비교

구분	한국		중국 ¹⁾		일본	
	1990년	2002년	1990년	2002년	1990년	2002년
토지생산성(달러/10a)	872.3	853.2	158.6	227	692.7	518.3
자본생산성(달러/달러)	0.70	0.48	0.98	1.16	0.38	0.27
노동생산성(달러/인) ²⁾	6,142	9,133	445	1,034	18,601	27,377

주: 1) 중국의 토지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농업부문 GDP를 각각 경지면적과 연말 농가보유 생산적 고정 자산가치로 나눈 값임.

2) 노동생산성은 농업부문 GDP를 농업 취업자 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연도;

日本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ポケット農林水産統計」, 각 연도;

중국 국가통계국(2002),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농업출판사(1999), 「중국농업통계자료」.

한·중·일 3국의 농업은 규모면에서 영세소농 구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농업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비율이 서로 달라 농업생산성도 국별로 상이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자본절약적·노동집약적 품목, 일본은 자본집약적·노동절약적 품목, 그리고 한국은 자본집약적·토지절약적 품목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이것은 비록 농업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절대우위를 갖고 있지만 자본집약적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우위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토지사용적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호주 등 토지 자원이 풍부한 역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어 동북아 역내 농산물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출범을 계기로 역내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분업과 특화를 통해 시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농촌인구 문제와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농업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농업부문의 노

동생산성이 낮고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외 자본의 농촌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낙후된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농업교역 구조

1) 부문별 농업교역구조

한·중·일 3국간 농업교역의 특징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만성적인 수출 초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대중 농산물 무역은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한·일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03년 기간 한국의 중국산 농업부문 수입총액은 평균 13억 9천만 달러로 1996~97년 기간 평균 8억 5천만 달러의 수입액에 비해 1.6배 증가한 반면, 수출은 2001~03년 기간 평균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대중국 무역적자가 1997~98년 기간 평균 약 8억 달러에서 2001~03년 기간 평균 12억 8천만 달러로 역시 1.6배 증가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일 농업부문 교역실적을 살펴보면, 2001~03년 기간 평균 수출은 8억 2천만 달러이고 수입은 2억 달러로,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발생한 대중 적자의 48.8%를 보전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부정적 농업파급효과를 일본이 상당수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6~97년 기간 한국의 대일 수출, 수입,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10억 달러, 1억 9천만 달러, 8억 1천만 달러로 대일 교역 및 흑자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다.

중국산 농업제품의 일본 수출액은 절대액 기준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액에 비해

두 배 이상 크며, 한국의 대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종합할 때 중국의 대일 수출이 한국의 대일 수출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 현황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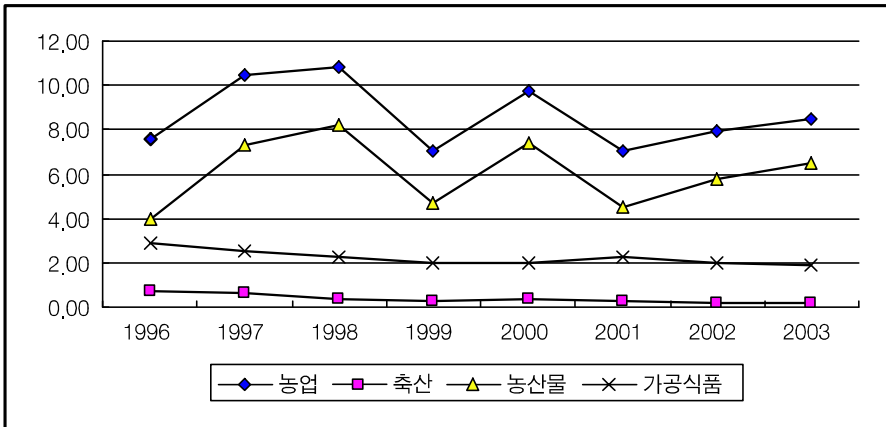
	1996~97년	1998~2000년	2001~03년	1996~2003년
대중 수출				
농업	54,850,758	54,080,919	115,347,691	77,248,418
축산	13,471,017	6,975,138	8,346,616	9,113,412
농산물	9,156,300	12,165,875	31,039,255	18,490,999
가공식품	32,223,442	34,939,907	75,961,821	49,644,008
대중 수입				
농업	853,676,612	847,138,771	1,391,750,130	1,053,002,491
축산	63,838,598	31,849,987	35,326,591	41,150,866
농산물	538,953,235	625,487,760	1,004,814,568	746,101,682
가공식품	250,884,779	189,801,023	351,608,970	265,749,942
대중 무역수지				
농업	-798,825,854	-793,057,852	-1,276,402,439	-975,754,072
축산	-50,367,582	-24,874,849	-26,979,976	-32,037,455
농산물	-529,796,935	-613,321,886	-973,775,313	-727,610,683
가공식품	-218,661,338	-154,861,117	-275,647,150	-216,105,934
대일 수출				
농업	999,481,489	1,047,962,302	822,911,698	951,448,122
축산	240,634,518	244,815,219	7,775,425	154,880,121
농산물	284,218,518	315,086,657	289,816,050	297,893,145
가공식품	474,628,454	488,060,426	525,320,223	498,674,857
대일 수입				
농업	192,914,283	149,190,070	199,373,656	178,939,968
축산	9,557,862	9,882,480	5,151,251	8,027,115
농산물	26,015,796	24,126,394	23,851,178	24,495,539
가공식품	157,340,625	115,181,195	170,371,227	146,417,315
대일 무역수지				
농업	806,567,206	898,772,233	623,538,042	772,508,154
축산	231,076,656	234,932,739	2,624,174	146,853,006
농산물	258,202,722	290,960,263	265,964,871	273,397,606
가공식품	317,287,829	372,879,231	354,948,996	352,257,542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다음으로 농업을 축산(HS01, 02, 04, 05), 농산물(HS06-14), 가공식품(HS15-24)으로 세분하여 역대 교역의 추세변화를 살펴보았다(UN COMTRADE 통계). 중국의 대한민국 전체수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2003년 기간중 평균 8.64% 정도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1996~2003년 기간 중 농산물이 6.04%, 축산물이 0.38%, 그리고 가공식품이 2.2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농산물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중국 농업수출의 대한민국 수출총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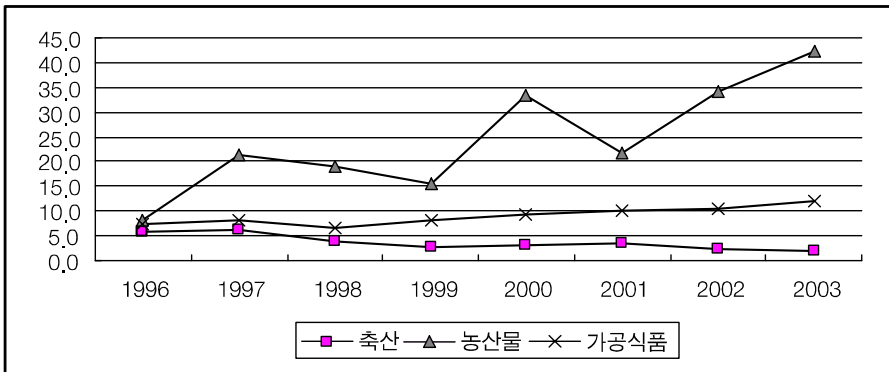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한국의 농업 수입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2001~03년 기간 중국 농산물(HS06-14)의 수입시장점유율은 평균 32.6%(2003년 42.2%) 정도이고, 가공식품의 수입시장점유율은 10.83%(2003년 11.9%)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우려할 만한 것은 중국 수입의존도가 축산을 제외하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그림 2-2 참고). FTA 추진시 농업, 특히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는 한 중국으로부터의 농업 수입이 급증하여 무역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는 물론 전체적으로 대중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2001~03년 기간 평균 농산물 9억 7천만 달러 및 가공식품 2억 8천만 달러), 대중국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FTA시 차별화된 고가품 수출 등 이 부문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2-2. 한국의 중국 농업제품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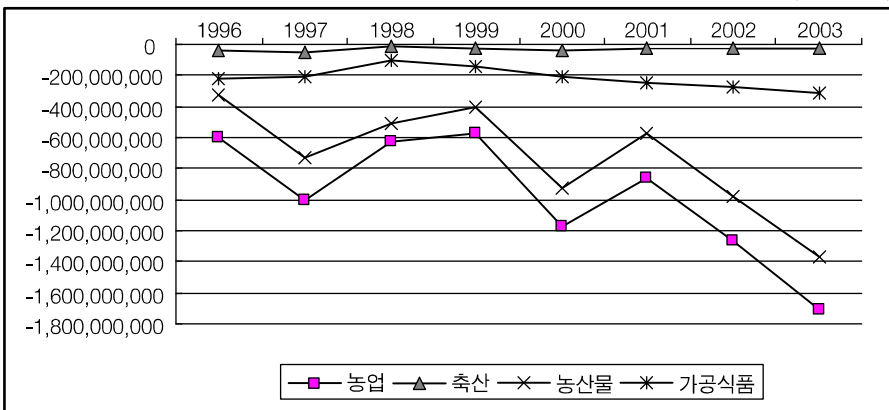
(단위: %)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그림 2-3.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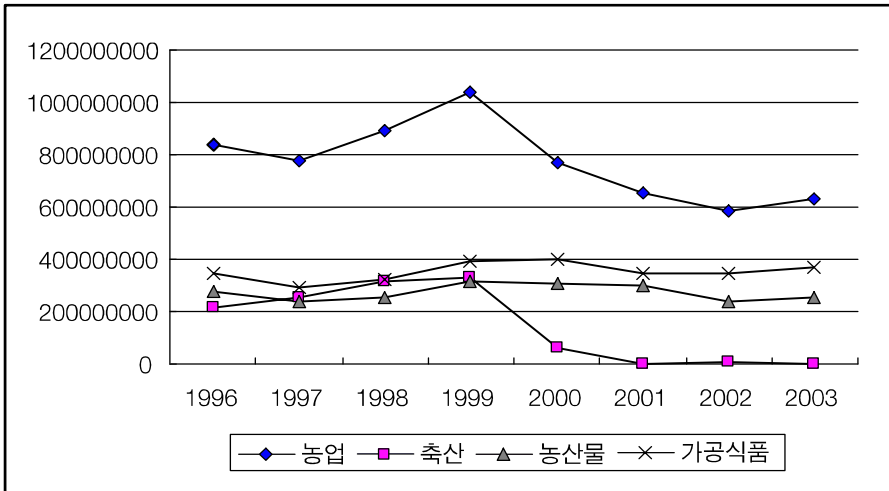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다음으로 한·일 농업교역을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농산물 부문, 가공식품 부문이 2001~03년 기간 평균 각각 2억 7천만 달러 및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농산물의 무역수지는 2002년부터 정체상태에 있으며, 오직 가공식품의 흑자규모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그림 2-4 및 그림 2-5 참고). 따라서 한·중·일 FTA시 가공식품 부문의 수출을 극대화하고, 농산물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고가품을 수출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2-4. 한국의 대일 무역흑자(농업)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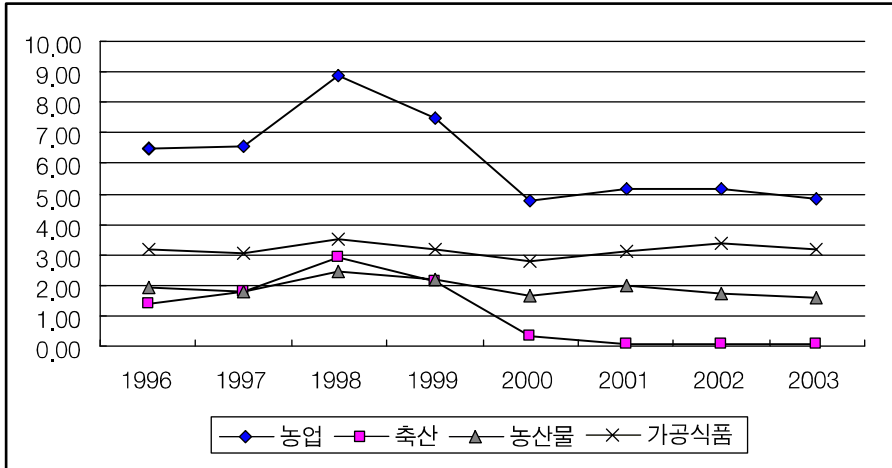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2) 32개 주요 교역품목의 교역구조 변화

농업부문(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품목 32개(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우유, 계란, 천연꿀, 감자,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고구마, 바나나, 감귤, 포도, 수박, 사과 및 배, 복숭아, 커피, 차, 생강, 밀, 보리, 옥수수, 쌀, 대두, 땅콩, 인삼, 식물성유, 담배)로 정리하고 주요 대중 적

그림 2-5. 한국 농산물 수출의 대일 수출총액 비중

(단위: %)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자품목 및 대일 흑자품목을 표로 작성하였다(표 2-3 참고).

32개 품목 중 대중 무역적자가 2001~03년 기간 평균 3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총 11개다. 이 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품목은 옥수수(6억 1천만 달러), 밀(6,400만 달러), 인삼(3,100만 달러), 무(2천만 달러), 양파(1,100만 달러) 순이다. 관세화 유예품목인 쌀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1996~97년 기간 평균 약 3백만 달러의 수입이 있었으며, 한·중 농업협상에서 쌀은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의 경우 우리 농업소득의 51.6%, 전체 농가소득의 20.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장 큰 대중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품목은 커피, 사과·배, 차 등이다.

32개 품목 중 대일 무역흑자가 2001~03년 기간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토마토(900만 달러), 오이(약 700만 달러), 인삼(약 600만 달러), 닭고기(약 300만 달러), 수박 및 감귤(각각 200만 달러) 등 총 8개 품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1996~99년 기간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의 대일 무역흑자를 보이던 최대 수출품목이었으나 2000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수출 격감으로 이후 주요 수출품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일 농업협상에서 돼지고기 수출 재개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협상에서 일본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담배 및 식물성유 정도다. 담배의 경우 대일 무역수지는 1996~97년 기간 7천만 달러의 적자를

표 2-3. 주요 대중 적자품목 및 대일 흑자품목

(단위: 달러)

	1996~97년	1998~2000년	2001~03년
주요 대중 무역적자품목			
옥수수	-245,195,712	-377,544,821	-614,409,992
밀	-1,085	-842,208	-63,586,237
인삼	-59,144,263	-34,722,489	-31,169,646
무	-201,236	-10,151,445	-20,327,604
양파	-7,477,772	-6,117,230	-10,514,354
대두	-803,232	-6,345,426	-8,692,909
산동물	-3,580,944	-2,424,653	-6,192,405
식물성유	-8,149,678	-2,394,683	-5,925,351
닭고기	-26,124,203	-2,711,949	-5,135,025
담배	1,708,481	1,578,557	-3,853,125
생강	-1,879,467	-895,577	-3,788,780
쌀	-2,829,424	-673,267	-754,208
주요 대일 무역흑자품목			
토마토	1,076,510	15,192,019	9,349,088
오이	4,010,055	8,201,337	6,662,621
인삼	16,156,790	5,928,521	5,807,794
닭고기	73,240	304,195	2,619,515
수박	372,161	2,075,670	2,252,186
감귤	115,860	3,339,899	1,908,088
낙농품(우유)	-670,411	575,329	1,482,695
배추	117,641	4262,008	1,341,846
돼지고기	224,847,481	230,486,202	1,586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보였으나, 2001~03년 기간 평균 적자규모는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식물성유의 경우는 2001~03년 기간 평균 1,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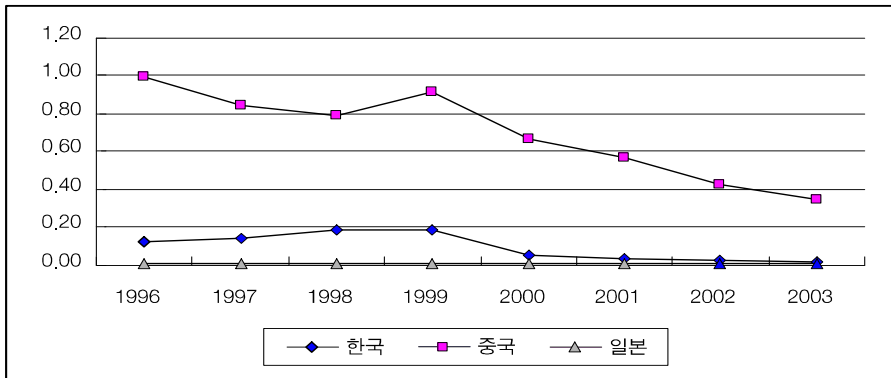
농업경쟁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완전한 지표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보조금, 관세율, TRQ(tariff-rate quota)에 따라 가격 및 수량이 왜곡된 상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나 경쟁력관련 각종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각국 농업의 경쟁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책적·전략적 목표에 따라 일부 교역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여 향후 다자간협상에 대비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내 농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경쟁력 지표를 계산하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이유로 사후적으로 포착되는 교역통계가 완전한 자유경쟁 환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관세율, TRQ, 비관세장벽 또한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교역통계는 어느 경우에도 사후적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경쟁력 지표에 근거하여 자유화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사실 관세율 수준으로 평가한 농업품목의 경쟁력과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한 경쟁력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기술적인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한·중·일 농업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부문별 경쟁력 변화

무역실적 비교우위지수(RCA 지수)²⁾로 평가한 한국, 중국, 일본 농업(1차산업)의 대세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크고, 한국 및 일본은 경쟁력이 199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1999년 RCA 1.0, 2003년 RCA 0.6). 부문별로 살펴볼 때 이러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축산물이다(그림 2-6 참고). 농산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의 RCA 지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1999년 1.2를 기록한 후 2001~03년 기간 0.8의 대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과 일본의 RCA 지수는 2003년에 각각 0.11과 0.03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고).

그림 2-6.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축산 RCA)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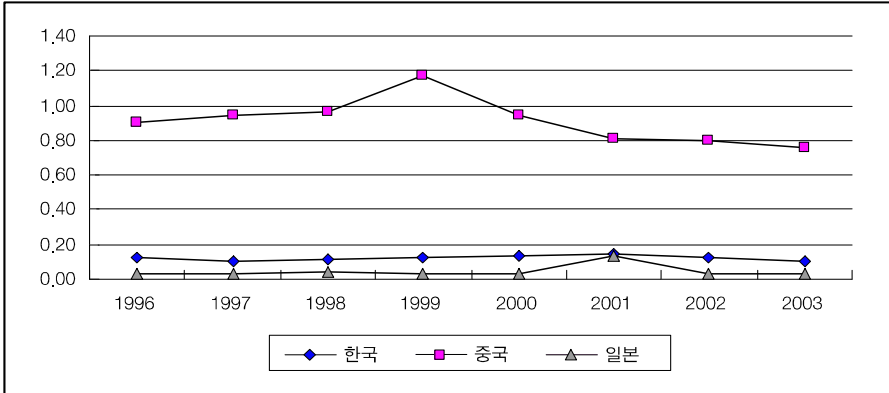
- 2) 무역실적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지수)는 한 나라의 품목별 비교우위 정도를 사후적으로 나타난 각 품목의 상대적인 수출비중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특정품목의 세계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세계 총수출에서 그 나라의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특정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낸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CA_i^k = (X_i^k / X^k) / (X_i / X)$$

(X_i^k = i 국의 k 품목 수출액, X^k = k 품목의 세계전체 수출액, X_i = i 국의 전산업 수출액, X = 산업의 세계전체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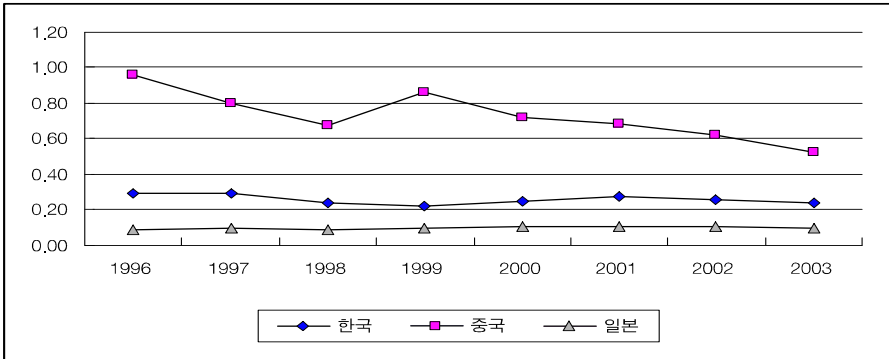
RCA 지수는 정의상 한 나라의 특정품목의 세계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을 그 나라 총수출의 세계 총수출의 비중에 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RCA가 1보다 크면(혹은 작으면) 그 품목의 수출에서 비교우위(혹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7.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농산물 RCA)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그림 2-8.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 가공식품 RCA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무역특화지수(TSI)³⁾를 사용하여 한·중간, 한·일간 수출입 지향 정도, 즉 상

- 3)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는 한 나라가 특정품목의 국제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X_{ij}^k , M_{ij}^k 를 각각 i 국(미국)의 j 국(한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타낸다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

$$TSI_{ij}^k = |X_{ij}^k - M_{ij}^k| / (X_{ij}^k + M_{ij}^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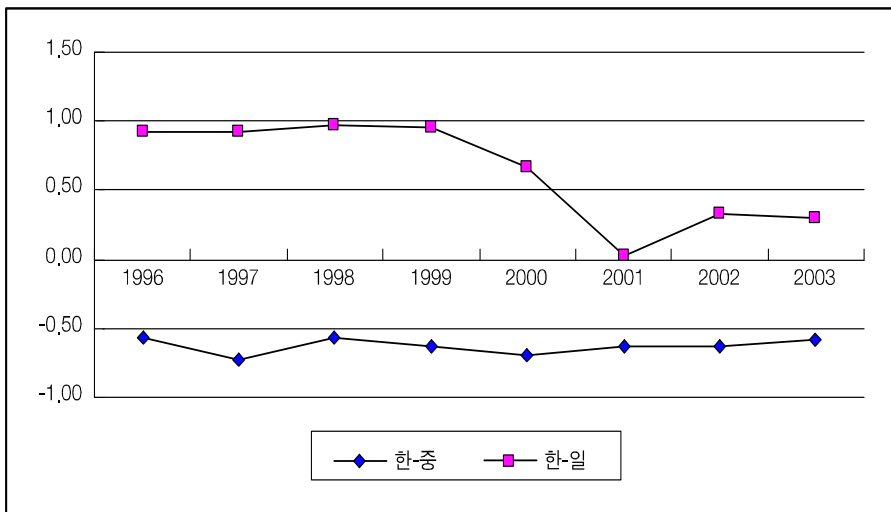
교역상대국이 해당품목의 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출(수입) 지향적일수록 지수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수입 지향적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대적 경쟁력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 전체의 경우 한·중간 TSI는 2001~03년 기간 -0.85로 아주 강한 대중 수입지향성을, 그리고 한·일간 TSI는 0.62로 강한 대일 수출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문별로 볼 때 농산물이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중간 및 한·일간 TSI는 2001~03년 기간 각각 -0.94 및 0.85로 아주 강한 대중 수입지향성 및 강한 대일 수출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10 참고).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소 차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 수출지향성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TSI = 0.5), 대중 수입지향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FTA 이후 가공식품 분야에서 우리 농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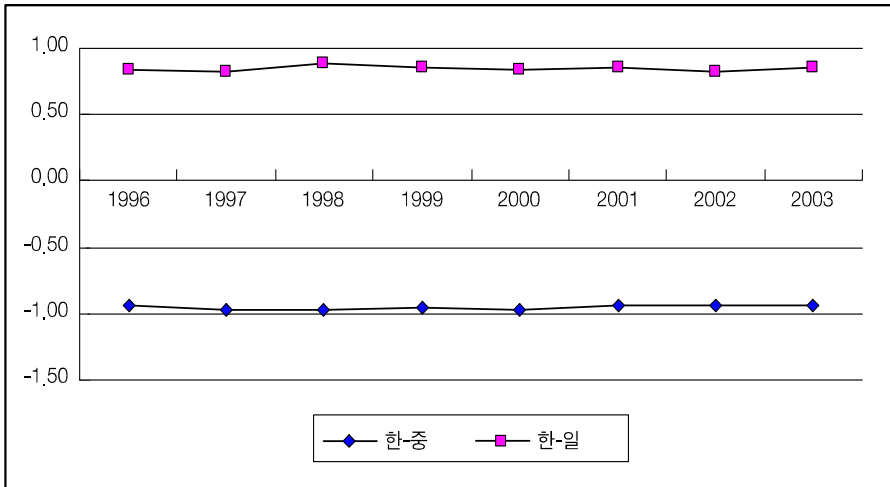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중간 및 한·일간 경쟁력 및 보완성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그림 2-9.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축산 T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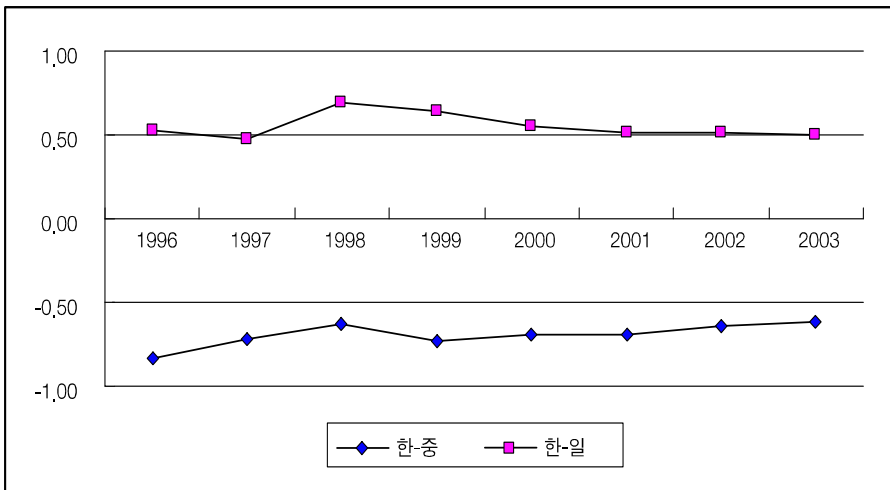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그림 2-10.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농산물 TSI)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그림 2-11.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가공식품 TSI)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2-4 참고). 농업 전체(1차산업)의 경우 산업내 무역지수⁴⁾는 한·중간 및 한·일간 각각 0.11 및 0.22이다. 특히 한·중간 산업내 무역 정도가 아주 작으며, 이런 이유로 무역결합도 또한 5.87로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교역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쟁력 격차를 반영하여 특화의 양상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대세계 경쟁력이 여타 부문(축산물, 가공식품)에 비해 큰 차이가 있으나 역내 산업내 무역이 작고 일방적인 특화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농업 전체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즉 농산물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한·중 및 한·일간 각각 0.03 및 0.10으로 산업내 무역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농산물 교역이 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교역의 결합도지수⁵⁾는 아주 큰 값을 보이고 있다.

- 4) 상호보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품목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 무역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산업내 무역(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의 상호보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루벨-로이드 지수(GL 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GL_{ij}^k = 1 - TSI_{ij}^k = \{ |X_{ij}^k - M_{ij}^k| / (X_{ij}^k + M_{ij}^k) \}$$

(X_{ij}^k , M_{ij}^k 는 각각 i국의 j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

GL 지수는 산업별 국별 특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산업내 무역이 저조해지는 반면,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에서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특정산업의 수출입 총액에 대한 수출입 차액의 비율)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GL 지수가 클수록 특화 정도가 낮아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반면, 작을수록 특화가 많이 진전되어 산업내 무역이 저조해진다.

- 5) 양 국가간에 나타나는 상호보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역결합도지수(III_{ij}^k)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II_{ij}^k = (X_{ij}^k / X_i^k) / (M_j^k / M^k)$$

(X_{ij}^k 는 i국의 j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 X_i^k 는 i국의 k품목 총수출, M_j^k 는 j국의 k품목 총수입, M^k 는 k품목의 세계 총수입)

III는 i국(교역상대국)의 총수출에서 j국(한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입에서 j국(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눈 값으로 세계 전체 j국 시장점유율에 대한 i국의 j국 시장점유율 비율이다. 따라서 무역구조상 상호보완성이 강할수록, 지리적 인접성이 강할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III가 1보다 크면 세계 전체의 총수입에서 교역상대국(한국)의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해당국(중국)이 교역상대국(한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국간 교역 결합도가 전 세계 시장과의 평균적인 결합도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III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의 무역에 관해 양국간 상호보완성이 세계평균보다 높은 반면, 1보다 작으면 상호보완성이 세계평균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산물 및 농업 전체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중 경쟁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특화 정도가 작고 산업내 무역비중도 크다. FTA로 역내 농업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가공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력체계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중 농산물 교역의 내용을 보면 농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FTA를 추진할 경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농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다자적이고 국제적이라기보다는 양자적이고 예외적이며 중국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

표 2-4. 역내 농업부문 교역의 경쟁력 및 보완성(2001~03년)

	축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	1차산업	제조업	전 산업
HS 4단위	1, 2, 4, 5	6-14	15-24	3	1-24	28-99	1-99
한국 RCA 지수	0.03	0.13	0.26	0.65	0.22	1.15	1.00
중국 RCA 지수	0.45	0.79	0.61	1.15	0.69	1.12	1.00
일본 RCA 지수	0.01	0.07	0.10	0.18	0.08	1.21	1.00
한·중 TSI	-0.62	-0.94	-0.65	-0.85	-0.85	0.26	0.18
한·일 TSI	0.21	0.85	0.51	0.63	0.62	-0.42	-0.31
한·중 GL 지수	0.38	0.03	0.20	0.15	0.11	0.35	0.33
한·일 GL 지수	0.30	0.10	0.22	0.27	0.22	0.41	0.39
한·중 TII	1.05	7.56	3.32	6.62	5.87	2.06	2.05
한·일 TII	6.67	2.50	7.59	6.99	6.51	3.28	2.87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한 농산물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농업 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무역증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중간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인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FTA 체결에 따른 무역증대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의 농업부문의 규모가 워낙 커서 농업개방시 규모의 효과가 한국에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32개 주요 교역품목의 경쟁력 변화

한국의 경우 32개 주요 교역품목 중 RCA 지수가 1보다 큰, 즉 대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인삼이 유일하나 RCA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인삼 다음으로 2001~03년 기간 RCA 지수가 높은 품목은 사과·배(0.33), 담배(0.32), 오이(0.28), 토마토(0.11) 정도다. 돼지고기는 1998~2000년 기간 0.75로 어느 정도 대세계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2001~03년 기간에는 0.06으로 작아졌다.⁶⁾

중국의 경우는 2001~03년 기간 땅콩, 양파, 인삼, 생강, 차, 천연꿀, 옥수수, 고구마, 무 등에서 높은 수준의 대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대수출 품목인 옥수수의 RCA 지수는 2.26이다.

TSI를 사용하여 한·중 양자간 상대적 경쟁력을 살펴보면, 32개 품목 중 수입 지향 경향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 20개인데 이 중 완전특화(-0.90 이하)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 무, 옥수수, 밀, 쌀, 땅콩, 계란, 양파, 대두, 고구마, 산동물, 배추, 천

6) 1996~99년 기간 연평균 8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던 돼지고기는 2000~03년 기간 적자로 전환되어 연평균 1억 7천만 달러의 적자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대일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1996~99년 기간 연평균 2억 7천만 달러 수준의 흑자규모를 보였으나, 이후 격감하여 2000~03년 기간에는 1,5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RCA 지수가 감소한 것은 2000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대일 수출 격감과 2001년 광우병 이후 국내 소비시장에서 쇠고기에서 돼지고기로 대체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5. 한·중·일 주요 경쟁력지표(2001~03년)

	RCA 지수			TSI		한국수입시장점유율 (%)	
	한국	중국	일본	한·중	한·일	미국	중국
산동물	0.01	0.74	0.03	-0.97	-0.50	30.73	20.48
쇠고기	0.00	0.03	0.00	0.00	0.00	70.46	0.01
돼지고기	0.06	0.26	0.00	0.00	0.00	7.06	0.01
닭고기	0.02	1.05	0.00	-0.88	0.99	46.63	5.39
낙농품(우유)	0.01	0.03	0.00	-0.15	0.66	17.31	0.06
계란	0.00	0.58	0.01	-1.00	-0.95	46.86	11.88
천연꿀	0.00	2.83	0.01	-0.92	0.00	30.92	31.74
감자	0.00	0.16	0.00	0.00	0.00	14.25	0.00
토마토	0.11	0.04	0.00	0.00	1.00	0.00	0.00
양파	0.04	3.89	0.00	-0.99	1.00	10.32	87.37
배추	0.04	0.25	0.00	-0.94	0.98	34.95	54.83
무	0.02	1.68	0.02	-1.00	0.90	0.00	96.82
오이	0.28	0.05	0.00	0.00	1.00	0.00	0.00
고구마	0.00	1.85	0.30	-0.97	0.69	0.01	3.29
바나나	0.00	0.02	0.00	0.00	0.00	0.01	0.00
감귤	0.04	0.18	0.01	-0.38	1.00	96.86	0.04
포도	0.00	0.04	0.00	0.72	0.00	33.19	0.01
수박	0.06	0.06	0.00	1.00	1.00	42.39	0.00
사과, 배	0.33	0.95	0.09	1.00	0.88	10.06	0.00
복숭아	0.01	0.03	0.01	0.00	1.00	89.43	0.00
커피	0.01	0.03	0.00	0.80	-0.57	6.15	0.21
차	0.06	3.04	0.08	-0.21	0.69	13.30	23.93
생강	0.06	3.05	0.15	-0.91	0.07	3.74	69.66
밀	0.00	0.17	0.00	-1.00	0.00	40.87	10.91
보리	0.00	0.00	0.00	0.00	0.00	0.00	0.76
옥수수	0.00	2.26	0.00	-1.00	0.38	18.36	61.20
쌀	0.00	0.14	0.00	-1.00	0.00	0.27	99.72
대두	0.00	0.13	0.00	-0.98	-0.76	85.29	2.64
땅콩	0.00	6.04	0.00	-1.00	0.00	0.09	99.88
인삼	1.20	3.72	0.05	-0.85	0.85	1.86	81.52
식물성 유	0.01	0.11	0.03	-0.80	-0.45	14.71	2.71
담배	0.32	0.41	0.17	-0.31	-0.90	32.43	2.63

주: UN COMTRADE 자료로 계산한 수치임.

연꽃 및 생강 등 13개 품목이다. 이 밖에도 닭고기, 인삼, 식물성유에서 강한 수입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교역에서 수출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사과 및 배, 수박, 포도, 커피 등 4개 품목이다.

한·중간 산업내 무역지수를 통하여 향후 산업내 무역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품목은 담배, 낙농품(우유), 차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포도, 식물성유, 커피, 감귤, 인삼 등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강한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감귤, 복숭아, 수박, 양파, 오이, 토마토, 닭고기, 배추, 무, 사과·배, 인삼, 차, 고구마, 낙농품(우유) 등이며,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계란, 담배, 대두, 커피 등이다.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⁷⁾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1) 곡물류

중국은 곡물류의 상품화 비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자급자족적 경향이 강한 편이다. 그만큼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곡물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면화, 유지작물, 담배, 채소 등 경제작물의 식부면적은 증가하여 고수의 작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역에서 벼농사의 수익성은 높지만 물 부족과 환경 문제로 개간을 제한하

7) 1, 2차 연도 연구인 어명근 외(2003, 2004)를 요약한 총괄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고, 유기농 쌀을 비롯한 고품질 쌀 등 녹색식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어 쌀 생산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생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가격 경쟁력이 높다. 중국의 쌀 수출능력은 200만~300만 톤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중국내 곡물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상태이므로 당분간 수출보다는 국내 수급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출범하여 중장기적으로 쌀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거나 시장접근물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중국산 고품질 쌀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소맥은 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중국의 식량작물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약 30%에서 재배되고 있다. 중국은 소맥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순수입국으로서 밀가루 등 가공품의 품질도 떨어져 밀과 밀가루 수입량이 한때 1천만 톤을 넘어섰다. 최근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수입량이 점차 감소하여 한때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내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소맥의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도 옥수수와 같이 중국의 국내 작황에 따라 수입 물량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생산이 안정됨에 따라 수입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소맥 생산의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도 중국산 소맥의 가격하락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행 소맥제품 관세가 제분용과 사료용 모두 1.8%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다른 수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품질경쟁력도 높지 못한 실정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소맥 수입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생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으로 2002년 생산량은 197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1억 2천만 톤을 기록하였다. 1980년

대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옥수수가 주식으로서의 기능은 위축되었지만 가공 식품의 원료와 사료용 및 공업용으로 계속 소비되고 있으며, 수출농산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작황 부진으로 옥수수를 수입했던 1995~96년을 제외하면 옥수수 순수출국으로서 2000년과 2002년의 수출량은 1천만 톤을 넘었다. 그러나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수출보조에 의해 가능하였다.⁸⁾

중국은 현재 옥수수 순수출국이지만 WTO 가입 이후 10년내에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⁹⁾ 이 경우 남부지역에서는 축산물 생산증가로 옥수수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동북 및 화북 지역은 한국과 일본 등 인접 아시아국가들에 중국산 옥수수를 수출하는 산업내 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옥수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지역별로 40~98%나 높아 정부가 수출보조를 철폐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 출범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옥수수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옥수수는 대부분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CMA)이고 사료용 옥수수의 실행관세도 매우 낮아(2000년 2.4%)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가격하락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중국내 축산물 소비증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확대와 WTO 가입시 약속대로 수출보조를 철폐할 경우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두의 원산지로서 주산지는 동북지역과 황하 하류 및 회강 유역이다. 1970년대까지 단수가 적은 대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두의

8) 이재욱 외(2002)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합의안대로 수출보조를 폐지하면 옥수수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pp. 53~54).

9) 이재욱 외(2002)는 미국 농무부 ERS(2000)를 인용하여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매년 약 7,100만 달러를 수입하는 옥수수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p. 55).

국내소비 급증에 따라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소득탄력성이 큰 대두는 대두유 수요증가와 축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사료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채유용 대두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487%로 높지만 실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 관세는 5%로 낮아 한·중·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도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콩나물 콩은 관세(양허세율 27%) 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가 커서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므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축산물

중국의 축산업은 최근까지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위주로 생산되었다. 대부분의 가축이 곡물생산 위주 농가에서 부업형태로 생산되고 있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가축질병이나 위생 또는 검역 문제로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선진경영기법과 사육기술을 가진 축산 전업농과 대규모 기업농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농가부업으로 생산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수출국이었으나 국내소비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1999년 이후 돼지고기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중국은 아직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되어 육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중국산 돼지고기를 동물검역상 문제로 수입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 출범으로 관세(삼겹살 기준 양허세율 22.5%)가 철폐되어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해도 검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WTO/SPS 협정은 동·식물 질병발생 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국가주의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구제역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동물검역 문제가 해

결될 경우 고부가가치 품목인 신선냉장육을 중심으로 중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육계는 가격경쟁력이 낮아 한·중·일 FTA 출범으로 관세(냉동닭고기 기준 양허세율 20%)가 철폐되어도 가격하락효과가 낮아 태국산이나 미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산 닭고기의 위생 등 품질경쟁력이 높아 당분간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영세한 축산업 구조로 인해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단기간에 완전히 퇴치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채소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채소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규모와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채소생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배추 수입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배추 수입이 우리나라 국내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 출범에 따라 관세(양허세율 27%)가 철폐되면 중국산 배추의 수입가격은 20% 이상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 김치산업의 성장과 배추 작황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추 수입은 장기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무 재배면적은 1996년 이후 100만~120만ha 수준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신선 또는 냉장 무 수입은 아직 많지 않으나 건조 무 수입이 연간 약 1,500~3,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무는 품종과 품질 등에서 국산 무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중·일 FTA로 관세(신선·냉장 45%, 건조 54%)가 철폐될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운송비 절감을 위해 건조 무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오이 재배면적은 최근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오이의 품질은 온실시

설과 재배기술 등이 낙후되어 상품성이 낮고, 온실내 농약살포 등으로 식품안전성이 떨어진다. 한·중·일 FTA 체결로 관세(신선·냉장 27%, 일시저장 45%, 조제저장 36%)가 철폐되면 국내 외식산업의 발달 및 패스트푸드 확대 등에 따라 중국산 일시저장 오이 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산 고추의 품종은 산동성 이두산 고추로서 국내수요가 적어 생산량도 중국 전체의 10% 미만이다. 그러나 한국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재배지역도 내몽골, 허난성, 지린성 등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중·일 FTA 출범에 따라 관세(시장접근세율 50%)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고추 수입가격은 33% 인하 효과가 있어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냉동고추와 기타 소스용 고추도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가공용 및 업소용으로 국내수요가 많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중국의 마늘 재배면적은 1995년 대비 약 2배로 늘어났다. 산동성은 중국 최대의 마늘 주산지로서 산동 마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의 신선·냉장 마늘이 전체 마늘 수출량의 80% 이상이며, 주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을 수입하고 있다.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 수입가격은 국산 마늘가격의 절반 내지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중·일 FTA 출범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하락 효과로 인해 중국산 마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그동안 100톤 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2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배추와 무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중국 현지공장 설립증가에 따라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국내 음식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국내 고랭지 배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하는 형태다.

중국산 김치의 품질은 한국산에 비해 떨어지나 요식업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배추김치 소비량이 약 100만 톤이고 30~40%가 요식업소에서 소비되므로 중국산 김치 수입수요는 최대 2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중·일 FTA로 관세(양허세율 22.9%)가 철폐될 경우 김치 수입가격은 약 19% 하락하게 돼 중국산 김치 수입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품목인 채소류는 중국의 수출전략 농산물이다. 특히 소득 증대와 더불어 고급 채소류에 대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품질과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농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여 녹색식품 생산확대 등 고품질 환경농산물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 체결로 채소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경우 대부분 품목의 채소류 수입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과일류

중국의 과일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가격 자율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 증대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중국은 과일류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별 과일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여 작목전환을 장려하고, 밀식재배 억제 등 감산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중국은 총생산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약 90만 톤의 과일을 동남아시아 등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액은 사과가 1억 5천만 달러, 배 약 6천만 달러, 감귤이 약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하는 과일은 품질이 낮은 저가품의 비중이 높다. 중국의 과수 농가는 대부분 영세규모와 낙후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과일 산업의 적지인 산둥성과 베이징 근처의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 기업농 형태의 과수 생산 및 유통, 가공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 선별, 가공하여 국내시판과 수출을 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과일과 가공품의 생산 및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과일류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유기농법 및 저농약 과일 생산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녹색식품 인증제를 통하여 유기농산물 생산과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일부 농기업들은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여 보존기간을 늘림으로써 성수기의 집중 출하를 분산시켜 이듬해 봄까지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식물검역상 규제를 피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등급이 낮은 과일은 가공품으로 수출, 최근 일본 과즙시장에서 중국산 가공품의 시장점유율이 미국산을 추월하여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물검역 문제로 인해 중국산 신선 과일류 수입을 규제하고 있어¹⁰⁾ 생과 형태의 수입은 없지만, 통조림이나 농축액 및 퓨레 형태의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산 사과와 신선도와 외관, 당도 등 품질면에서 국산에 비해 약간 뒤지지만 칠레산이나 미국산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 또한 후지사과 비중이 70%에 이르는 산동성 사과는 가격이 국산의 30~40% 수준이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한·중·일 FTA 체결로 관세(사과 양허세율 45%)가 철폐되면 가격이 약 30% 하락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더욱이 중국이 적극적인 식물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산동성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되면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는 품질의 사과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배는 맛과 품질이 국산 배에 비해 크게 낮아서 두 배 이상의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수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중·일 FTA로 45%의 양허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약 30%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식물검역

10) [부표 3]~[부표 6] 참고.

문제로 인한 수입규제만 해제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중국의 감귤은 품질면에서 껍질이 얇은 우수품종인 참등(椪橙)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늘어나는 반면, 껍질이 두꺼운 품종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감귤류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감귤은 식물검역상 문제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한·중·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가격이 하락하게 돼 중국산 감귤의 가격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품질이 낮아 중국산 감귤류 수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1) 채소류

한국은 신선오이 수입이 없고 조제·저장처리 오이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인도, 스리랑카 등이다. 2003년 오이 수입량은 1만 4천 톤이고, 그중 중국산 수입량이 7,300톤에 이른다. 한국은 대부분 무침용으로 연한 오이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은 주로 볶음용으로 과육이 두껍고 큰 오이를 선호한다. 2003년 도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한국산이 kg 당 240엔, 일본산은 300엔이었다. 한국산 오이의 품질은 신선도와 맛, 향기 등이 일본산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병충해 발생시 훈증 소독으로 신선도가 하락하는 등 상품 이미지가 불안정한 편이다. 또한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일본 소비자들이 외국산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오이는 현재 품질이 낮아 일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격이 한국산의 10~40% 수준이므로 향후 일본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이 중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경우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프리카는 1994년 국내에 도입되어 오늘날 주로 경기 화성, 고양과 전북 김제, 전남 화순, 강진과 경남 창녕 등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파프리카는 국내 소비가 적어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파프리카는 일반적으로 8월에 정식하여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수확하고 있다. 대일 수출시기도 11월부터 7월까지이며, 최근 여름철 고랭지 재배로 상품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덜란드산 파프리카는 인지도가 높고 상품성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 2000년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했으나 점차 한국산에 밀려 2003년 일본 파프리카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국산 66%, 네덜란드산 22%, 뉴질랜드산 12%로 나타났다. 일본의 2003년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가격은 330 엔으로 네덜란드산의 68%, 뉴질랜드산의 6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토마토 생산은 1999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산 신선토마토는 대부분 일본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방울토마토이다. 대일 토마토 수출은 2000년 1만 1,274톤을 수출한 이후 수출단가 하락과 일본의 원산지표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3년 일본시장에서 토마토 최대 수출국은 한국이며, 캐나다와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 토마토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73%로 방울토마토는 대부분 한국산이다. 일본산에 비해 당도와 색도 등이 뒤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토마토는 전량 일반 토마토로 햄버거나 샌드위치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2003년 도쿄 도매시장의 한국산 방울토마토 가격은 kg당 290 엔으로 일본산(500 엔)의 약 60%에 불과하였다.

중국산 토마토는 복미와 유럽계 품종으로 색과 맛이 다양하다. 국산 토마토와 품종이 달라 직접적인 상품성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당도는 국산 토마토가 더 높다. 현재 중국산 신선토마토는 식물검역상 수입이 규제되고 있지만 검역문제가 해결될 경우 산둥성과 허베이성 등에서 생산되는 일반 토마토가 수입될 가능성이 많다.

2) 과일류

한국의 사과 농업은 배와 포도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3년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95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성출하기 사과가격은 공급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현재 과실파리 등의 검역문제로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신선사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¹¹⁾ 한국산 사과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이며, 그 밖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과 러시아 등으로 소량 수출하고 있다.

사과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사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 사과는 일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다소 우위에 있으나 당도와 외형 등 품질은 일본산에 비해 낮다. 또한 대만시장에서는 미국산 및 칠레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일본산 사과는 고품질을 앞세워 대만과 홍콩으로의 수출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중국산 사과는 품질은 낮지만 가격경쟁력이 있어 동남아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배 생산량은 2001년 41만 7천 톤에서 2003년 31만 7천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연평균 배 가격은 작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최근 생산량 증가와 조제품 수입 및 대체 품목이 증가하면서 성출하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산 배는 미국, 대만, 동남아,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배 수입량은 최근 감소 추세이나 전량 한국산 배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산 배는 일본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품질경쟁력은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산에 비해 저장성이 우수하여 겨울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산에 비해서는 품질경쟁력이 크게 높아서 대만시장에서 일본산 배와 함께 고급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11) [부표 3]~[부표 6] 참고.

한국산 딸기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며 대일 수출은 2001년 1,100만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2년 육종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3년에는 400만 달러에도 못 미쳤다. 한국산 딸기의 대일 수출은 2001년까지 신선딸기가 주종이었으나 2002년 이후 냉동딸기 수출액이 더 많아졌다. 2003년 수출단가는 신선딸기가 kg당 5.6달러, 냉동딸기는 2.2달러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일본 냉동딸기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1년 10%에서 2002년 7.0%로 하락하였다. 일본의 주요 딸기 수입국은 미국,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2002년 수입량은 미국이 4,092톤, 한국 724톤, 뉴질랜드 84톤이었다. 2002년 일본시장 수입단가는 한국산이 kg당 584엔으로 가장 낮았고, 미국산 929엔, 뉴질랜드산 1,041엔이었으며, 호주산은 1,847엔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딸기 가격은 일본산의 53% 수준으로 한국산은 일본의 딸기 성수기에 수급조절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대부분 가공용으로 소비된다. 한국산 냉동딸기는 중국산에 비해 가공·처리 능력이 우수하여 품질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으며, 일본시장 유통망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수요에 대응한 시설과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종인 ‘레드펠’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선호가 감소한데다 신품종 딸기 육종권 문제로 최근 수출이 부진한 실정이다.

3) 돼지고기

한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량도 2003년 78만 3천 톤으로 1995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은 1999년 7만 5천 톤에 달했으나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다. 2002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약 2만 톤이며, 러시아와 필리핀 등으로 냉동육이 수출되고 있다. 수출단가는 2002년 kg당 약 1.1달러였다.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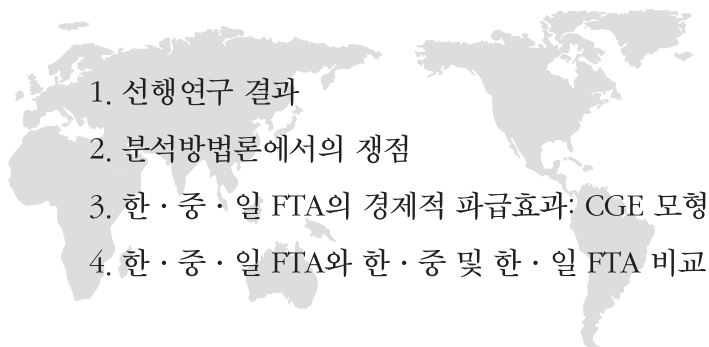
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선냉장육 중심으로 대일 수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4) 밤

한국의 밤 생산량은 1998년 약 11만 톤에서 2002년 7만 2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연평균 산지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다. 밤은 연간 전국 생산량의 약 20~30%가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량과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수출 단가도 1995년 kg당 7.4달러에서 2003년 4.9달러로 하락하였다. 과거 깐밤 형태로 일본에 수출되던 물량이 생밤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되어 탈각 후 일본으로 재수출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밤 수입은 한국산과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통계상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구워서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중국산 밤을 포함할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밤은 중국산보다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일본산과 비슷하여 깐밤 형태로 수입된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밤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제3장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4. 한·중·일 FTA와 한·중 및 한·일 FTA 비교

2차 연도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주로 부분균형분석인 농업거시계량모형을 사용하여 한·중·일 FTA의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중 및 한·일 FTA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FTA 결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화전개로 경쟁력의 강약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 쇠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무역량 증가로 전 산업에서 성장기회가 확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균형분석으로 한·중·일 FTA 농업개방 효과를 추정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 무역량 증대와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매개로 다시 각 산업의 가격 및 생산량이 변화하는 FTA의 2차적인 효과, 즉 간접적 환류효과를, 농업만을 분석하는 부분균형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3장에서는 한·중·일 FTA가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시 추정하고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부록 3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즉 농업부문 거시계량모형을 사용하여 한·중·일 FTA 농업개방 효과를 추정, CGE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결과

현재 GDP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추정된 한·중·일 FTA 체결 파급효과는 대부분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모형에 의해 추정된 것이다. 또한 일부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양자간 잠재교역(Potential Bilateral Trade: PBT) 개념에 의해 수출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결과도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가 국별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3국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GDP 증가율은 0.69%(가병생 2005)부터 5.15%(이홍식 외 200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GDP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부문 시뮬레이션 결과, 쌀 포함 여부 등 FTA 체결 시나리오에 따라 14.4~38.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어명근 외 2004).

한편 우리나라의 역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3.7억 달러(서장문 2005)에서 17억 달러(가병생 외 2005), 또는 48억 달러 내지 122억 달러(정인교 2004)까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내 FTA의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수지는 15.8억 달러나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어명근 외 2004).

경제적 및 경제외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 한·중·일 FTA 또는 동북아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3국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수지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예측 결과를 종합하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 참고).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정량분석모형으로 농업부문 거시모형(KREI-ASMO 2005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모형이 있다.

농업부문 거시모형은 각 구조방정식의 계수를 각 변수의 시계열을 사용하여 추정 후 연립방정식 체계의 해를 동시에 구함으로써 농업이라는 특정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특히 각 개별방정식 추정시 장기간의 시계열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모형이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방정식 추정시 관심 정책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모의실험이 용이하며, 농업거시계량모형의 체계를 구성할 때 단수 등 농업특성을 이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론적 기반보다는 정책모의실험에 초점을 맞춘 단기 예측 모형의 경우, 높은 예측력에도 불구하고 개별방정식 추정과정의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각 개별방정식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추정과정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농산물의 균형수입량은 해당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는 물론 기타 연관관계에 있는 농산물의 가격, 그리고 국내소비자의 국내농산물에 대한 선호관계 등의 함수이나 이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추정과정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원계열이 아니라 오차수정 모형 분석기법을 사용해야 하나 그럴 경우 예측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한계성은 부분균형분석이 갖는 한계성이다. 현실 경제에서 농업부문 FTA의 충격은 농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업 및 농업외 부문에서의 변화는 다시 기타 산업 및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분균형분석에서는 현실경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부분균형분석에서는 한 농산물의 수입가격 하락이 그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대시키고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일차적 결과만 포착한다.

그러나 그 농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출여력을 증가시켜 다시 그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일부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취약분야에 고용

되었던 자원이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이동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요를 견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 거시계량모형으로 농업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및 환류효과(feedback effects)를 계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CGE 모형은 경제학의 이론체계(일반균형의 이론적 방정식 체계)를 모형으로 설정하고, 주어진 기준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의 계수들을 보정(calibration)하고, 미지수 개수(균형조건)를 조정한 후 정책모의실험을 하는 방법론으로, 모형체계는 물론 정책변수 충격의 파급경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균형접근과 달리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환류효과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연도 시점 데이터를 사용하여 균형조건체계인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시계열을 사용하는 거시계량모형과 달리 결과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큰 단점이다. 또한 여러 경제학 이론(완전경쟁 균형조건식 체계, 불완전경쟁 균형조건식 체계, 또는 자본축적을 고려한 균형조건식 체계) 중에서 어떠한 이론체계를 모형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투입산출자료를 가지고 선정된 모형의 균형조건식을 단순화하는 보정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효용함수 및 생산함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책변수 변화의 충격 정도가 결정될 수 있으며, 보정과정에서 투입산출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FTA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농업거시계량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각각의 한계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CGE 모형에서는 수입재와 국내재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는 복합재(composite goods)로 수요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수입재와 국내재에 대한 차별성 및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로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더라도 부분균형분석에서와 같이 국내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적다.

그간 FTA 연구는 비교우위 강약에 따라 FTA이후 특화가 전개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고, 부분균형모형은 이를 증명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이었다. 국내재와 수입재가 거의 완전탄력적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재 가격하락은 곧바로 국내생산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에서 보듯이 FTA로 특화가 전개되는 효과와 함께 경쟁력이 약한 산업까지 포함하여 교역량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CGE 모형은 이미 분석체계 안에 FTA의 두 가지 효과(특화전개와 무역량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장점이 있다.

불변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함수로 복합재 수요량을 정의할 경우, 가격의 효용극대화 조건에 따라 국산 쌀과 수입 쌀의 복합재 수요량이 결정되면 이후 상대가격 및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는) 대체탄력성 등 CES 계수치에 의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구체적 수입량이 파생적 수요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CGE 분석결과는 국내재와 수입재의 상대가격 및 복합재 함수의 대체탄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을 산업별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 대체관계를 불변대체탄력성(CES) 함수로 정의하면(그림 3-1 참고)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X_j &= F_j(M_j, XDD_j) \\
 &= AC_j[d_j M_j^{-a_j} + (1-d_j)XDD_j]^{-a_j^{-1/a_j}}
 \end{aligned}
 \tag{3-1}$$

($AC_j > 0$, $0 \leq d_j \leq 1$, $a_j > 1$ 이고 $\sigma_j = 1/(1 + a_j)$ = 대체탄력성, M_j = 수입재 j 의 양, XDD_j = 국내재 j 의 양, X_j = 수입재와 국내재로 구성된 복합재)

수입재와 국내재로 구성된 복합재가 식 (3-1)의 형태로 소비되는 경우, 가계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예산제약을 만족하면서 복합재의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과 일치하도록 복합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begin{aligned}
 MRS_{j,k} &= P_j/P_k \\
 \Sigma P_i X_i &= Y (P_j = \text{복합재 } j \text{의 가격})
 \end{aligned}$$

이와 같이 복합재량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이 복합재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재와 국내재의 투입량은 두 재화의 상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주어진 복합재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입재와 국내재의 투입량은 두 재화의 상대가격과 두 재화 사이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을 PM_j , 국내재가격을 PS_j 라고 하고 CES 함수에서의 비용극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구하면 식 (3-2)와 같다.

$$M_j/XDD_j = [(PS_j/PM_j)(d_j/1-d_j)]^{\sigma_j} \tag{3-2}$$

식 (3-1) 및 식 (3-2)에서 복합재와 국내재 수요의 비율을 수입재와 국내재의 상

대가격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X_j/XDD_j &= AC_j[d_j(M_j/XDD_j)^{-a_j} + (1-d_j)]^{-1/a_j} \\
 &= AC_j[d_j\{(PS_j/PM_j)(d_j/1-d_j)\}^{-a_j/(1+a_j)} + (1-d_j)]^{1/a_j} \\
 &= \Psi(PS_j/PM_j) \\
 \Rightarrow XDD_j &= X_j/[\Psi(PS_j/PM_j)] \quad (3-3)
 \end{aligned}$$

따라서 수입재와 국내재의 상대가격과 복합재 수요량이 주어지면 국내재 수요량은 식 (3-3)에 의하여 결정되고, 수입재 수요량은 식 (3-2)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수입재에 대한 파생수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_j = [(PS_j/PM_j)(d_j/1-d_j)]^{a_j} \times XDD_j$$

따라서 농산물 수입량은 상대가격 및 대체탄력성, 그리고 배분계수에 대한 가정에 의해 영향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적합하며 타당한 국내재 및 수입재의 상대가격과 대체탄력성을 가정해야 FTA에 따른 농산물개방의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¹²⁾

다. 한·중·일 FTA와 한·중 및 한·일 FTA의 차별성

한·중·일 농업부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중 FTA 및 한·일

12) CGE 모형에서는 기준연도 국제산업연관자료 및 경제학의 제 균형조건을 가지고 대체탄력성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임의로 대체탄력성을 수정하는 것은 기존 국제산업연관자료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합계와 유사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다. 즉 한·일 FTA로 발생하는 농업부문 증가액과 한·중 FTA로 발생하는 농업부문 감소액의 합계가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한·중간 민감품목이 한·중·일 FTA의 민감품목이며, 한·중간 발생하는 농업생산 변동이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생산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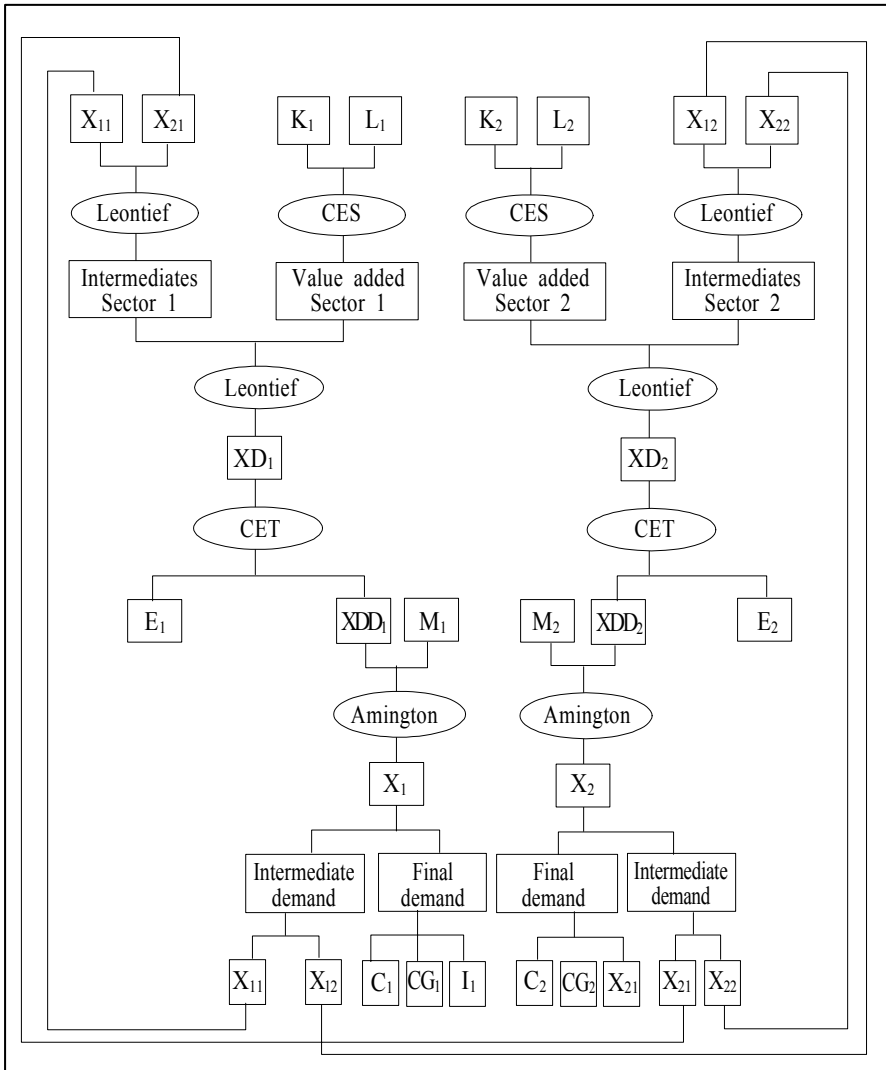
사실 이러한 생각은 국가간 및 국내 동종상품간 가격차이에 따라 수입량이 결정되는 부분균형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으나, 모든 재화의 균형가격, 소비, 생산, 수입량 및 거시균형 등 여러 방정식을, 즉 일반균형조건 체계를 동시에 결정하는 다국 다부문 연산가능일반균형 분석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한 농산물에서의 한·중간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불균형은 그 농산물 시장을 설명하는 방정식 속에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FTA 협상시 한·중간 기타산업에서의 시장불균형은 물론 제3국에서의 시장불균형이 초래되며, 한·중 양국의 산업간 국가간 환류효과는 물론 제3국에서의 환류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중·일 무역자유화의 결과 다시 도달한 균형체계는 한·중 및 한·일 무역자유화의 결과 도달한 새로운 일반균형상태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GTAP 표준모형에서 한 농산물의 수입재량(M_1)은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의 복합재로 구성되며, 수입량과 국내공급량(XDD_1)의 복합재로 국내수요량(X_1)이 정의된다. FTA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 인하가 발생하면 그 농산물 수입가격(PM_1)이 중국 수입비중을 반영하여 하락할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그 농산물의 국내시장가격(PX_1)이 하락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C_1), 투자(I_1), 중간투입재($X_{11}, X_{12}, \dots$)로 사용되는 복합재(X_1)의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재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이는 국내재의 수요량(XDD_1)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 하락이 수입재의 국내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국내재에 대한 효과는 복합재의 수요량 증가로 인한 국내재 수요량 증가효과(소득효과)와 국내재의 수입재에 대한 상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재 수요량 감소효과(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수입재의 가격하락이 국내재의 수요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복합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입재 가격하락이 국내재 수요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부분균형분석에서는 대체효과를 주로 파악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신동천 2000).

위에서는 우리나라 한 품목에서의 관세인하만을 고려했는데 여러 품목에서 협상대상국의 관세인하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부분균형분석이 주는 추정의 한계성은 증폭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누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때문에 CGE 모형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중 FTA 및 한·일 FTA의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3-1. CGE 모형 체계: 1국, 2부문, 2요소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1) 분석체계

CGE 정태모형¹³⁾의 방정식 체계는 신고전학파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일반균형의 정의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의 적정화조건, 시장청산조건, 그리고 모형을 마무리하는 거시균형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며, 각 상품의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개별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목적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이 결정하는 것은 상대가격체계이며, 화폐가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CGE 모형에서는 경제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으로 구분하며, 생산활동은 기업과 해외 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비활동은 가계, 정부, 해외 부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분석대상 국민경제의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으며, 세계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모두 가격순응자이고, 모든 가격은 신축적이다. 재화가격은 시장청산조건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국의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고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반면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은 불가능하며, 생산요소 부존량은 고정되어 있다. 임금 또한 고정되어 있으며, 자산은 실물자산(자본재와 재고변동)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생산요소는 모두 가계가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따라서 요소소득은 모두 가계에 분배된다.

가계는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생산기술제약하에서 이윤을

13) Robinson(1989).

극대화한다. 모든 재화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Armington (1969) 가정과 그 재화를 소비하는 국가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국내재와 수입재, 국내재와 수출재는 불완전 대체관계(제품차별화 가정)에 있게 된다. 해외부문의 수입수요와 수출공급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된다.

CGE 기본모형에서는 투자와 저축이 모형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고, 자본재 가격의 조정에 의해 저축과 투자 간에 항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때 가처분소득과 한계저축성향에 의해 가계저축이 결정되고, 정부저축은 정부의 수입(revenue) 중 정부지출을 뺀 것으로 정의되며, 해외저축은 무역수지 적자로 정의된다. 가계저축, 정부저축, 그리고 해외부문 저축(무역수지 적자)의 합계가 총저축으로 총투자액과 항등식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경제의 소득순환 흐름에서 총유출과 총유입이 같아야 한다는 거시균형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시장청산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표준적인 CGE 모형의 기본구조는 완결된다.

Baldwin(1989, 1992)류의 자본축적모형은, 무역자유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생산 및 국민후생이 증가하는 과정까지 분석하는 정태모형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자본축적모형은 증가된 소득이 저축되고 다시 투자되어 생산 및 소득이 또다시 증가하는 무역자유화의 동태적 효과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우선 무역자유화는 생산요소를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해당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즉 경제 전체로 볼 때 자원의 투입량은 변하지 않는다 해도 향상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전통적 무역이론과 완전경쟁에 기초한 정태적 CGE 모형이 파악하는 무역자유화의 정태적 효과다. 두 번째 단계는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산출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된 소득 중의 일부는 다시 저축되

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단계는 정태적 효과가 자본스톡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자본축적과정을 CGE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저축과 소비로 연결되는 경로를 가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저축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저축률을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가정한다. 저축률을 내생화할 경우 자본축적효과가 증폭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총저축은 소득에 비례한다.

$$S(t) = sY(t) \quad (3-4)$$

S 는 총저축, s 는 저축률을 나타낸다.

자본스톡의 변화는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 투자는 총저축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

$$\frac{dk}{dt} = sy - \delta k \quad (3-5)$$

$$k \equiv \frac{K}{L_y}, \quad y \equiv \frac{Y}{L_y}$$

정상상태에서 자본스톡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스톡과 소득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콥-더글러스 산출함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k &= \frac{s}{\delta} y \\ &= \frac{s}{\delta} A \left(\frac{D}{L_y} \right)^\beta \end{aligned} \quad (3-6)$$

여기서 δ 는 감가상각률을 가리킨다.

중간재 기업이 대칭적이라는 가정하에 CGE 모형의 완전경쟁이윤조건(zero profit condition), 노동시장균형조건, 부가가치함수와 중간재투입의 CES 함수 가정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 자본스톡량과 총생산량을 도출할 수 있다.

$$K^* = A^{\frac{1}{1-\alpha}} \left(\frac{s}{\delta} \right)^{\frac{1}{1-\alpha}} \left(\frac{\beta(\epsilon-1)n^{\rho-1}}{(1-\alpha-\beta)\epsilon b} \right)^{\frac{\beta}{1-\alpha}} L_y \quad (3-7)$$

$$Y^* = A^{\frac{1}{1-\alpha}} \left(\frac{s}{\delta} \right)^{\frac{\alpha}{1-\alpha}} \left(\frac{\beta(\epsilon-1)n^{\rho-1}}{(1-\alpha-\beta)\epsilon b} \right)^{\frac{\beta}{1-\alpha}} L_y \quad (3-8)$$

무역자유화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면 식 (3-7)과 식 (3-8)에서 A 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상상태에서의 자본스톡 K^* 과 국내총생산 또는 소득 Y^* 도 증가한다. 고전학파의 경제성장모형에 기초한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효과는 소득수준을 높이는 수준효과(level effect)를 나타내며,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경제성장효과와는 구별된다.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단행되는 시점에서 각 국가는 정상상태에 있다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무역자유화 전과 후의 정상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자본스톡의 변화와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용이하게 추정하기 위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의 자본스톡과 국내총생산이 각각 식 (3-7)과 식 (3-8)에 주어져 있으며, 식 (3-4)를 이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자본스톡과 투자 (I)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K = \frac{I}{\delta} \quad (3-9)$$

식 (3-9)에서 무역자유화 전후의 정상상태에서 자본스톡과 투자는 항상 일정한

관계, 다시 말해서 자본스톡과 투자의 %변화가 일치하게 된다($dK/K = dI/I$). 즉 자본스톡의 변화에 비례하여 투자량이 증가하게 된다(이상 Francois and MacDonald 1996; 최낙균·박순찬 2002).

이상과 같은 자본축적 CGE 모형은 버전 6 GTAP 표준모형에 탑재되어 있어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Francois 등이 제시한 자본축적모형은 이와 함께 자본수익률 변화 방정식을 추가하여 CGE 모형을 완결하고 있다. 즉 자본수익률과 복합소비재 가격의 차이에 비례하여 투자수익률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방정식에서 한 국가의 자본축적효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Francois 등의 완결모형을 사용하여 자본축적효과를 계산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

한·중·일 FTA 농산물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아세안, EU, 기타국가로 구분하였다. 한·중·일 FTA에 따른 농산물 교역의 대체효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를 독립적인 국가로 포함하였다. 또한 산업을 9개 1차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2개 산업(쌀, 곡물, 채소 및 과일, 기타작물, 산동물, 육류, 기타가공식품, 음료 및 담배, 임산물 및 수산물, 석탄·석유·광물,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관심품목인 육류, 곡물, 쌀, 가공식품을 세분화하고 제조업, 서비스업을 크게 묶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실행관세율(GTAP 데이터)을 대중국 수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실행관세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쌀(벼 및 정미)로 1,000%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부문은 곡물(390.7%)이며, 채소 및 과일과 기타작물의 대중 관세율은 각각 214.6% 및 172.6%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한국산 품목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음료 및 담배(45.4%), 채소 및 과일(28.4%), 기타가공식품(20.0%)을 제외하

표 3-1.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표

번호	산업	GTAP 57	IO 167
1	쌀	1, 23	1, 57
2	곡물	2, 3	2~4
3	채소 및 과일	4	5~7
4	기타작물	5~8	8~17
5	산동물	9~12	18~22
6	육류	19, 20	46~48, 71
7	기타가공식품	21, 22, 24, 25	49~56, 58~59, 60~70, 72~78, 85
8	음료 및 담배	26	79~84, 86
9	임산물 및 수산물	13, 14	23~30
10	채취업(광업)	15~18	31~45
11	제조업	27~42	87~304
12	서비스업	43~57	305~404

주: 한국은행(2004)과 GTAP의 산업분류를 토대로 작성.

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비중이 43.1%, 대세계 및 대중국 수입비중이 각각 89.2% 및 98.4%에 달하는 한국 제조업의 관세율이 6.6%임에 비해, 중국 제조업의 대한국 수입관세율은 13.5%이다. 이러한 GTAP 관세율 구조상 한·중 교역자유화의 결과, 농업부문의 국내 생산감축 및 제조업부문의 생산확대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관세구조를 보면 한국의 대일본 실행관세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역시 쌀(정미)로 1,000%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부문은 곡물(335.1%), 채소·과일(44.3%), 음료 및 담배(38.9%) 및 기타가공식품(21.5%) 등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대일본 실행관세율이 5.1%이나 일본의 대한국 관세율은 1.8%이다. 일본의 대한국 관세율이 높은 부문은 쌀(872.9%), 닭고기, 쇠고기 등 육류(55.3%) 및 음

료·담배(23.6%) 등이다. 이러한 GTAP 관세율 구조상 한·일 교역자유화의 결과, 축산물 부문의 국내생산 확대와 채소·과일 및 제조업 부문의 생산축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2. 한·중·일의 산업별 실행관세율(GTAP Data)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대중국 관세율	대일본 관세율	대한국 관세율	대일본 관세율	대한국 관세율	대중국 관세율
쌀	1,000.00	1,000.00	1.00	0.00	872.90	1,000.00
곡물	390.70	335.10	0.00	1.60	4.50	25.00
채소 및 과일	214.60	44.30	28.40	22.50	7.10	22.90
기타작물	172.60	3.00	9.10	3.80	1.50	3.50
산동물	5.90	5.70	12.90	9.70	0.60	4.30
육류	29.00	10.00	13.50	18.00	55.30	15.50
기타가공식품	27.10	21.50	20.00	24.10	12.60	10.70
음료 및 담배	59.10	38.90	45.40	53.50	23.60	31.80
임산물 및 수산물	14.70	16.80	14.80	13.30	5.40	3.90
채취업(광업)	1.20	2.60	2.60	2.80	0.10	0.00
제조업	6.60	5.10	13.50	13.90	1.80	3.90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시나리오 설정

그간의 FTA 논의과정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국의 많은 농산물 품목에 대해 양허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 농산물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실시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쌀을 제외한 완전자

유화 시나리오와 민감품목을 인정하는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쌀을 제외한(한국의 경우 쌀협상 결과 반영, 일본의 경우 GTAP 기준연도에서의 관세화유예 반영)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며, 한국과 일본은 곡물, 채소·과일, 기타작물 등 고관세품목에서 70%의 관세를 삭감하고, 쌀 부문에서는 양허를 제외하며, 기타품목에서 무세화하는 경우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2에서 육류를 고관세 민감품목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절대적인 관세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개방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생각보다 민감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일본의 경우는 닭고기를 중심으로 민감한 품목임).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CGE 정태모형(시나리오 ST-1, ST-2)과 자본축적모형(시나리오 CA-1, CA-2)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 시나리오 1: 쌀을 제외하고 완전자유화
- 시나리오 2: 쌀 제외, 민감품목 70% 관세인하, 기타품목 무세화

2)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효과

본 보고서에서 가정한 시나리오의 분석결과를 한·중·일 FTA로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쌀 제외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의 GDP는 수량기준으로 정태적으로는 0.47%, 동태적으로는 3.52% 증가하지만(금액기준으로는 정태적으로 2.29%, 동태적으로는 4.54% 증가), 중국의 경우는 수량기준으로 각각 0.04% 및 0.88% 증가하며(금액기준으로는 각각 -0.04% 및 0.69% 증가), 일본의

경우는 수량기준으로 각각 0.01% 및 0.22% 증가(금액기준으로는 각각 1.43% 및 1.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등변화로 파악한 GDP 증가가 한국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45억 달러, 동태모형에서는 1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정태적으로 약 7억 달러 감소하나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6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각각 74억 달러 및 11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등변화로 파악한 민간소비지출 증가가 한국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1.16%, 자본축적모형에서는 8.76% 증가하고, 자본축적모형에서 수출입액이 각각 10.31% 및 9.9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에서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도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축적모형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거시지표는 시나리오 1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수량기준이 1.02%로 시나리오 1보다 증가하여 거시지표상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IRS)과 상당수준의 수송비 존재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 시장규모가 큰 나라 쪽으로 산업특화가 발생하는 경향)보다 제품의 생산지역 특성(동종제품의 국가간 이질성)에 따라 발생하는 아밍턴 효과가 한·중·일 FTA에서 지배적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한·중·일 FTA로 한국은 일본 및 중국의 시장접근기회가 확대되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향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FTA 결과 무역특화 효과보다 교역량증대 효과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표 3-3.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효과

시나리오 1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GDP증가(%)						
수량기준	0.47	0.04	0.01	3.52	0.88	0.22
금액기준	2.29	-0.04	1.43	4.54	0.69	1.40
동등변화(백만 달러)	4,510	-687	7,398	13,420	6,304	11,722
민간소비지출증가(%)	1.16	-0.06	0.20	8.76	0.57	0.32
수출액증가(%)	5.60	8.37	3.90	10.31	9.42	4.98
수입액증가(%)	8.58	13.09	5.92	9.93	13.96	5.70
교역수지(백만 달러)	-32	-4,300	-5,774	330.87	-3,005	277
자본축적	0.00	0.00	0.00	6.12	2.19	0.54

시나리오 2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GDP증가(%)						
수량기준	0.47	0.04	0.01	3.06	1.02	0.21
금액기준	2.63	-0.30	1.41	4.46	0.55	1.37
동등변화(백만 달러)	4,723	-1,340	7129	11,983	6,770	11,166
민간소비지출증가(%)	1.21	-0.12	0.19	3.08	0.61	0.30
수출액증가(%)	5.52	7.73	3.89	8.70	8.92	4.94
수입액증가(%)	8.14	12.82	5.87	10.14	13.78	5.64
교역수지(백만 달러)	-2,654	-6,022	-5638	207	-4,094	354
자본축적	0.00	0.00	0.00	5.56	2.57	0.51

3)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가) 생산량 변화

한·중·일 FTA에 따른 생산변동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농업의 경우, 정태모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물론 제조업에서는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FTA 효과가 대폭 확대된다). 이는 FTA 결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무역특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의 시사점(prediction)이 발생할 여지가 작다는 것을, 즉 한·중·일 FTA로 경쟁력 없는 농업품목이 고사될 것이라는 주장이 과장된 우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곡물, 기타작물, 과일 및 채소 등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의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 FTA로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농업품목(쌀 제외)은 곡물(기준연도 산출비중 0.03%), 기타작물(기준연도 산출비중 0.24%) 및 과일·채소(기준연도 산출비중 0.91%) 등이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중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 및 일본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곡물은 정태모형에서 43.03%,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47.26%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작물은 정태모형에서 15.54%, 자본축적모형에서 15.84%, 과채류의 경우는 정태모형에서 4.04%, 자본축적모형에서 3.60% 감소하고 있다. WTO DDA 협상에서 논의 중에 있는 SSM(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을 고려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생산감소가 CGE 결과와 같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생산은 자본축적모형(시나리오 1)의 경우 곡물, 기타작물, 과채류에서 각각 3.31%, 1.47% 및 1.36%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의 민감품목인 육류 생산도 3.69%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곡물, 기타작물 및 과채류의 생산은 자본축적모형에서 각각 7.98%, 6.76% 및 0.94% 증가하고 있다. 양허에서 제외된 쌀(정미)의 경우는 한국의 생산량이 2.6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일 FTA로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농업품목은 수출가능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타가공식품 및 축산물이다. 기타가공식품(기준연도 산출비중 2.29%)의 경우 자본축적모형에서 34.23%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 등 육류의 생산도 13.98% 증가하고 있다.

곡물, 기타작물, 과채류의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의 경우, 농산물 상대가격체계가 시나리오 1에 비해 왜곡되면서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 곡물의 경우 -47.26%(시나리오 1)에서 -22.24%(시나리오 2)로 생산량 감소가 둔화되었으며, 채소 및 과일의 경우는 (-)에서 (+)로 부호가 전환되었다. 기타작물의 경우 -15.84%에서 -19.69%로 생산량이 더욱 감소했다. 이를 반영하여 기타가공식품의 생산은 시나리오 1의 34.23% 증가에서 19.15%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육류생산의 증가도 13.98%에서 9.89%로 둔화되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생산이 시나리오 1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한국 및 일본에서의 민감품목 관세인하폭 둔화로 보다 많은 자원이 중국 제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한·중·일 FTA에 따른 생산변동(자본축적모형)

(단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쌀	2.68	0.15	-0.53	1.64	0.35	-0.51
곡물	-47.26	7.98	-3.31	-22.24	-0.39	-1.11
채소 및 과일	-3.60	0.94	-1.36	0.91	0.84	-0.96
기타작물	-15.84	6.76	-1.47	-19.69	-0.72	-1.46
산동물	15.21	0.69	-1.87	10.07	1.19	-1.87
육류	13.98	5.65	-3.69	9.89	7.20	-3.71
기타가공식품	34.23	1.58	-0.75	19.15	2.61	-0.59
음료 및 담배	4.84	0.34	0.21	4.06	0.53	0.19
임산물및수산물	9.47	0.53	-0.10	4.74	0.82	-0.08
채취업(광업)	-5.08	-0.38	-2.90	-5.18	0.23	-2.75
제조업	2.87	0.41	0.53	3.24	0.77	0.50
서비스업	2.66	1.03	0.19	2.36	1.27	0.17

나) 농가피해 규모

CGE 모형에서는 금액기준으로 부문별 피해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FTA 이후 상대가격 변화를 반영한 것이어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대안으로 앞서 계산한 물량기준 생산변동에 현재의 가격을 곱하여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FTA의 경제적 이익 과급경로 및 결과인 가격하락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한·중·일 FTA와 한·중 FTA의 차별성이다. 일반적으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유사할 것으로, 따라서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중·일 FTA의 경우 농업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력(RCA, TSI)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의 경우 일본이라는 완충지대의 부재로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되는 바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먼저 시나리오 1에 따른 농업부문의 산출액(중간재 포함) 감소, 즉 피해규모를 보면 그 규모가 예상보다 미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생산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곡물(약 8억 1천만~8억 9천만 달러), 기타작물(약 6억 3천만 달러), 과일 및 채소(약 4억 7천만~6억 1천만 달러 수준) 등이다. 이 세 품목에서의 산출액 감소는 정태모형에서 약 21억 달러 수준에 이르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약 19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육류 및 기타가공식품의 산출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정태모형에서는 각각 5억 3천만 달러, 17억 달러의 생산액 증가가 있으며,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는 각각 6억 1천만 달러, 20억 달러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다.

곡물, 과채류 및 기타작물의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에 따른 산출액 변동은 생산량 변동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본축적모형 결과를 통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 8억 9천만 달러 산출액이 감소했던 곡물의 산출액은 4억 7천

만 달러 감소로 둔화되었고, 시나리오 1에서 4억 7천만 달러 산출감소를 기록했던 과채류는 시나리오 2에서 산출액이 3억 8천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 부문에서 관세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산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타작물의 산출액 감소는 7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증가하였다. 수출가능 품목인 기타가공식품의 경우 시나리오 2에서는 정태적으로는 9억 1천만 달러의 산출액 증가가 예상되며, 동태적으로는 11억 8천만 달러의 산출증가가 예상되었다.

시나리오 2에서 한국의 경우 양허에서 제외된 쌀(벼 및 정미)의 산출액도 6억 3천만~9억 1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현실성은 낮을 것이다. 대일 수출증가에 따른 결과인바, 한국쌀과 일본쌀의 동질성 가정을 완화한다면 한국쌀의 생산이 이와 같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3-5. 한·중·일 FTA에 따른 산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쌀	750	1086	633	913
곡물	-814	-888	-482	-474
채소 및 과일	-614	-466	232	384
기타작물	-630	-625	-753	-755
산동물	512	648	401	485
육류	530	605	450	488
기타가공식품	1,697	1,987	908	1,176
음료 및 담배	-3	92	36	106
임산물/수산물	419	504	239	290
채취업(광업)	-150	-68	-144	-68
제조업	3,240	16,635	4,568	17,634
서비스업	15,654	25,306	15,371	23,291
농산물 ①	-267	361	481	1,042
가공식품 ②	1,694	2,079	944	1,282
채취 ③	269	437	95	222
제조업 ④	3,240	16,635	4,568	17,634
서비스 ⑤	15,654	25,306	15,371	23,291
합계(①~⑤)	20,590	44,818	21,460	43,471

4)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한·중·일 FTA로 3국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교역수지 또한 변동한다. 부문별로 볼 때 금액기준으로 교역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농업부문은 역시 곡물, 기타작물 및 채소·과일이다. 곡물의 경우 정태분석에서는 9억 7천만 달러의 교역수지가 악화되나,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경우는 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교역수지 악화가 둔화되고 있다. 기타작물 및 채소·과일의 경우는 정태분석 및 자본축적모형에서의 교역수지 악화 정도가 유사하다. 기타작물에서의 수지변동액은 7억 3천만~7억 8천만 달러 수준이며, 채소·과일에서의 변동액은 3억 6천만~3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세 품목에서의 무역수지 감소액은 정태분

표 3-6. 한·중·일 FTA에 따른 교역변화(시나리오 1)

(단위: %, 백만 달러)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수출액(%)	수입액(%)	교역수지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교역수지 (백만 달러)
쌀	-17.38	12.8	-8.22	-23.65	19.71	-12.04
곡물	179.42	65.56	-972.39	216.46	30.63	-453.06
채소 및 과일	20.2	149.87	-357.47	17.40	153.14	-374.91
기타작물	96	62.79	-776.28	90.93	58.93	-728.01
산동물	49.55	-2.99	60.34	47.56	0.08	24.57
육류	680.57	-1.36	550.28	598.72	0.74	462.54
기타가공식품	180.02	-8.63	3,104.95	183.89	-9.96	3,143.63
음료 및 담배	33.01	7.02	65.1	34.28	7.89	64.12
임산물및수산물	9.17	15.43	-126.62	8.96	19.05	-158.96
채취업(광업)	-11.94	-0.3	66.85	-8.80	3.25	-776.20
제조업	5.43	9.96	-1,514.41	8.98	11.99	2,002.20
서비스업	-4.75	6.45	-3,300.37	-3.69	8.08	-3,399.31

석에서 21억 1천만 달러, 자본축적을 고려한 분석에서 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음료 및 담배를 제외한 기타가공식품에서의 교역수지 증가액이 31억 달러에 달해 앞에서 언급한 세 품목에서의 교역수지 악화를 완전히 상쇄하고 있다.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에서 육류, 기타가공식품 및 곡물의 수출이 기준 연도(GTAP)에 비해 각각 6.8배 및 1.8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가격(FOB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 FTA에 따른 교역변화를 종합하면, 한편에서 특화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FTA의 교역량증대 효과가 매우 큰 규모로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한·중·일 FTA와 한·중 및 한·일 FTA 비교

일반적으로 한·중·일 FTA와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유사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한·중·일 FTA와 한·중 FTA가 농업에 주는 충격이 차별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FTA의 경우 농업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력(RCA, TSI)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의 경우 일본이라는 완충지대의 부재로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되는 바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산물의 관세를 50% 인하하는 동일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중·일, 한·중 및 한·일 FTA에 따른 농가피해규모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GDP 증가 및 동등변화를 통해 볼 때 한·중·일 FTA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한·중 및 한·일 FTA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 및 한·일

FTA의 파급효과를 합한 것보다 한·중·일 FTA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FTA 교역량증대 효과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표 3-7. FTA별 거시경제효과 비교(농산물 및 축산물 50% 관세인하 효과)

(단위: %, 백만 달러)

	한·중 FTA		한·일 FTA		한·중·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 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 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 모형
GDP증가(%)						
수량기준	0.04	0.62	0.15	0.88	0.26	2.60
금액기준	-0.68	-0.2	0.14	0.65	2.48	4.19
동등변화(백만 달러)	-175.13	1,433.37	663.68	2,692.97	3,870.46	10,483.49
가계소득증가(%)	-0.05	0.46	0.18	0.71	2.59	4.01
민간소비지출증가(%)	-0.04	0.45	0.17	0.69	2.33	3.71
수출액증가(%)	0.94	1.56	1.71	2.57	4.17	8.59
수입액증가(%)	1.91	2.19	2.62	3.14	5.88	9.93
교역수지(백만 달러)	-1,289.78	-582.73	-980.73	-174.68	-2,339.29	330.87
자본축적(%)		1.23		1.57		5.06

농업 산출액(중간재 포함) 변동을 보더라도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 산출액 변동이 한·중 FTA에 따른 변동과 한·일 FTA에 따른 변동의 합계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농산물의 경우 한·중 FTA에서는 기준연도 기준으로 9억 4천만 달러, 한·일 FTA에서는 2억 6천만 달러의 산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중·일 FTA에서는 1,100만 달러 규모의 산출증가를 실현하고 있다(정태모형). 축산물의 경우는 한·중 FTA에서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산출액이 감소하나, 한·일 및 한·중·일 FTA에서는 각각 9억 3천만 달러 및 8억 4천만 달러의 산출증가가 나타나고 있다(정태모형).

표 3-8. FTA별 생산액 변화 비교(농산물 및 축산물 50% 관세인하 효과)

(단위: %, 백만 달러)

	한·중 FTA		한·일 FTA		한·중·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농업	-1,243.60	-918.40	496.30	731.20	1,864.10	3,000.80
축산물	-231.10	-184.60	930.90	838.20	842.20	802.00
농산물	-935.20	-806.80	-262.30	-136.70	11.40	469.00
가공식품	-77.30	73.00	-172.30	29.70	1,010.50	1729.80
제조업	-736.90	1,898.80	-1,288.10	2,373.00	4,731.40	16,002.20
전 산업	-2,090.50	2,723.00	2,217.30	8,391.60	21,277.70	41,721.80

이와 같이 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다. 부분균형분석의 경우 한·중·일 FTA가 농업에 주는 환류효과를 포착하지 못하여 피해액을 크게 상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반대로 CGE 분석의 경우는 관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검역상의 문제¹⁴⁾를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과장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E 분석에 의하면 역시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약 없는 한·중 FTA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중 농산물 수입증대가 발생하여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FTA 추진시 농업의 완전개방에 직면할 경우, 결국 FTA 타결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한·중 FTA 추진과정에서 민감품목의 선정과 예외조건의 수준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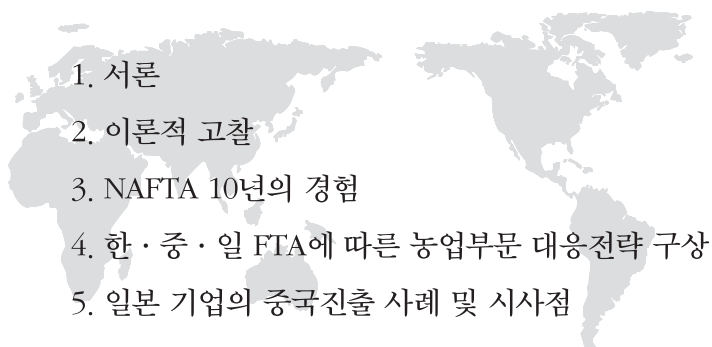
또한 한·중 FTA 체결시 예상되는 국내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생산공정으로의 자원집중,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중

14) [부표 3]~[부표 6] 참고.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는 필연적으로 국내 저부가가치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FTA 추진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한·중·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FTA가 농업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무역패턴의 변화로 무역장벽에 의해 지연되었던 산업특화 혹은 품목특화가 빠르게 일어나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서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서는 역내 수출수요가 증가하여 국내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prediction)에 근거하여 한·중·일 FTA로 비교우위가 없는 우리나라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으며, FTA 협상 체결의 민감한 장애요인으로 농업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둘째는 CGE 모형에서 반영되어 있듯이 중국산 농산물과 한국산 농산물의 불완전 대체성(아밍턴 가정)으로, 특화전개와 함께 FTA 회원국간 무역량이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이 경우 관세 혹은 비관세 형태의 무역장벽 철폐는 회원국간의 무역량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무역량보다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소규모 국가 수출의 대규모 시장 접근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돼 비교열위 품목일지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NAFTA의 10년 경험은 FTA에 따른 무역량증대 효과가 특화전개 효과보다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록 4 참고). 즉 단기적으로는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이 제시하듯이 FTA 체결 이후 경쟁력 있는 품목의 생산 및 수출 확대와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감소 및 수입급증이 발생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특화전개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인 양상이 전개되면서 농업 경쟁력이 없는 품목군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본 장의 목적은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특화전개 및 무역량증대 효과

가 동시에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농업부문 대응전략의 큰 그림을 구상하는 것이다. 2절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3절에서는 NAFTA 10년 경험을 통해 무역량증가 효과로 비교열위 산업이 생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농업부문 대응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이론적으로 무역장벽은 국가간의 산업특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FTA를 통하여 역내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불완전 특화의 균형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해 가는 과도기에 무역 패턴의 변화(헥셔-올린-바넵 이론)와 함께 무역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H-O(Heckscher-Ohlin)의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FTA에 따른 무역패턴의 변화는 각 국가에 주어진 초기자원(resource endowment)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폐쇄경제하에서 한 국가는 자본·노동집약적인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지만, FTA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국가간 산업특화가 촉진된다. 자본부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는 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을, 노동부존비율이 큰 나라는 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생산하게 된다. 이후 무역을 통해 두 재화를 교환하면 폐쇄경제하에서보다싼 가격에 두 가지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두 국가의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 국제무역이론은 상이한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간의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에 미치는 FTA 효과, 즉 FTA에 의한 산업간 무역패턴의 변동을 부존자원비율의 차이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요소부존비율의 차이에 근거한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이 무역패턴의 변화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즉 FTA 체결 이전에 두 국가간 교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관세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를 반영한 교역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FTA에 의한 무역자유화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는 급격한 무역패턴의 변화라기보다는 무역량 증가, 즉 비교우위 품목에서의 수출 증가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 무역이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두 나라간 교역이 전무했거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했을 경우, FTA로 빠르고 극단적인 무역패턴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한·중 및 한·일간에 오랫동안 비교우위를 반영한 농업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UR(우루과이라운드), WTO DDA 등 다자간 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로 농업무역패턴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과장된 우려일 것으로 판단된다. 단, 한·중 농업교역에서 검역절차에 의해 교역이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FTA로 검역에 근거한 무역장벽이 해소된다면 동 품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이 발생할 것이다.

나. 산업내무역 이론

최근 국제무역의 패턴은 전통적 비교우위이론이 제시하는 산업간 교역특화의 패턴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슷한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간 유사 상품에서 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초기 부존자원 비율이 유사한 유럽국가들간 동종 제품(자동차, 컴퓨터 등) 교역량이 큰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농업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요한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NAFTA/CUSFTA를 통해 많은 양의 동종 농산물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헥서-올

린의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무역형태를 산업내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에 근거한 불완전경쟁 이론이다. 어떤 재화가 IRS(increasing returns to scale) 기술하에서 생산될 경우, 유사상품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부존자원의 한계에 의해 한 국가가 모든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 경우 비슷한 요소부존 특성을 가진 국가들은 동종의 유사제품 안에서 생산을 특화하게 된다. 다양성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두 국가는 유사상품을 상호 교역하게 됨으로써 산업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Krugman 1980; Helpman and Krugman 1985). 동 이론은 특히 선진국간 자동차 등 공산품 교역을 잘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아밍턴(Armington) 이론이다. 모든 제품은 생산된 지역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므로 한 국가가 모든 품목을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산 쌀과 중국산 쌀은 각각 원산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쌀이라는 동질적 재화라기 보다는 사실상 이질적 재화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기술에 의해 생산되더라도 상호교역이, 즉 산업내 무역이 발생한다(Armington 1969; Head and Ries 2001). 이러한 아밍턴 이론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처럼 농산물의 산업내 무역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에서는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 가정을 활용하여 아밍턴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즉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동질적 재화로 보는 경우 대체탄력성을 높게 가정하지만, 이질적 재화로 보는 경우 대체탄력성을 낮게 가정(calibration)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FTA 효과, 즉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내 무역 변동결과에 서로 상반된 시사점(prediction)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서의 생산이 증가하여 FTA의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지만, 아밍턴 이론의 경우 생산지 이동의 유인이 없을 뿐더러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어 소규모 국가가 FTA의 이익을 더 많이 향유하게 된다.

IRS와 상당 수준의 수송비 존재를 가정하는 경우 시장규모가 큰 나라(구매력이 큰 나라) 쪽으로 산업특화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국내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의 주원인은 수송비다. 수송비 절감을 위해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국가 쪽으로 이전하여 생산하고, 소규모 시장에 역수출로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IRS 이론에 부합하는 상품의 경우 FTA 이후 경제규모(시장규모)가 큰 국가에서 작은 국가로의 수출이 양국간 총무역량 증가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Head and Ries 2001).

이에 반해 아밍턴 이론하에서는 상당 수준의 수송비가 존재하더라도 재화가 생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기업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이동할 유인이 없다. 이 경우 FTA의 무역자유화에 따라 소규모 국가의 대규모 시장 국가로의 시장접근 기회가 더 확대되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FTA에 따라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로부터 큰 국가로의 수출은 두 나라의 총무역량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종합하면, 산업내 무역의 경우 시장 특화의 방향이 시장규모, 운송비, 생산기술 그리고 상품의 성질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각 산업에 따라 그 방향이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조업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내 농산물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수입재와 국내재를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이질적 재화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⁵⁾ 따라서

15) 그러나 가공식품의 중간재나 일반 식료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 국내재와 수입재를 이질적으로 인식하는 선호체계는 일반가정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을 것이다.

한·중·일 FTA에 따른 중국 농산물 수입의 가능성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중국시장 접근기회가 확대되면서 한국 고급 농산물에 대한 중국 고소득층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NAFTA 10년의 경험¹⁶⁾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을 보면 FTA 이후 경쟁력을 반영한 특화가 진전되었다기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경쟁력 및 비교우위 취약품목군에서도 FTA 이후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교열위 농업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시장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FTA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NAFTA 이전 미국-멕시코간 육류교역을 보면 미국이 멕시코에 비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즉 미국의 무역점유율(양국간 육류교역에서 미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FTA 이후 특화가 전개되어, 즉 미국의 일방적 수출 증가로 멕시코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국의 무역점유율은 FTA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그림 4-12 참고). 반대로 미국과 멕시코간 육류교역 규모는 NAFTA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9년 약 2억 달러였던 교역규모가 1995년 이후 급증하여 2004년 약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부그림 4-11 참고)

16) 조규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부록 4에서 수정 정리)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양국간 곡물교역도 육류의 경우와 같이 미국이 멕시코에 대하여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화가 전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기보다는 무역량이 증가하는 결과만 보여준다. 멕시코 곡물생산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육류의 경우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약 98%였던 무역점유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90% 이하로 하락하였다(부그림 4-16 참고).

다른 품목그룹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간 채소류 무역은 CUSFTA와 NAFTA 체결 이후 무역증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1989년 약 5억 달러였던 채소류 무역량이 2004년 35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 약 7배 증가하였다(부그림 4-17). 미국-캐나다 채소류 교역을 살펴보면 CUSFTA 체결 이전 미국이 무역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즉 캐나다가 경쟁열위에 있었으나,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특화전개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약 80%였던 무역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2004년 6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부그림 4-18 참고).

다음 미국-캐나다 과일류 교역을 살펴보면 미국이 FTA 이전 비교우위를 보였다. CUSFTA 이행 초기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품목군과는 달리 급속한 무역량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1990~96년 기간 무역량 변동이 없었으나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무역점유율은 과일류의 경우도 다른 품목군과 같이 CUSFTA 이행 초기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후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1990년 92%에 달하던 미국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4년 약 80%를 기록하고 있다(부그림 4-23 참고).

FTA로 한국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현실 속에서 NAFTA 10년의 경험은, 앞으로 많은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농업에 몇 가

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부록 4가 주는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 이후 기본적으로 FTA 회원국간 교역량 증가가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교역량 증가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즉 회원국간 무역량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무역량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위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무역량 변화는 절대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증가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둘째, FTA 이행 이전 산업내 무역이 존재하는 경우 FTA가 산업내 무역 패턴에 미치는 효과가, 즉 이행초기 효과와 장기효과가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CUSFTA 이행초기 미국의 무역점유율(미국 수출의 양국 교역량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의 관세감축 폭이 더 컸거나 시장접근 분야에서 제도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염려하는 국내농업 충격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상대적 시장규모(구매력)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산업내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비교우위 농업품목군 중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NAFTA 이행 이후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캐나다간 무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국가의 소득수준 및 농업생산성 등이 유사함을 고려할 때, 농산물의 경우 두 국가간의 생산력 격차보다는 시장규모(또는 구매력)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FTA 이후 농산물 무역의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Head and Ries 2001; Feenstra; Markusen; Rose 1998). 즉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국가보다 FTA의 이익을 더 많이 향유할 가능성이 크다.

NAFTA 10년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고려할 때 향후 한·중·일 FTA에 대

비한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시 특화전개에 따른 대책(양허안 작성시 취약산업 보호대책 및 경쟁력 우위 특화품목 도출)과 함께 무역량 증대에 대비하는 정책적 구상(지역특성을 살리는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 전략, 중국진출 가공생산 후 수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다.

4.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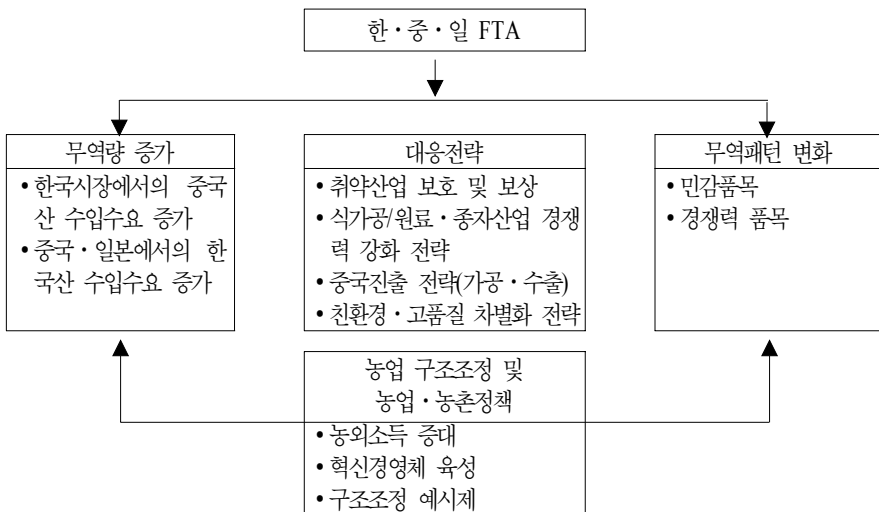
이론적 고찰 및 NAFTA 10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결국 FTA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무역변화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반영하여 특화가 전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전자를 압도하게 된다.

무역패턴 변화에 따라 특화가 전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경쟁력 없는 취약품목은 수입수요 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략으로 FTA 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품목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겠다. FTA 체결 이후에는 FTA로 타격을 받은 취약산업을 보상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군(예를 들면 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에 대해서 정부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시장접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FTA의 특화전개 효과를 가정한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역량증대 효과에 대비하는 정책적 구상일 것이다. FTA로 회원국간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중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산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FTA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차별화 전략을 거론할 수 있겠다. 국산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재화로 또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품질·한국특유 농산물을 중국의 고급 농산물 수요시장 및 일본의 틈새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재배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가공 후 한·중·일 역내 시장에 재수출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 FTA 파급효과 및 이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사실 특화전개 대응전략 및 무역량증가 대응전략이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패턴 변화 및 무역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FTA의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예상되는 FTA의 두 가지 직접적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직접적 대응전략만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완료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및 농업·농촌 정책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흐름 속에서 한·중·일 FTA 대응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농외소득 비중을 증가시키고 전 국민적 합의하에 농업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가는 대응책 마련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그림 4-1]과 같이 총 7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응전략은 역시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상이다. 한·중·일 FTA 협상전략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화 또는 다자간 협상 수준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5장 및 부록 3 참고). FTA 체결 이후에는 무역자유화로 타격을 받은 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6장 1절 참고). 또한 현재 한·중 농업교역에서 검역절차에 의해 중국의 비교우위가 억제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하는 것도 양국간 FTA로 한국 농업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전략은 농업품목 중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나 산업내 무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협상안에 반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6장 3절 참고).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 상위품목인 당류, 면류, 주류, 사탕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고 유제품, 인삼류 등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 수출 상위품목인 채소류와 축산물(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돼지고기 등)에 대한 친환경·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즉 민감품목 및 경쟁력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5장 및 부록 3에

서 검토할 것이며,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6장 1절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세 번째 대응전략은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이다. 중국에 FDI 형태로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일본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부록 1 참고).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본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네 번째 대응전략은 친환경·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이다(6장 4절 참고). 국내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선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측면은 물론 원산지표시제 및 성분검사 등 유통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리 농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감 유지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화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타 작목으로의 전환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 대응전략은 FTA의 직접적 결과를 넘어서는 농업 구조조정 및 농촌대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다(6장 2절 참고).

다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외소득 증대방안이다(6장 5절 참고). 농업소득, 특히 쌀 소득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가소득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의 비중이 큰 특징을 갖는다. 쌀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10%, 농외소득 비중이 90%에 이른다.¹⁷⁾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주업농가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일본의 2001년 농업소득 통계를 보면 농업소득 비중이 농가소득의 17.9%로 상당히 낮다. 대부분의 농가소득은 높은 수준의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농가는 개방에

17) 그러나 파프리카나 토마토의 경우는 전업농이 많기 때문에 예외다.

따른 충격이 작아 개방 적응력이 우리보다 높다. 즉 일본에서는 농외소득이 소득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농산물 개방의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FTA 농업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대응전략은 농민 및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혁신체 창출이다. 현재 농민은 한편으로 UR 이후 농업개방 경험에 근거하여 개방농정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농업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농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민 및 정부는 정부지원정책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또한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농민에 대한 단기적 선택적 피해보상정책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 농민의 장기적 잠재력 발전을 저해하고 도리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경제 여건의 변화와 영리적 현실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민이며, 그 역할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농민의 책임감을 북돋우고 혁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농민단체도 대정부 협상으로 보상을 극대화하는 역할에서 농업 기업가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가공수출하는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대응전략은 농업개방 예시제다. 과거 제조업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방 스케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추어 기업은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 개방체제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 및 속도를 공표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창의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WTO DDA 협상 결과 및 고령농 자연은퇴 전망, 그리고 사회보장성 예산확충 전망을 고려하여 품목별 개방시점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된 시점보다 더 빨리 개방하여 농가피해가 발생한다면 취약산업 피해보상

대책에 근거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¹⁸⁾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일본의 식품기업은 미국, 유럽, 대만 등과 같이 대중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 식품기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대중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최근 2년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시장을 목표로 한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낮은 인건비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중국이 노동집약적 식품가공기지로써 적합할 뿐 아니라, WTO 가입 후 유통·물류의 전면개방으로 중국시장이 주요 판매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식품기업의 가공업체, 제과업체, 외식업체의 대중투자 확대는 조미료, 마가린 등 관련소재업체에서 저온냉장, 수송, 보관 등의 유통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 말 대만에 진출했으나 대만의 인건비가 상승하자 1970~80년대에는 태국으로 투자를 전환한 바 있다. 이 또한 비용압력이 거세지자 1992~95년 중국으로 투자처가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중국 투자기업이 일본 소비자에게 맞는 식가공품을 중국 현지에서 기획·생산한 후 일본에 재수출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본 식품기업의 대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었던 1993~98년 기간 대중투자는 원재료나 인건비의 가격인하를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중국을 가공기지로 삼고 가공품을 일본으로 역수입하는 패턴이었다. 주로 중국의 청

18) 본 절은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성춘, 박지현, 송유철이 작성한 중국 및 일본 출장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부록 1 참고).

다오, 상하이 등 연해지방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뿌리가 있는 것(우영, 버섯류, 콩 등), 냉동보존이 쉬운 것 위주로 일본에 재수출하였고, 앞서기 있는 채소류의 일본 수출은 불가능하였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02년도 일본 식품관련 기업의 대중 투자액은 91억 엔으로 전년대비 532%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내수판매용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식품가공기업은 1천 개사 정도다. 2002년 이후에는 중국을 미래의 주요 판매시장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일본 식품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내시장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급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중국에 진출한 일본 식품기업인 일청기업, 카토요시 등은 초기에는 생산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중국시장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상하이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상하이에 진출한 일본 산토리 맥주업체는 중국인의 기호를 조사해서 이들의 입맛에 맞는 맥주를 제조하여 2002년 상하이시 맥주시장의 26.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의 제과업체, 음료업체, 외식업체 등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냉동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튀김가루, 어묵 등의 프리믹스 등은 당초 일본에서 수입되었지만 일본 제분업체의 대중투자자로 현지 생산을 개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식품기업의 진출에 따라 원재료 생산이나 포장지 인쇄분야 등 주변산업의 중국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 식품기업은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원적인 관리를 통해 잔류농약 검사체제를 강화하였다. 중국 농가와 계약한 후 엄격한 규제를 통해 계약재배한 것

만 구입하여 가공 생산함으로써 잔류농약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 안전성 대책을 강화한 일본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중국 식품기업의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어지고 중국내 식품기업의 효율화가 증대된다면 중국은 향후 세계 식품가공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외국자본 유입증가에 따라 중국 식품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중국내 국제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런 경쟁환경 속에 중국 기업도 선진기업의 행동패턴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였다. 즉 외국자본계 기업의 선진적 생산관리기술의 보급으로 중국 식품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 투자해서 성공한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증가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쟁으로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식품관련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본의 투자증가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1) 식품가공기지 및 판매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 활용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유럽, 미국, 대만, 일본 등의 대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낮은 인건비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노동집약적 식품의 가공기지로 적합한 입지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거대한 잠재력을 갖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대중투자를 통한 수출입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고소득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한국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FTA로 시장접

근기화가 확대될 경우 소규모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아빙턴 이론을 감안할 때, 대중 농산물 수출전략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이, 칭다오, 톈진 등 중국 연안도시들의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맛과 안전성 등 품질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품질별로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고품질(유기농, 친환경 등)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현지 계약재배를 통한 우리의 수출입 전략

부록 1의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고지가, 고임금 등 높은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비용 생산구조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중국에 계약재배 방식으로 투자한 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고품질 농산물을 중국 현지에서 재배한 후 일본이나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업구조를 보면 쌀을 제외한 곡물류의 경우 국내생산은 감소추세에, 수입의존도는 증가추세에 있다.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의 경우는 자급률이 높으며, 일부 수출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현지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 농산물 중 중국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중국 현지 계약재배 방식의 생산 이후 저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해당품목으로 곡물류, 옥수수, 대두 등의 품목을 거론할 수 있겠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중국 투자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농민이나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하여 한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가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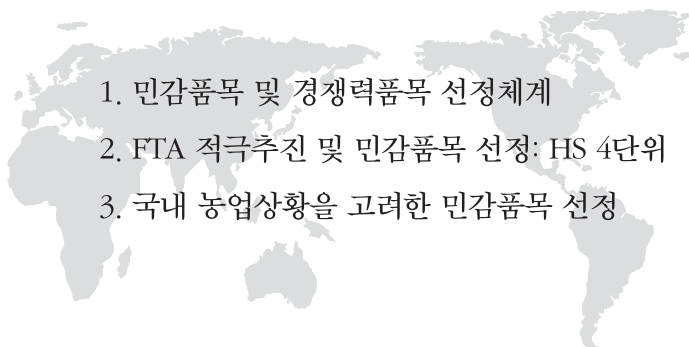
급할 수 있다면 한국, 중국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농민단체나 농업 전문가는 물론 기업·지역 협동조합을 매개체로 한 농민들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의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직접 현지 농업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면, 한국 농민이 새로운 경영혁신 주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국 현지 계약재배 이후 중국시장 또는 제3국 시장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중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을 선정한 후, 일본이 중국 현지에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농민단체 및 식가공 기업도 현지생산 후 현지판매 또는 수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대상품목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 중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품목 및 수출비중이 큰 품목(유지가공품, 면류 등의 가공식품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가공식품 및 낙농제품은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품목이다. 우리 가공식품기업(풀무원, CJ 등)이 투자·진출하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정부가 현지 기업설립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중국투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같이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수출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이 감소하거나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현지 투자를 통한 재수입으로 안전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전략으로 판단된다.

제5장

한·중·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일반적으로 FTA 협상에서 상품 양허시 해당상품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적인 양허안을 낸다. 국내적으로 민감도가 큰 농산물의 경우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안을 작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는 한·중·일 FTA에 대비하여 민감농산물을 선정, 한·중·일 FTA 협상 양허안 작성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FTA 협상에서 품목별 차별화 협상전략을 구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민감농산물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에 주는 파장일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수입국 간 대체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간 각종 FTA 협상추진시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감품목을 선정해 오고 있다. 본 보고서도 같은 맥락에서 한·중·일 FTA 민감농산물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3절 및 부록 3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NAFTA의 경험, 특히 멕시코 사례를 볼 때 경쟁력에 근거한 특화전개로 취약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효과보다는 FTA에 따른 교역량증가 효과가 더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의 경우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물론 취약 농산물에도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세계에서는 보다 일반적이다. 제4장의 이론적 검토 및 제3장의 CGE 분석결과도 이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FTA 체결 이전에 추정된 피해액에 근거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신청이 생각보다 적었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농가지원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FTA의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에 근거,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해 보기로 한다. 물론 경쟁력 지표만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도 역시 FTA 체결국간 경쟁력 차이를 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감품목 선정체계와 다르지 않겠지만,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미칠 파장된 영향력을 차

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농정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들은 3절 및 부록 3에 수록된 국내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⁹⁾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본 장에서는 농업품목군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한·중·일 FTA 협상 양허안 작성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FTA 협상에서 품목별 차별화 협상전략을 구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1품목군(경쟁력 강품목군): 경쟁력이 커서 즉시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후보군.
- 제2품목군(경쟁력 약품목군): 제1품목군보다 경쟁력이 작으나, 제3품목군보다는 경쟁력이 커서 조건부로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후보군.
- 제3품목군(경쟁력취약 민감품목후보군)
- 제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 사회안전망 개념의 민감품목후보군):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이 위낙 없어 FTA에 따른 추가적 무역자유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이나, 농업의 경우는 제3품목과 함께 민감품목후보군임. 사회안전망에 의한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개방 검토가 가능한 품목임.

19) 제3장 3절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각종 비관세장벽은 물론 보조금, 관세율, TRQ 등이 적용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무역통계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한 요인이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으로 작성된 무역통계가 각 품목의 경쟁력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절에서는 4단계를 거치면서 품목군을 조정하여 4개의 품목군을 분류해 내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대세계 무역실적 비교우위지수(RCA 지수, 절대적 경쟁력지표)를 출발점으로 활용하여 품목군 분류를 시작한다. 2단계에서는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 선정의 오류(쉽게 포기하여 손해 볼 가능성 배제)를 찾아 수정하고자 한다. 즉 실질적으로 3품목군 해당품목으로 보호가 필요하나 4품목군으로 분류함으로써 조건부 자유화를 검토하는 오류를 배제하고자 한다.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대상국가와의 무역특화지수)을 고려하여 품목군을 조정한다. 한·중 및 한·일 민감품목 및 경쟁력 강품목 및 경쟁력 약품목을 선정한다. 4단계에서는 대상국별로 선정된 품목군을 다시 절대적 경쟁력지표를 사용하여 보완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미국 수입특화 품목일지라도 대세계 경쟁력이 아주 강할 경우 무세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각 품목군별 후보품목을 선정한 후, 5단계에서는 경쟁력 강품목군, 경쟁력 약품목군 및 민감품목군 내에서 미세조정하며 협상전략 세분화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품목군에서의 수출입 비중의 크기를 비교하여 품목을 설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경쟁력 강품목 중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압도하는 경우 경쟁력 약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압도하는 경우 1품목군에서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관세율과 품목의 수입비중 및 보완성 정도를 고려하여 국내에 미칠 충격 정도를 차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세율과 수입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완성 정도가 낮을수록 민감도가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관세율과 수입비중이 낮을수록 그리고 보완성 정도가 클수록 민감도는 감소할 것이다.

가. 제1단계

1단계에서는 모든 상품의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RCA 지수)에 의해 4개 품목군으로 분류한다.

표 5-1. RCA_j^k 값에 따른 품목군 분류기준

품목군	기 준	설 명
제1품목군	$RCA_j^k \geq 1$	경쟁력 강품목군(FTA 적극추진후보 품목군)
제2품목군	$0.5 \leq RCA_j^k < 1$	경쟁력 약품목군(조건부 협상추진후보 품목군)
제3품목군	$0.1 \leq RCA_j^k < 0.5$	보호대상 품목군(민감품목후보군)
제4품목군	$RCA_j^k < 0.1$	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군(사회안전망 조건부 민감품목후보군)

[표 5-1]에서 제1품목군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으로, 협상에서 무세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품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4품목군은 우리나라가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경쟁력 취약을 보이고 있는 품목으로, FTA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품목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볼 때 역시 농가소득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군이다. 제2품목군과 제3품목군은 각각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다소 취약 또는 많이 취약한 상태로 외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가능한 품목(조건부 무역자유화 추진품목)과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 후보로 해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으로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나. 제2단계

2단계에서는 RCA 증가율(장래 경쟁력 확보 가능성)로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

취약 품목군) 선정의 오류(쉽게 포기하여 손해 볼 가능성 배제)를 수정하고자 한다. 앞의 제1단계에서는 단순히 대세계 RCA 지수를 이용한 경쟁력만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각 품목별 동태적인 경쟁력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제2단계에서는 경쟁력은 절대적으로 약하지만 RCA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품목인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확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들 품목을 제3품목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이러한 과정만으로 4품목군 선정의 오류를 극복할 수 없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농업의 경우 경쟁력이 워낙 없어도 이를 개방할 경우 실질적으로 자원이동이 발생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공적부조) 비용발생이 요구되나 이 또한 미비한 상태로 사실상 보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4품목군 또한 사회안전망 개념에서 보호가 필요한 품목군이라 할 수 있다.

표 5-2. 제2단계에 의한 변화

변 화 기 준	제1단계	제2단계
	제1품목군	
	제2품목군	
	제3품목군	
RCA_j^k 가 증가하는 경우	제4품목군	제3품목군

다. 제3단계

3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협상대상국, 즉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특화지수(협상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로 품목분류를 조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협상대상국(일본, 미국 및 중국)에 대해서는 경

경쟁력이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평가에서 경쟁이 치열(제2품목군)하거나 경쟁력이 취약(제3품목군)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가운데 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을 추출하여 이들을 제1품목군(경쟁력 강품목군)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1품목군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품목을 추출, 이를 제2품목군(경쟁력 약품목군)으로 이동시킨다. 즉 앞의 제1단계에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경쟁력 평가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수출특화 품목군(제1 품목군)으로 분류되었으나, 협상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제2품목군으로 이동시킨다.

표 5-3. 제3단계에 의한 변화

변 화 기 준	제2단계	제3단계
TSI_{ij}^k 에 의해 제2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1 품목군	제2품목군
TSI_{ij}^k 에 의해 제1 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2품목군	제1 품목군
TSI_{ij}^k 에 의해 제1 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3품목군	제1 품목군
	제4품목군	

라. 제4단계

3단계에서 협상대상국별로 선정된 품목군을 다시 절대적 경쟁력 지표를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4단계는 3단계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경쟁력 수준을 강조한 것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단계다. 즉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분류한 것을 다시 절대적인 대세계 경쟁력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중국 수입특화 품목일지라도 대세계 경쟁력이 아주 강할 경우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2, 3, 4품목군 중 RCA_j^k 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RCA 지수보다 2배 이상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제4품목군에 속해 있던 품목은 제3품목군(민감품목후보군)으로 조정하고, 제2품목군(경쟁력 약품목군) 및 3품목군에 속해 있던 품목은 제1품목군(경쟁력 강품목군)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표 5-4. 제4단계에 의한 변화

변 화 기 준	제3단계	제4단계
	제1품목군	
$RCA_j^k \geq 2$	제2품목군	제1품목군
$RCA_j^k \geq 2$	제3품목군	제1품목군
$RCA_j^k \geq 2$	제4품목군	제3품목군

마. 제5단계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각 품목군별 후보품목을 선정한 후, 5단계에서는 FTA 적극추진 품목군(경쟁력 강품목군), 조건부추진 품목군(경쟁력 약품목군) 및 민감 품목군 내에서의 미세조정 및 협상전략 세분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즉 각 품목군에서의 수출입 비중의 크기를 비교하여 품목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무세화 적극추진 품목 중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압도하는 경우 전략적 무세화 추진품목으로 선정하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압도하는 경우 1품목군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본 절에서는 수산물을 제외한 농업 전체 2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군을 분류하여 단계별 결과를 [표 5-5]에서 요약하고 있다. 한·중의 경우를 보면 제1품목군이 대중국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고려대상 농업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5%)이다. 경쟁력이 약한 제2품목군(경쟁력 약품목군)의 비중은 6.73%(고려대상 농업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3%)이며, 이보다 경쟁력이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제3품목군(민감품목후보군)의 비중은 6.92%(고려대상 농업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2%)이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안전망 개념에서 보호가 필요한 4품목군의 비중은 50.85%(고려대상 농업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51%)이다.

표 5-5. 각 단계별 품목군 변화(HS 4단위)

(단위: 개)

	1단계	2단계	한·일		한·중		한·미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제1품목	4	4	37	37	16	18	12	11
제2품목	10	10	3	3	19	13	10	10
제3품목	34	35	9	9	22	22	27	28
제4품목	138	137	137	137	137	137	137	137

피상적으로 보면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한·중 FTA보다 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다. 한·미 농업교역의 경우 이미 개방화가 상당 수준 이루어진 상태로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과거 교역구조에 많은 부분 반영되어 있어 FTA로 인한 추가개방의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교역의 경우 검역절차 등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양국간 비교우위가 과거 교역에 충

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한·중의 경우는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한·미의 경우는 적정평가되어 있어 한·중 FTA에 인한 추가개방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현재 경쟁력 약품목(제2품목군) 및 민감품목(제3품목군)의 상당부분이 한·중 FTA 이후 제4품목군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한·중 FTA

본 절에서는 한·중 교역의 무역실적 비교우위지수(RCA 지수), 무역특화지수(TSI), 한국시장점유율(MS), 무역결합도지수(TII), 산업내무역지수(GL 지수)를 HS 4단위로 계산하고 있는바, FTA 양허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을 [표 5-6]에서 정리하였다. 총 200개 품목 중 18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파스타, 에틸알코올, 사탕수수 제품, 기타 견과류, 사과·배, 맥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품목들은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품목군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전략품목군이라 할 수 있다.

표 5-6. 한·중 제1품목군(강경쟁력 후보품목)

	4단계일	4단계중	RCA (한국)	TSI (중국)	MS (중국)	관세 (한국)	GL (중국)	TII (중국)	수출 비중(%) ¹⁾
버터밀크/요구르트	3	1	0.09	-0.67	0.00	43.57	0.00	0.00	0.00
절화	1	1	0.22	-0.41	15.37	25.00	0.59	96.32	0.01
토마토(신선/냉장)	1	1	0.11	-0.33	0.00	45.00	0.00	0.00	0.00
오이류	1	1	0.28	-0.33	0.00	27.00	0.00	0.00	0.00
기타 견과류	1	1	0.74	-0.68	4.46	128.10	0.32	1.11	0.06
사과·배	1	1	0.33	-1.00	0.00	45.00	0.00	0.00	0.00
기타 과일	1	1	0.13	-0.98	0.00	97.41	0.02	0.01	0.00
말가루	1	1	0.25	-0.78	16.66	4.60	0.22	2.09	0.01

[표 5-6] 계속

	4단계-일	4단계-중	RCA (한국)	TSI (중국)	MS (중국)	관세 (한국)	GL (중국)	TII (중국)	수출 비중(%) ¹⁾
사탕수수/사탕무	1	1	5.98	0.65	47.39	24.70	0.35	1.26	0.39
동물성/식물성 유지 찌꺼기	2	1	0.81	-0.93	0.44	8.00	0.07	0.98	0.00
사탕수수·사탕무의 자당	1	1	0.35	-1.00	0.00	18.67	0.00	0.00	0.00
파스타	1	1	2.28	0.55	63.71	8.00	0.45	6.05	1.33
아이스크림/빙과류	3	1	0.11	-0.71	0.23	8.00	0.29	0.42	0.00
맥주	3	1	0.19	-0.29	5.85	30.00	0.71	5.59	0.04
기타 발효주	1	1	1.43	-0.75	2.27	15.00	0.25	0.32	0.00
에틸알코올	1	1	0.35	-0.27	0.87	21.18	0.73	1.26	0.11
육/설육/어류 분/조분 /필릿	1	1	0.25	-0.29	0.26	6.00	0.45	1.67	0.00
기타 제조담배	1	1	0.41	-0.97	0.02	39.10	0.03	0.01	0.00

주: 1) 대한민국 수출비중

다음으로 경쟁력 약품목(제2품목군)은 인삼 등 13개 품목이다([표 5-7]은 13개 품목 중 주요 9개 품목만 선정). 특히 인삼은 한·미 FTA에서 제1품목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한·중간에서는 제2품목군으로 이동하였다. 이 중 수입이 수출보다 상당히 커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은 소스용 조제품 및 식물성 수액 등이다.

표 5-7. 한·중 제2품목군(경쟁력 약품목)

	4단계-일	4단계-중	RCA (한국)	TSI (중국)	MS (중국)	관세 (한국)	GL (중국)	TII (중국)	수출 비중(%) ¹⁾
인모	1	2	0.60	0.35	57.55	3.00	0.65	281.78	0.02
새 가죽·깃털	1	2	0.96	0.30	72.26	4.33	0.70	1.70	0.67
전분·이눌린	1	2	0.66	0.98	46.27	432.67	0.02	10.97	0.76
인삼류	1	2	1.20	0.85	81.52	238.48	0.15	4.13	1.66
식물성 수액	1	2	0.70	0.78	11.78	108.39	0.22	3.84	0.36
설탕과자	1	2	0.61	0.59	23.09	8.00	0.41	8.68	0.53
조제처리 기타채소	1	2	0.77	0.98	17.74	19.72	0.02	1.79	0.45
커피	2	2	0.50	0.13	20.92	16.00	0.63	18.41	0.27
소스용 조제품	2	2	0.52	0.68	55.07	8.00	0.32	14.49	2.01

주: 1) 대한민국 수출비중

제3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한·미 및 한·일간에 1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공처리된 채소 및 가공식품 등 22개 품목이다. 이 중 수입이 수출보다 상당히 커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은 기타 조제식료품, 초콜릿과 코코아 조제품, 시가 등이다.

표 5-8. 한·중 제3품목군(민감품목)

	4단계- 일	4단계- 중	RCA (한국)	TSI (중국)	MS (중국)	관세 (한국)	GL (중국)	TII (중국)	수출 비중(%) ¹⁾
기타 산식물	1	3	0.12	-0.18	16.11	9.25	0.82	37.30	0.19
기타 채소(특히 버섯)	1	3	0.46	1.00	78.70	52.65	0.00	23.52	0.36
일시저장 채소	1	3	0.20	0.84	86.03	69.21	0.16	2.38	0.33
건조채소	1	3	0.27	0.99	89.36	70.96	0.01	2.61	1.70
냉동과실·냉동견과류	1	3	0.11	1.00	81.74	30.00	0.00	18.06	0.58
후추	1	3	0.22	0.97	64.09	139.00	0.03	7.03	0.70
파종용 종자	3	3	0.26	0.46	11.68	0.00	0.54	8.79	0.36
라드	1	3	0.49	0.00	0.00	3.00	0.00	0.00	0.00
유지 및 오일	3	3	0.16	1.00	0.80	3.00	0.00	3.85	0.00
기타 동물성 기름	3	3	0.33	0.95	18.00	3.00	0.05	49.73	0.01
기타 잔유물	1	3	0.12	0.00	0.00	8.00	0.00	0.00	0.00
기타 당류 및 인조꿀	1	3	0.29	0.70	6.60	28.12	0.30	5.46	0.10
초콜릿·코코아조제품	1	3	0.14	0.76	4.33	12.67	0.24	19.30	0.19
맥아 조제품	1	3	0.46	0.82	14.23	20.22	0.18	24.21	0.30
큰 플레이크	1	3	0.45	0.58	52.74	10.67	0.42	21.13	0.14
빵·비스킷용 곡물	1	3	0.23	0.52	24.24	8.00	0.48	24.92	0.70
조제처리 버섯	1	3	0.32	0.98	95.12	20.00	0.02	2.51	0.30
설탕처리 채소/과실	1	3	0.41	0.88	48.64	23.46	0.12	0.88	0.05
젤/젤리	1	3	0.11	0.93	9.32	30.00	0.07	3.94	0.02
기타 조제식료품	3	3	0.36	0.61	4.74	73.85	0.39	1.76	0.64
물(설탕/향신료/감미료 첨가)	1	3	0.32	0.14	9.63	8.17	0.86	7.37	0.13
시가	3	3	0.45	0.11	1.43	40.00	0.54	0.84	0.13

주: 1) 대한민국 수출비중

제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사회안전망 보호대상품목)으로 분류된 품목 수는 총 186개 중 137개이며, 중국의 고려대상 농업 수출총액 중 76.51%를 차지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품목을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 FTA 협상에서 전략품목으로 선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옥수수, 밀, 기타 채유용 종자, 쌀, 냉동채소 등이다.

표 5-9. 한·중 제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품목)

(단위: %)

	한국의 대중국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의 대미국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수입총액 대비 비중
옥수수	29.96	6.93	0.63
밀	3.09	9.24	0.36
기타 채유용 종자	1.92	0.25	0.05
조제처리 기타채소	1.63	0.56	0.06
오일케이크	1.28	0.00	0.07
쌀(관세화유예품목)	1.24	0.40	0.03
냉동채소	1.12	0.11	0.02
전분박 필릿	1.09	0.02	0.02
당근·무	0.99	0.00	0.01
대두유박	0.88	0.74	0.19
에틸알코올(변성)	0.84	0.05	0.04
사료용 식물성 물질	0.56	0.02	0.01
건조 채두류	0.54	0.06	0.01
양파류(신선/냉장)	0.51	0.09	0.01
대두	0.43	11.34	0.21
사료용 조제품	0.41	1.24	0.06
채유용 과실 분	0.41	0.02	0.01
기타 식물성 기름	0.30	0.34	0.02

나. 한·일 FTA

한·일간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차산품 품목은 37개에 달해 한·중간의 18개 품목보다 훨씬 많은 품목에서 한국의 대일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2, 3품목군으로 분류되는 채소가공품, 인삼 및 기타 가공식

품이 한·일간에는 1품목군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커서 향후 FTA 체결 이후 대일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전략품목은 땅콩 및 가공식품류다.

표 5-10. 한·일 제1품목군(강경쟁력 후보품목)

	4단계 -일	4단계 -중	RCA (한국)	TSI (일본)	MS (일본)	GL (일본)	TH (일본)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인모	1	2	0.60	-0.67	0.00	0.00	0.00	0.00	0.00
새의 가죽·깃털	1	2	0.96	-0.33	0.00	0.00	0.00	0.01	0.01
기타 산식물	1	3	0.12	-0.53	1.44	0.47	6.60	0.01	0.02
절화	1	1	0.22	-1.00	1.38	0.00	376.03	0.02	0.00
토마토(신선/냉장)	1	1	0.11	-1.00	0.00	0.00	0.00	0.01	0.00
오이류	1	1	0.28	-1.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채소(특히 버섯)	1	3	0.46	-1.00	0.92	0.00	34.09	0.04	0.01
일시저장 채소	1	3	0.20	-0.97	0.33	0.03	7.56	0.00	0.00
건조채소	1	3	0.27	-0.96	0.25	0.04	0.66	0.00	0.02
기타 견과류	1	1	0.74	-1.00	0.30	0.00	23.55	0.04	0.02
사과·배	1	1	0.33	-0.88	40.60	0.12	99.50	0.02	0.00
기타 과일	1	1	0.13	-1.00	0.02	0.00	0.48	0.01	0.01
냉동과실·냉동견과류	1	3	0.11	-0.98	0.40	0.02	16.31	0.00	0.01
후추	1	3	0.22	-0.94	0.47	0.06	4.38	0.00	0.01
말가루	1	1	0.25	-0.81	0.09	0.19	0.01	0.00	0.00
전분·이눌린	1	2	0.66	-0.59	0.40	0.41	0.92	0.01	0.02
인삼류	1	2	1.20	-0.85	1.14	0.15	3.57	0.02	0.03
해조류/사탕수수/사탕무	1	1	5.98	-0.99	3.06	0.01	1.08	0.05	0.01
식물성 수액	1	2	0.70	-0.57	10.98	0.43	11.33	0.02	0.04
라드	1	3	0.49	-0.21	38.83	0.48	54.17	0.00	0.00
기타 잔유물	1	3	0.12	-0.99	28.90	0.01	107.60	0.00	0.00
사탕수수·사탕무의 자당	1	1	0.35	-0.92	0.01	0.08	0.45	0.05	0.20
기타 당류 및 인조꿀	1	3	0.29	-0.27	17.36	0.72	28.28	0.01	0.02
설탕과자	1	2	0.61	-0.72	12.32	0.28	13.03	0.04	0.03
초콜릿·코코아조제품	1	3	0.14	-0.88	1.61	0.12	6.57	0.02	0.06
맥아 조제품	1	3	0.46	-0.91	3.83	0.09	5.77	0.03	0.03
파스타	1	1	2.28	-0.91	1.52	0.09	0.87	0.10	0.03
큰 플레이크	1	3	0.45	-0.98	0.16	0.02	0.67	0.01	0.00
빵·비스킷용 곡물	1	3	0.23	-0.36	3.79	0.64	4.49	0.03	0.04
조제처리 버섯	1	3	0.32	-0.99	0.45	0.01	3.30	0.00	0.00
조제처리 기타채소	1	2	0.77	-0.98	1.56	0.02	4.29	0.05	0.03
설탕처리 채소/과실	1	3	0.41	-0.91	0.94	0.09	3.71	0.00	0.00
젤/제리	1	3	0.11	-0.91	0.92	0.09	11.31	0.00	0.00
물(설탕향신료/감미료 첨가)	1	3	0.32	-0.85	3.57	0.15	4.71	0.02	0.02
기타 발효주	1	1	1.43	-0.91	23.27	0.09	2.79	0.01	0.00
에틸알코올	1	1	0.35	-0.99	0.20	0.01	0.81	0.06	0.17
육/설육/어류 분/조분/펄릿	1	1	0.25	-0.91	0.25	0.09	0.71	0.01	0.02
기타 제조담배	1	1	0.41	-1.00	0.00	0.00	0.00	0.01	0.01

[표 5-11]은 한국의 대일 경쟁력 취약품목 및 민감품목을 정리하고 있다(주요 품목만 정리). 경쟁력 약품목 및 민감품목의 수는 각각 3개 및 9개로 한·중간 13개 및 22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일부 기타 조제식료품 등 가공식품에서 FTA 체결 이후 대일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1. 한·일 제2품목군 및 제3품목군(경쟁력 약품목 및 민감품목)

	4단계 -일	4단계 -중	RCA (한국)	TSI (일본)	MS (일본)	관세 (한국)	GL (일본)	TII (일본)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동물성/식물성 유지 찌꺼기	2	1	0.81	0.90	17.72	8.00	0.10	14.66	0.00	0.01
커피	2	2	0.50	0.33	9.87	16.00	0.67	8.27	0.02	0.02
소스용 조제품	2	2	0.52	0.30	15.11	8.00	0.70	2.89	0.03	0.05
버터밀크/요구르트	3	1	0.09	0.00	0.00	43.57	0.00	0.00	0.00	0.00
파종용 종자	3	3	0.26	0.35	20.51	0.00	0.65	5.86	0.01	0.04
유지 및 오일	3	3	0.16	0.63	34.41	3.00	0.37	17.74	0.00	0.01
기타 동물성 기름	3	3	0.33	1.00	25.15	3.00	0.00	11.69	0.00	0.00
아이스크림/빙과류	3	1	0.11	-0.14	1.56	8.00	0.19	6.16	0.00	0.01
기타 조제식료품	3	3	0.36	0.15	14.21	73.85	0.85	9.27	0.06	0.18
맥주	3	1	0.19	0.25	15.70	30.00	0.62	26.55	0.02	0.01
사과	3	34	0.45	0.97	35.05	40.00	0.03	19.29	0.09	0.12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²⁰⁾

민감농산물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에 주는 파장일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수입국

20) 부록 3을 요약한 내용임.

간 대체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간 각종 FTA 협상추진시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감품목을 선정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국내 농업현실을 고려하여 한·중을 중심으로 한·중·일 FTA 민감농산물을 선정하였다.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는데 제1기준은 한국 및 중국의 가격경쟁력 격차이며, 제2기준으로 교역가능성(과거 농산물 수입실적, 관세 유효성, 검역기준)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검토기준은 지역과급영향이다. 각 품목이 이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1, 2, 3기준에서 선정된 민감품목은 [표 5-12], [표 5-13] 및 [표 5-14]와 같다.

표 5-12.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옥수수
특용작물(2)	땅콩, 참깨
채소(6)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과일(3)	사과, 배, 포도
화훼(3)	장미, 카네이션, 국화
축산물(4)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표 5-13.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5)	쌀, 옥수수, 소맥, 대두, 팥
특용작물(5)	땅콩, 참깨, 낙화생유, 들깨, 인삼
채소(13)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당근,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과일(4)	사과, 감귤, 감, 복숭아

표 5-14.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고구마
특용작물(2)	참깨, 인삼
채소(10)	배추, 상추,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파
과일(8)	참외, 감귤, 포도, 복숭아, 수박, 배, 사과, 단감

이들 세 가지 기준에 한 번 이상 포함된 농산물은 총 43개 품목이다. 이들 43개 품목에 대한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중·일 FTA의 민감품목을 총정리한 것이 [표 5-15]이다. 43개 품목 중 미곡 등 10개 품목이 세 기준 모두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는데, 한국 농가소득 및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미곡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고, 기타 세 가지 기준 모두에 속하는 8개 품목은 고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기준에 포함된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한 가지 기준에만 포함된 품목을 저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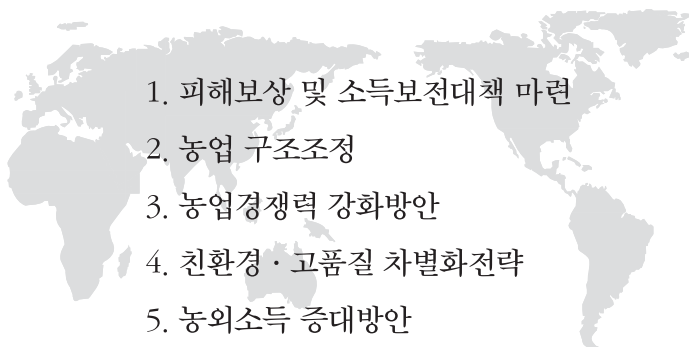
이들 민감품목 중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동식물검역에 따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저민감품목을 제외한 22개 품목이며, 특히 고민감품목은 일차적으로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을 예외하거나 또는 최소 감축을 하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5-15. 민감품목 분류

분 류	적용 예	품 목
초민감품목 (1)	관세철폐 예외	미곡
고민감품목 (8)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 예외 또는 최소 감축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
민감품목 (13)	관세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옥수수
저민감품목 (17)	중기적 관세 철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팔, 낙화생유, 파, 고구마, 수박, 소맥, 시금치, 양배추,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들깨, 생강

제6장

한·중·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2.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1993년 12월 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0년간 농가 소득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농가소득의 절대수준 저하,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 심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농산물 수입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씩 하락하였다. 1986~90년 기간 1.3% 상승하였던 실질가격이 1994~2002년 기간 1.0% 하락하였다. 1986~90년 기간 0.7% 증가하였던 채소 실질가격은 1994~2002년 기간 1.7% 하락하였고, 과일 실질가격은 양 기간에 각각 1.7% 및 5.3% 하락하였다. 1986~90년 기간 6.9% 상승하였던 호당 실질농업소득도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라 1994~2002년 기간 평균 1.7% 하락하였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FTA 등으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농가소득 문제가 악화되면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와 정치·사회 문제로 대두(한·칠레 FTA 국회비준의 경험)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다.

한·중·일 FTA가 이루어지면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고관세 품목), 품질 차이가 작은 쌀, 고추, 마늘 같은 품목에서 소득감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 고추, 마늘은 관세인하로 30~40%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여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관세가 낮고 품질별 가격차가 큰 농산물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과와 배는 수입금지해제로 10~30%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지만, 등급간 가격차가 200% 이상이므로 품질 고급화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축산물의 경우는 관세 인하로 10~

15%의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품질간 가격차가 50%(쇠고기) 이상이므로 품질 고급화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를 농산물시장에서 해결하기보다 농외소득이나 이 전수입 증대 등으로 소득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 기본방향의 제1원칙은 WTO 규범과 합치성이다. WTO 규범이 확정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농가 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대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 기본방향의 제2원칙은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설계와 농가소득안전망체계의 구축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은 주로 품목별 대책이나 다원적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개별 정책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농가소득안전망체계는 관련정책들의 패키지 또는 농가에 대한 종합지원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 기본방향의 제3원칙은 농정목표와 일치된 농가 소득보전대책이나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장기능 활성화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업구조조정과 조화되도록 추진하며, 농업구조조정과 상충되는 부작용은 적절한 대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계농가의 탈농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하나의 예다.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 기본방향의 제4원칙은 정책대상 선정의 적합성이다. 소득보전대책의 1차 대상그룹은 전업농이며, 시장개방의 피해가 큰 품

목의 농가를 중심으로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와 최저소득수준 이하의 농가도 포함해야 한다.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 기본방향의 제5원칙은 정책집행의 가능성으로,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농가소득안전망체계의 정책효과 기반구축 여부가 중요하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성과는 농가소득 관련정보의 수집·점검·평가체계 및 행정운영체계의 구축 여부에 의존할 것이다.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 기본방향의 제6원칙은 단계적인 정책시행으로, 농가소득보전대책이 단계적인 평가를 거쳐 확대되어야 한다.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통합·정비 후, 농가 대상의 단일직불제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 기본방향의 제7원칙은 재정제약과의 부합성으로, 충분한 재정제약 검토가 요구된다. 갈수록 비농업부문을 포함하여 부문별·분야별 재정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관련대책들에 대한 예상효과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WTO 농업협정이 규정하는 국내보조는 감축대상농업보조(Amber Box),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개도국특별우대조치(S&D Box), 허용대상농업보조(Green Box) 등이 있다.

글상자 6-1. WTO 농업협정하의 국내보조정책 유형

- **Amber Box**: 감축대상보조(농업협정 제6조)인 Amber Box는 총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 of Support; AMS)로 보조 규모를 산출함(제1조, 부속서 3&4).
 - UR 당시 Amber Box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회원국은 30개국이었으나 현재는 34개국이 총 AMS 감축 의무를 지님.
- **Blue Box**: 생산감축을 전제로 한 직접지불보조(제6조 5항)로 현재 Blue box를 활용하는 나라는 EU, 노르웨이, 일본(3개국)임.
 - 미국은 부족불체도로 이를 활용하다 1996년에 폐지.
 - 고정된 면적과 단수, 기준 생산수준의 85%(부족불 지불), 고정된 사육두수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보조금 상한이 없음.
- **de minimis**: AMS 산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품목특정보조는 해당품목 농업생산액의 5%(개도국 10%) 한도, 품목불특정보조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5%(개도국 10%) 한도 안에서 사용
- **S&D Box**: 투자보조, 저소득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투입재 보조, 불법 마약작물 재배로부터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제6조 2항).
 - 총 AMS 산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규모의 상한이 없음.
- **Green Box**: 현재의 생산이나 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보조로 환경보호와 지역개발,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 지역개발, 보험 및 재해구호,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포함(부속서 2).
 - 보조규모의 상한이 없음.

1) UR 이행기간 국내보조 활용실태

UR 이행기간에 우리나라가 활용한 국내보조는 [표 6-1]과 같다. 1995~2000년에 허용 AMS 대비 사용실적은 연평균 90%에 이르고 있는데 AMS는 대부분 추곡수매제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쌀 수매 97%).

Blue Box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한 바 없으며, 최소허용보조는 2,822억~7,836억 원을 사용하여 타 회원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S&D Box는 임업관련 보조 및 포장재 같은 투입재 보조로 활용되고 있다. Green Box는 전체 국내보조의 평균 68%를 차지하였으며 하부구조 개선(관개사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보조(생산 가공시설 등), 생산중립 직접지불(부채 및 연금보험 등), 연구사업, 환경보전, 공공비축, 재해구호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총 국내

보조규모는 7조 3,253억 원으로 총 농림업 생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6-1. 국내보조 사용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허용 AMS	사용 AMS	Blue Box	최소 허용보조	S&D Box	Green Box	합 계
1995	21,826	20,754	-	2,822	204	39,902	63,682
1996	21,056	19,674	-	3,438	309	51,829	75,250
1997	20,287	19,400	-	6,553	378	57,962	84,293
1998	19,517	15,628	-	7,836	415	53,607	77,486
1999	18,748	15,519	-	4,865	621	54,566	75,571
2000	17,978	16,909	-	5,297	506	50,541	73,253

자료: WTO(<http://www.wto.org>)

2) 유형별 국내보조정책 운영의 향후 전망

2004년 8월 1일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세부원칙(modalities) 협상이 추진될 것이며, 그 결과 보조의 감축률과 감축방식 및 이행기간 등이 결정될 것이다. Amber Box의 AMS 감축은 2004년 허용수준의 40~60% 선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의 허용 AMS는 1조 4,900억 원 이므로 향후 AMS 상한이 5,960억~8,940억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AMS 상한에서 짙은 전체의 97% 수준인 5,781억~8,672억 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따라서 수매량이 현재 생산량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아 쌀 수매제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였고, 쌀에 허용된 AMS를 공공비축제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Blue Box의 경우 기준기간을 1998~2000년(3년)을 가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

는 보조규모는 평균값의 5%인 1조 6,135억 원(현재 AMS 허용수준보다 1,235억 원 많은 규모)에 이른다. AMS와 최소허용보조가 감소하는 실정에서 Blue Box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부족불 지불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10% 이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3조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품목특정보조와 품목불특정보조를 모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3조 원 이상의 보조규모가 가능할 것이다. 최소허용보조가 50% 감소된다고 가정하면 보조규모는 개도국의 경우 1조 6,135억 원, 선진국의 경우 8,068억 원 정도이다.

S&D Box의 경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상한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500억~600억 원 수준 이상의 지원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Green Box의 경우는 생산중립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안전망, 재해구호, 구조조정, 환경지원 등의 기준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규모는 상한이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사용가능한 국내보조 예상규모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DDA 농업협상 결과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보조의 유형과 규모를 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보조규모는 2004년 4조 7,670억 원에서 최소 3조 663억 원 또는 최대 4조 1,81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lue Box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소허용보조의 감소 폭이 클 것이므로 총 국내보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 사용 가능한 국내보조 규모(예상치)

(단위: 억 원)

분 류	2004년	이행기간	
		최 소	최 대
AMS	14,900	5,960	8,940
Blue Box	-	16,135	16,135
최소허용보조	32,270	8,068	16,135
S&D Box	500	500	600
Green Box	-	-	-
합 계	47,670	30,663	41,810

주: 최소허용보조는 모두 허용된 상한을 나타내고, S&D Box는 1999~2000년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함.

4) 소득보조대책 설계에 대한 시사점

최소허용보조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AMS, Blue Box, Green Box 등의 소득보조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조규모는 큰 제약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MS 감축으로 Blue Box와 Green Box의 활용 및 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며, 적용기준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시행기간 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DDA 농업협상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2007~08년까지 전환기적인 조치로서 직접지불을 확대시행하고, WTO 규범이 확정된 이후 정해진 조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규모를 고려, 적절한 조정을 하여 다양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망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Blue Box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① 기존의 휴경 방식, ② 새로운 생산중립 방식 등이다.

기존의 휴경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을 변경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또는 이와 비슷한 조치에 참여 농가)만

수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일본처럼 모든 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생산조정(휴경)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쌀 생산조정제도에 참여하는 면적은 전체의 3% 미만인 2만 7,500ha 정도)해야 할 것이다. 쌀 생산조정제도를 확충하고 추가로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를 설정하거나, 고정 면적과 단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그림 6-1 참고).

새로운 생산중립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휴경과 관계없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조건하에 도입이 가능하다. 휴경 조건이 없는 대신 현재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도 직접지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시장가격이 목표수준보다 낮을 때 적용하며, 목표수준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부족불지불방식이다. 생산과 관계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초기의 적절한 지불수준 결정, 휴경 보상에 따른 재정부담, 장기적 농정개혁방식 등의 제약조건이 있다.

그림 6-1. Blue Box 적용 방식(휴경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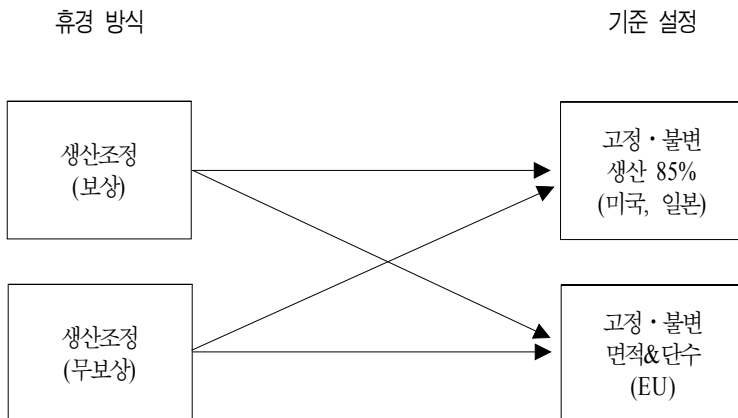


표 6-3. 휴경·생산중립 기준 비교

항 목	휴경 조건	생산중립 조건
발동 기준	생산 (가격과 상관없이 발동)	가격 (생산과 상관없이 발동)
보상 규모 (지급률)	고정 (사전 예시)	변동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
체 계	별도 조치	목표가격과 연계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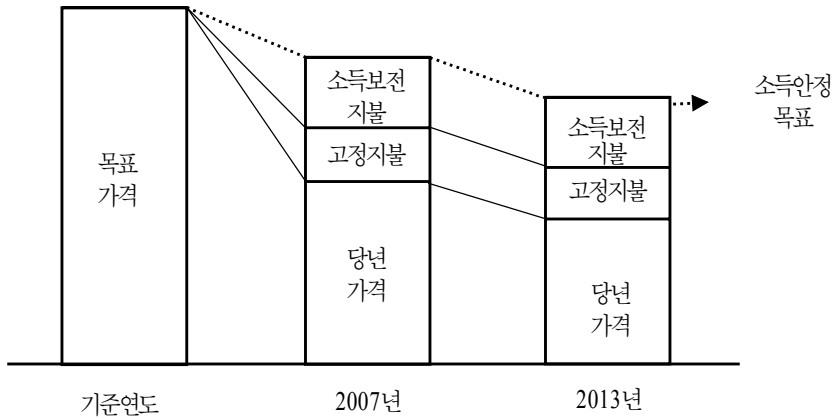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서의 소득보전방식은 크게 직접지불제 방식과 보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불제 방식은 여러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AMS와 Blue Box 형태의 소득보전직불제 및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고정직불제를 도입하여 감소하는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고정된 일정기간(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동안의 농가수취가격 평균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가격하락분의 일정비율(80% 또는 85%)을 보전함으로써 소득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보험방식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고, 국가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이다.

글상자 6-2.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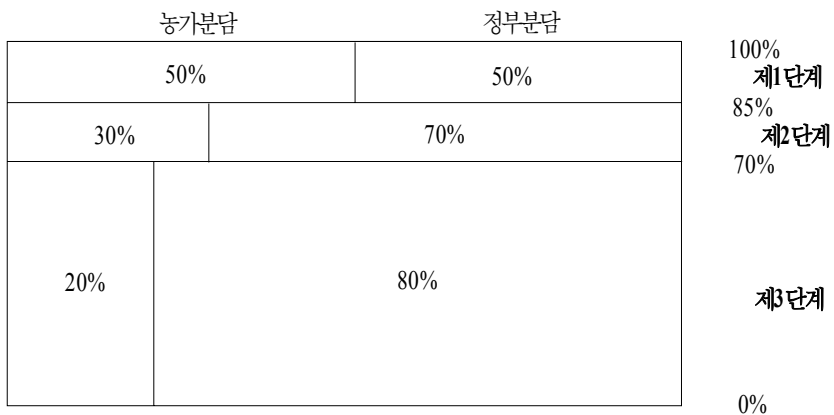
- 소득보전 대상그룹: 경작자 또는 임차인
- 소득보전 수준: 기준연도 목표가격의 얼마 수준
- 소득보전 방법: 단수, 수량, 수입, 소득 등에서 선정
- 소득보전 규모와 지원기간
- 소요 재정규모 추정
- 소득보전대책 시행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과 관련정보 수집 및 점검·평가체계
-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인식

그림 6-2. 농가소득보전대책(직접지불 형태)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과잉생산에 대비하는 것이다. ① 최저보전가격을 설정하고 농가수취가격이 최저보전가격을 하회할 경우, 하회한 부분은 소득보전하지 않는 방안(일본의 과수경영안정대책) 및 ② 모든 생산농가에 휴경방식을 적용(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6-3. 기준 소득과 보호 수준



자료: 이명현 외(2004), 농업소득 안정계정의 도입방안.

농가소득보전대책에서의 재원분담 주체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쌀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분담주체가 되고, 과수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소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를 분담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행정인프라 및 소득관련 자료를 수집·점검·평가하는 농가소득보전대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단일 농가안전망체계의 한 방안으로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농가소득안정계정 같은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의 과급영향은 국내농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품목 특성에 따라 일부 품목은 피해가 큰 반면 몇몇 품목은 피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농가의 경영규모 등 농가 특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품목별 대책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양념채소류

고추와 마늘은 농업소득과 전체농가 대비 경작농가 비중이 높아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경작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자율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념채소 생산지는 주산지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농가의 소득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부 주산지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여러 과급효과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 채소농가의 소득하락으로 인한 영농포기, 재배규모 축소에 따른 손실, 지역경제 악화 등 국내 채소산업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향후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중국 농산물과 가격차가 커서 관세인하시 값싼 중국 산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많은 품목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고품질·차별화된 상품, 산지에 대해서는 생산·유통에서 철저한 차별화·고품질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양념채소류의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폭을 충분히 보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하며,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는 기간은 농가의 시장적응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대상은 해당 품목의 주산단지내 거주농가로 본인 소유농지에 3년 이상 재배한 농가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FTA 체결 이후 신규재배 농가와 작목전환보상을 받은 농가의 경우는 소득보전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FTA 특별법에 의하면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은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²¹⁾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로 되어 있으며, 직불금 산출방법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에 전국평균단수를 곱한 물량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고추와 마늘은 현재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수입량에 의거한 시행요건은 시행기준연도의 수입이 전년도 수입량에 비해 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경우로 하고, 가격하락에 의거한 시행요건은 고추, 마늘, 양파 모두 기준연도 평균가격이 시행 전 5개년 평년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²⁾

21) 특별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가격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정의되어 있다.

22) 기준가격에 적용되는 비율과 직불금 산출시 적용되는 조정계수는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별 지원액 산출방식은 현행 과수에 적용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하는 것이 품목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과일류

FTA 이행으로 주요 과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공급량 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저하가 우려되며, 과수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며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폐원 보상 및 폐업 지원이 필요하다.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폐원 및 폐업 지원은 과원 위치 여건상 고품질 생산이 어려운 노후과원이나 부적지, 상습 재해피해 과원, 노령화로 인해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동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우량과원은 폐업을 자제하고 과원규모화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축산류

FTA에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개방의 피해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소득감소에 대비한 새로운 직접지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생산과 연관 없는(decoupled) 직접지불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는 소와 양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직불금을 지급²³⁾하고 있으며 점차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단

23) EU의 축산관련 직접지불은 주로 소와 양을 대상으로 하며, ① 암소사육생산자장려금(suckler cow premium) ② 수소사육생산자지원금(special premium)은 국가별 지급두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사육밀집도 제한이 있어서 목초지 ha당 2가축단위(Live-stock Unit: 2002년 1월부터는 1.9, 2003년 1월부터는 1.8) 이내로 사육하여야 한다. 또한 1.4LU/ha 이내를 유지할 경우에는 조방사육보조금(extensification payment)을 마리당 100유로씩 지급한다. 그 밖에 계절평준화프리미엄(deseasonalization premium)은 수소사육생산자지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인데 거세우에만 적용되며 ③ 연간 거세우 도축비율이 전체 수소도축두수의 60%를 넘고 ④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거세우 도축률이 연간 도축두수의 35%를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지급단가는 도축시기별로 다른데, 도축 두수당 ① 첫 15주 이내 도축시는 72.45유로, ② 16~17째 주에는 54.34유로, ③ 18~21주에는 36.23유로, ④ 22~23주에는 18.11유로를 지급한다. 또한 도축보조금(slaughter premium)은 지정된 기간동안 도축하지 않고 사육할 경우 국가별 한도두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8개월 이상 사육된 수소, 거세우, 암소, 미정산우 등은 27유로(2000년), 53유로(2001년), 80유로(2002년 이후)를 각각 받으며 ② 1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면 도체중이 160kg 이하인 송아지는 17유로(2000년), 33유로(2001년), 50유로(2002년 이후)를 각각 지급받는다.

일농가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 제도로 바뀌는 추세다. 직불금 지급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는 WTO에서도 허용된다.

FTA에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쇠고기와 유제품이 민감품목으로 인정돼 관세 감축률을 낮출 수 있다면 축산 부문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득보전직불제의 필요성은 낮다. 그러나 FTA 관세 즉시철폐의 경우 한육우에 대해서는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비육우의 소득 표준율을 20.3%(2004년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로 가정²⁴⁾하면 약 1,200억 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2005년 사육두수 175만 두로 나누면 마리당 6.9만 원 정도 지급되어야 한다.

양돈의 경우 FTA 관세 즉시철폐의 피해액을 연간 3천억 원으로 보면 소득 표준율이 27.5%이므로 소득 감소액이 825억 원으로 추산되므로 양돈 사육두수를 880만 두로 보면 마리당 9,375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 육계의 경우는 생산 감소액을 800억 원으로 볼 경우 소득 표준율이 17.4%이므로 139억 원의 소득감소가 생기고, 이를 사육두수 8,800만 수를 기준으로 보면 마리당 158원의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낙농의 경우는 현재도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의 잉여원유 차액지원을 하고 있으나 개방 확대로 연간 5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생긴다고 할 때 소득 표준율이 39%이므로 약 195억 원의 소득감소가 생긴다. 젖소 사육두수가 49만 1천 두라고 하면 마리당 약 4만 원의 소득 보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지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즉 FTA 시행 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기준연도의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24) 번식우의 소득 표준율은 58.8%로 비육우보다 훨씬 높으나 번식우 농가는 비육우 농가보다 전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대농으로의 생산 집중 및 영세농이 확산되는 등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이미 진전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지 등 생산자원이 대농으로 집중되는 한편, 고령농가는 여전히 영세농으로 농사를 계속하고 있다(표 6-4, 표 6-5 참고).

3ha 이상의 쌀 농가가 2000년 3.8%(40만 8천 호)로 20%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0년 7%를 생산한 것과 비교할 때 커다란 진전이다. 1990년 생산의 26%를 담당했던 시설원에 2천 평 이상 농가(2000년 10.5%로 7만 7천 호)의 생산 비중이 47%로 확대되었고, 1990년 생산비중이 14%였던 한우 20두 이상 농가는 2000년 8.1%(1만 5천 호)로 생산비중이 55%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영세농은 농업경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영농을 지속하고 있다. 전업농의 경우 농기계 위탁으로 사업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4. 농가 계층분화 동향

(단위: %)

연도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 이상
1980	28.8	35.1	20.6	9.0	5.1	1.5
1985	28.4	36.5	20.7	8.5	4.6	1.2
1990	27.7	31.2	20.2	11.0	7.4	2.5
1995	29.3	29.3	18.0	10.3	8.4	4.8
2000	32.2	27.7	16.0	9.6	8.3	6.2
2003	35.5	26.7	14.9	8.6	7.6	6.7

자료: 통계청, 「농업기본 통계」.

표 6-5. 쌀농업의 경영규모별 임차지 비율 변화

(단위: %)

연도	전체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1990	36.6	26.8	32.4	33.1	45.8	43.0
1995	44.2	22.9	32.0	40.0	47.3	46.2
2000	46.9	29.2	38.5	42.0	47.5	47.7
2003	40.9	29.1	32.5	34.7	39.6	46.8

자료: 통계청, 「쌀생산비 통계」.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식량자급률은 크게 저하하고 있으나 쌀 수급구조는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서는 구조로 변모하였다. 쌀산업 편중정책으로 농가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과잉생산의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총 보조총액추정치(AMS)의 대부분(90% 이상)을 쌀 수매제에 투입하고 있는 형국으로, 전체 식량자급률은 2004년 26.8%에 지나지 않지만 쌀 자급률은 동년 96.5%를 기록하고 있다.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농업 구조조정 방향은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와 인력 및 자본 등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선택된 경쟁력 있는 선진농가를 집중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하여 고령농의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신규농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진보와 경영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며 지역별 특화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구조조정이 보다 유연

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이외에 농외소득기회가 늘어나는 구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영세 고령농가 등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농가유형별로 적절한 농가경영안정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전업농은 경영발전 단계에 따라 영농규모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젊고 유능한 농가에 대한 규모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농의 경우는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 전략 및 농가 조직화 등을 통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등 고품질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세 고령농가의 경우는 탈농을 촉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면서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전업농과 중소농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을 적용하고, 영세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적용하는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병행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법인경영체의 활성화 또한 중요한 정책방안이다.

또한 개별경영 단위로 품목별 전문화 단지를 형성하여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등급화·표준화 등을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품목별 대표조직에 가입하는 형태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정비해야 한다. 개방 피해가 집중될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조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즉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는 직불제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계정 방식으로 통합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과, 배 등 6개 품목에 시행

하고 있는 재해보험을 여러 작목, 재해 유형, 시설장비 등에 확대적용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시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농가가 농업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정기간 동안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임대를 통하여 농사의 은퇴나 이탈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농지 유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탈농, 은퇴농이나 퇴출농가의 농지를 신탁 매입한 후 희망하는 농가에 임대 또는 매각하면 농지가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용으로 수요가 없는 휴폐경 농지, 한계농지 등은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비농업용도로 개발·매각해야 할 것이다.

경영 회생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는 파산신청을 받아 자산을 처분하고 부채정리 등의 청산 절차를 지원하여 부채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한 농가가 원활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가주택을 제외한 자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어려운 경우는 농지은행이 인수 후 매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부채비율이 70% 이상이고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가계적자가 지속된 농가의 2.6% 정도가 퇴출대상 농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농가가 농지이양 후 영농은퇴를 희망하는 경우는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고령농가에 대한 직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1) 양념채소류

양념채소는 우리나라 경종농업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가소득원이며, 절대

다수의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이나 판매용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FTA 이행시 고율관세가 대폭 인하될 경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념채소 농가들은 일부 대규모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영구조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자발적인 대응력이 부족하여 자발적인 경쟁력 제고나 구조조정이 어려워 수입 증가와 국내산 가격하락에 의해 농사 포기나 자가소비용 재배로 잔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념채소의 구조개선대책은 시장개방 정도가 심화되기 전에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의미에서 경쟁력 제고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지역 차원에서 가격·품질 측면에서 국제경쟁력과 산지간 경쟁력을 비교하여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농가는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의 품목농가들은 품목경쟁력이 있는 대체품목으로의 작목전환을 유도하거나 농업관광 등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이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품목 및 산업에 따라 경쟁력 제고 대책과 구조조정 대책이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경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져 국가 차원의 평균적인 경쟁력보다는 실질적인 산지 차원의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방안은 지역 또는 주산지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선택과 집종의 원칙을 더욱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농주체도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구분하여 자가소비용 생산으로 시장개방과 무관하게 생산하는 영세농민은 농업정책 대상보다 농촌정책 대상으로 분류하여 농업정책의 집중성과 효과를 높여야 하며, 산지에 대한 정책도 규모가

있는 주산지, 공동출하 등 조직적 출하산지에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확대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 자재, 기술, 유통 등 전 후방 연관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경쟁력 제고를 기존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위주에서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품목별 국내 생산 및 구조정책뿐만 아니라 수입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법적 수입이나 원산지 둔갑, 밀수,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국내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입정보를 분석하는 수입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더불어 원산지 표시, 검역 등 수입정책도 연계해야 한다. 또한 관세감축 이행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소득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강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일류

FTA 추진에 따라 과일 수입이 확대될 경우, 특히 중국산 과일의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질이 급속히 향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과, 배를 중심으로 과급영향이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인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FTA가 불가피하다 해도 FTA 추진으로 나타나게 될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하락으로 인한 영농포기, 재배규모 축소에 따른 손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과수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과 과수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한·칠레 FTA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된 조성자금 투입으로 과수산업 구조조정 효과가 미약하거나 과급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계획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수산업 구조조정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수입과일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 측면에서 경쟁력제고 전략은 대체로 국내 농가의 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많은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통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 영세규모의 생산·출하 체계로는 다국적기업의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유통체계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 과일의 수입 및 유통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 단계에서부터 생산과 출하 기능을 분리하고 전문화시키면서 규모화시킬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소매 유통 여건도 산지 유통체계 개선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입 과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수시장 개방화 확대는 국내 과수산업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다 공격적인 전략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국내산 과일의 품질을 수출시장의 고소득층을 공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수출확대를 국내 과일의 품질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과일 수입은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예상시 수급안정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량 증가가 국내 수급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수입억제 및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과수산업 구조조정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FTA 협상 과정에서 시장 개방시기 지연과 개방 폭 축소를 위한 협상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 축산

축산업은 FTA로 인해 축종별로 존폐위기를 염려할 만큼 피해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사육축종 전환 같은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FTA로 인해 장래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하는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축산업 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폐업 후 다른 곳에서 창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FTA 특별법에서도 과수원 폐원시 소득보전직불금 대신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는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세 가지 품목만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도 낙농의 경우 과잉우유를 해소하기 위해 폐업지원을 한 사례도 있다. 한편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가축분뇨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업보상을 한 바 있다.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쌀 같은 곡물류를 제외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원예·과수 분야에서 단순히 수세적인 입장 외에도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으로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우선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곡수매제도를 개편하여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였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수매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양곡수매제도의 소득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쌀 보조기능액(AMS)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쌀 수매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매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적정재고 600만 석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량

을 시가로 매입, 방출할 예정이다.

수확기 쌀값안정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안정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RPC 수확기 원료벼 매입량을 생산량의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부실 RPC는 통폐합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며, 쌀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해서는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의 직결체제로 전환하고,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정책방향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다. 후계자 육성 이외에도 신규 창업농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증액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농가를 선별 지원하고, 농업인 법인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공동컨설팅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전문경영컨설팅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정책방향으로 시장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쌀 산업의 경우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경 목적의 소유농지 임대차 및 위탁영농을 허용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익자 위주의 선진 농업금융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경영능력을 객관적으로 심사, 대출하는 종합자금 제도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정책자금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부실 농업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워크아웃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확대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 번째 정책방향은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 창출이다. 우선 농업기술의 혁신과 전파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작목 개발, 교육·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지원, 지역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R&D 예산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핵심 기술분야를 중점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의 핵심은 역시 식품산업이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Food-Chain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비전하에서, 식품규제보다는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식문화 세계화 및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료조달과 식품생산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산업연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 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수출지원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키워드다. 바이어 중심의 수출방식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수출방식을 전환하고 신규 수출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종묘 선정에서부터 생산 수확 후 관리, 해외마케팅까지 일괄지원하는 지원사업 체계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해외 판촉활동도 박람회 참가, 판촉전, 해외광고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마케팅을 추진해야 하겠다. 그럼으로써 수출에 특화된 생산, 물류, 브랜드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국가(농업) 전체 개념에서의 경쟁력 개념도 중요하지만 특정품목을 주로 생산

하는 산지의 경쟁력 개념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품목과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강화를 선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속성상 정책 지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규모화된 주산지, 공동 출하하는 산지의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등으로 설정하고, 경쟁력 개념을 단순히 가격경쟁력을 넘어서 생산단계에서 유통 및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특정품목을 포괄하는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급영향이 다른 품목별로 각기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첫째 고율관세 품목은 관세감축기간 동안 국내생산이 급속히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둘째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집중적인 생산이나 유통정책을 통하여 급격한 소득하락을 억제하거나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낮은 품목(과채류)은 한편으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량을 조정하는 한편, 생산성 제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품질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책과 수입정책, 수출정책은 별도의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연계정책으로서 운용해야 한다.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의 과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은 기본적으로 협상체결 이후 이행기간 동안 국내생산이 급속히 축소되는 것을 억제하고, 농가소득(생산액)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생산 및 유통 지원정책을 통해 소득하락을 억제하며,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소득감소에 대한 직접지불을 함으로써 손실소득에 대한 보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낮은 과일류(감귤 제외)와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중국산을 비롯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관세인하에 직접적인 과급영향은 작으나,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해제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수입급증이 예상되므로 최우선적으로 해제 시기를 늦추고 국내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대책과 품질고급화에 의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검역 등 수입정책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품목의 수출정책이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가격경쟁력 제고대책(단수 등 생산성제고대책, 생산비절감대책), 품질경쟁력 제고대책(고품질 차별화, 브랜드화, 친환경생산대책)을 중심으로 탈농 또는 작목전환 지원대책, 일정 수준 자급 유지를 위한 소득보조정책, 규모화·경쟁기능계층 선별육성 등 구조조정대책, 수출촉진대책, 수입대책 등으로 거론할 수 있다.

1) 양념채소류

고율관세품목인 고추의 관세인하 확대에 대응한 대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탈농 또는 작목전환 유도로, 한계지와 고령농을 중심으로 탈농을 유도하고, 가능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 풋고추 수확용 고추재배나 작목대체가 가능하고 건강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잡곡류, 특수작물 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고추는 경종작물 생산농가에서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작물이므로 주산지 중심의 고품질 고추재배농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보조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같이 일시수확형, 또는 수확횟수를 3~4회로 줄이고, 수확이 편리한(키 큰 고추) 다수확 품종과, 색도와 당도를 높이는 고추 품종을 집중적으로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색도 높은 고품질 고추 재배와 수확 후 청결 양건처리를 위한 시설의 대량보급, 주산지 고추유통센터(RRPC) 설치 지원으로 홍초를 매입하여 청결한 양건 고춧가루(원산지 표시, 브랜드 포장)를 가공,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국산 고추에 대해 전량을 원산지 표시하여 출하하도록 하고, 홍고추, 건고추, 고춧가루 등 완전포장 출하를 유도하며(무적, 마대포장 출하 원천봉쇄),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 고추의 수입·유통·가공·소비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마늘의 경우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난지형 마늘(남도 마늘, 스페인종 마늘)은 경쟁국인 중국산(남도 마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저위(1.1~2.5배)이고, 중국산은 통마늘의 손질상태가 양호해 국산 난지형 마늘보다 외형이 깨끗하며, 간 마늘 수율이 높다. 기존의 난지형 생산 수준으로는 품질면에서 중국산과 비슷하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쟁이 곤란하고, 한지형은 유통차별화가 될 경우 품질경쟁력이 있어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고율관세품목인 마늘의 관세인하 확대에 대응하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을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0% 정도의 증수효과가 입증된 주아재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파종·수확 기계화를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하여 생산비를 대폭 절감(40% 정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표 6-6. 대상품목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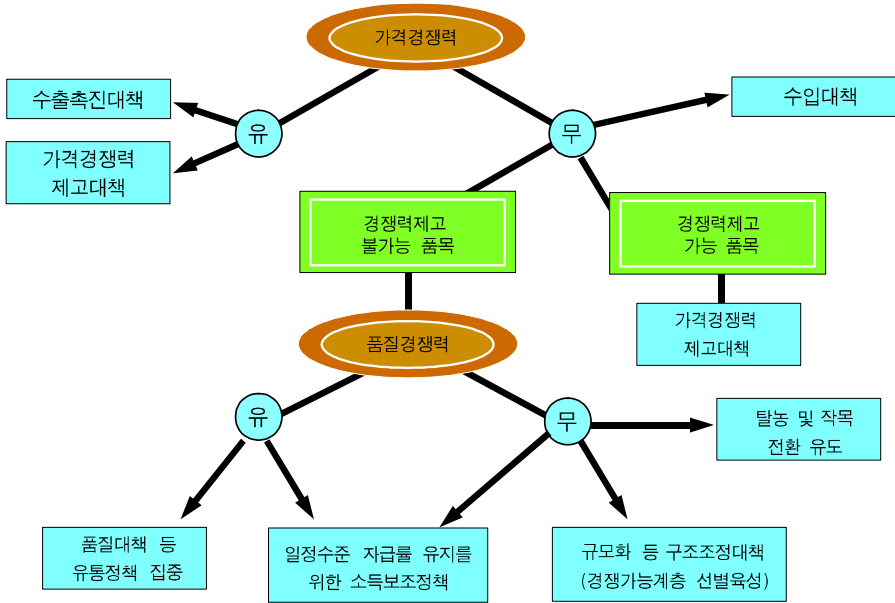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강	중 (경쟁력제고 가능품목)	약
강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수박, 토마토, 딸기(신선)	참깨, 땅콩, 녹차, 인삼
중 (일부 차별화 가능 품목)	-	양파, 대파, 감귤	마늘, 포도, 딸기(냉동), 오이, 호박
약	-	-	고추

표 6-7. 경쟁력 수준에 따른 대책 구분

			대상품목	주요 정책
가격경쟁력이 강한 품목			-	- 경쟁력제고대책 · 생산성제고대책 · 생산비절감대책
가격 경쟁력이 약한 품목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품목		사과, 배, 단감, 딸기(신선), 토마토, 양파, 대파	- 경쟁력제고대책 · 생산성제고대책 · 생산비절감대책 - 수출촉진대책 - 품질제고대책
	가격경쟁력 제고 불가능품목	품질경쟁력이 강한 품목	참깨, 땅콩, 녹차, 인삼, 마늘(한지형), 수박	- 품질대책 등 유통정책 집중
		품질경쟁력이 약한 품목	고추, 마늘(난지형)	- 탈농 및 작목전환 유도 - 구조조정대책 · 경쟁가능계층 선별육성 - 일정자급률 유지를 위한 소득보 조정책

양파의 경우 현 상태로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마늘과 경쟁적인 품목이나 관세인하로 마늘가격이 하락할 경우 마늘, 맥류 등 생산대체가 가능한 동계작물에 비해 상대소득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배집중에 의한 과잉생산이 빈발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양파는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우수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정식·수확 기계화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저장 및 선별 등 수확 후 상품화와 생산과 수확 후 상품화 과정을 일괄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양파전문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6-4.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예산업 경쟁력제고 방향



2) 과일류

신선사과·배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입금지 해제시 가격경쟁력이 낮아(약 2배)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사과, 배의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금지 해제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수입금지 해제에 대응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품질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키 낮은 사과(왜성 사과) 과원, Y자형 배 밀식과원, 생산기반 완비, 기계화로 과원관리와 수확작업을 용이하게 하고(편농 추구) 고품질 상품을 수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품질고급화를 위한 대책으로 위해요소 및 생산이력관리 종합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약 살포 절감, 친환경재배로 껍질째 먹는 안심사과를 확대하는 등 상품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이며, 수확 후 상품화 시설을 확대지원하여 선진형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귤(신선 온주밀감)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오렌지 수입 급증으로 1995년부터 품질관리가 부실한 감귤이 오렌지에 대해 열등재로 전환되는 등 감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감귤이 우등재로 회복되고 오렌지 수입 급증에 대응해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고급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감귤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부적지 과원 폐원, 간벌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산지의 수확 후 상품화 시설을 지원하되 현재 작목반 단위의 소규모 선별출하시설을 지양하고 대형 APC에 의한 집중선별을 추진하며, 소포장, 고급포장 등으로 오렌지와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감귤재배농가 중 일부는 소비가 늘어나는 한라봉, 청견 등 잡감 재배로의 작목전환을 유도하여 오렌지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3) 과채류

과채류(오이, 딸기, 토마토 등)는 대부분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시장에서 중국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은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낮아 조만간 중국의 시설채소 수출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중국산 과채류가 수입금지되어 있으나, 검역법이 해제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이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해제시기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이전에 중국산과 가격경쟁력이 가능하도록 경쟁력제고대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과의 품질차이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국산 고품종 개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4) 특작류

전통적으로 고려인삼은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국산 홍삼의 경우 가공기술이 중국에 비해 높고 포장, 디자인도 중국산 보다 경쟁력이 높다. 국산 수삼은 중국산에 비해 동일 등급에서 가격이 1.6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품질계수가 1.6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율관 세가 크게 인하여 국산과 중국산 등 외국산과의 가격차가 확대된다면 중국산 소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즉 가격경쟁력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국산 인삼은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일 것이다. 국산 인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 재배 관리 및 가공 관리로 고품질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집상 중심의 전통적인 유통관행에서 탈피하도록 생산자단체의 생산·가공·유통 계열화 추진이 필요하다.

녹차는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으로 생산 및 가공 기술개발이 시급하여 관세인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까지 국산 녹차에 대한 고급화와 생산 및 가공 기술에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5) 축산물

축산업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규모화·전업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2005년 6월 현재 한육우는 전업농의 사육규모가 31.5%, 젓소 69.5%, 돼지 77.1%, 산란계 66.1%, 육계 84.0%이며, 앞으로도 전업농의 사육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낮다. 다만 한육우의 경우 비육 규모화가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번식은 노령농가가 소규모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축종보다는 전업농 규모가 작다. 따라서 대규모 번식 전업농을 육성해서 송아지를 싼값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송아지의 경우 마리당 생산비는 10두 미만 사육 농가가 204만 4천 원인 데 비해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186만 3천 원으로 9% 정도 낮다. 규모화에 따라 생산비가 작아짐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 이외에도 품질위주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를 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HACCP를 도축장뿐만 아니라 농장단계와 사료공장에도 확대 도입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육에서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업등록제, 양분총량제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 규범화 노력이 커지고, 또한 점차 교역조건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규정이 조만간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이 부각된다 해도 축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역추적할 수 있고, 또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이 우리나라에도 쇠고기를 대상으로 2009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력추적시스템은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를 국내에서 시행할 경우 수입축산물에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의 질병 발생시 국내산도

같이 소비가 감소하는 사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말 미국에서의 광우병 파동 당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내산 쇠고기까지 함께 소비가 급감한 주요인의 하나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되면 이러한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개방이 확대될 경우 수입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꼭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쇠고기의 경우 국내외산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더 많아 둔갑판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수취를 보장하며, 도매 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WTO의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과 2000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확정판결된 쇠고기 구분판매제와의 유사성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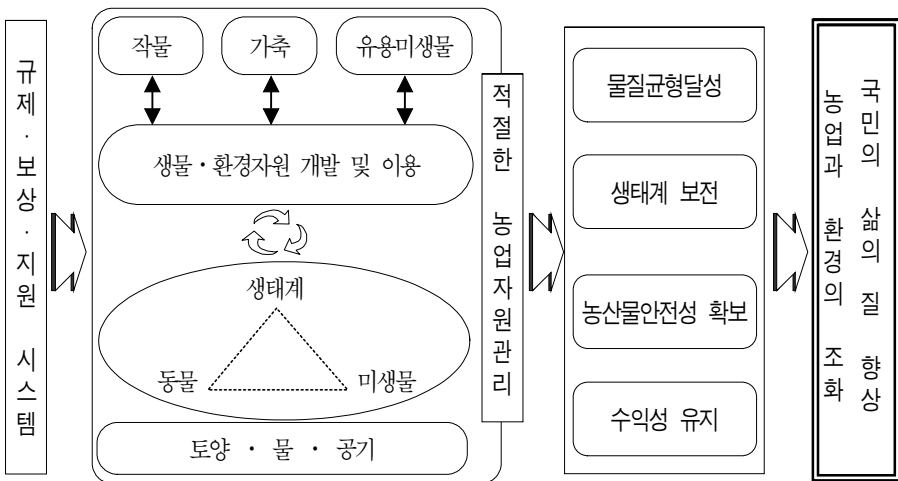
개방 확대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가능성도 확대되므로 수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은 국내 소비가 부위별로 편중되므로 남은 부위는 수출함으로써 부위별 가격 균형을 기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교역도 부위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비선호 부위의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과 1999년 돼지고기를 8만 톤 이상 수출한 적이 있다. 수출보조금은 UR 당시 지급한 실적이 없으므로 신규지급은 곤란하며, 개도국에 허용된 수출용에 대한 유통비용 보조나 국내 운송비 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도 용인될지는 불투명하다.

4. 친환경·고품질 차별화전략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업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업과 환경의 조화’이므로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지역별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축산물 생산규모를 조정하고 자연순환농업과 저투입농법(유기농법 포함)을 확산시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생산방식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측면에서 물질순환체계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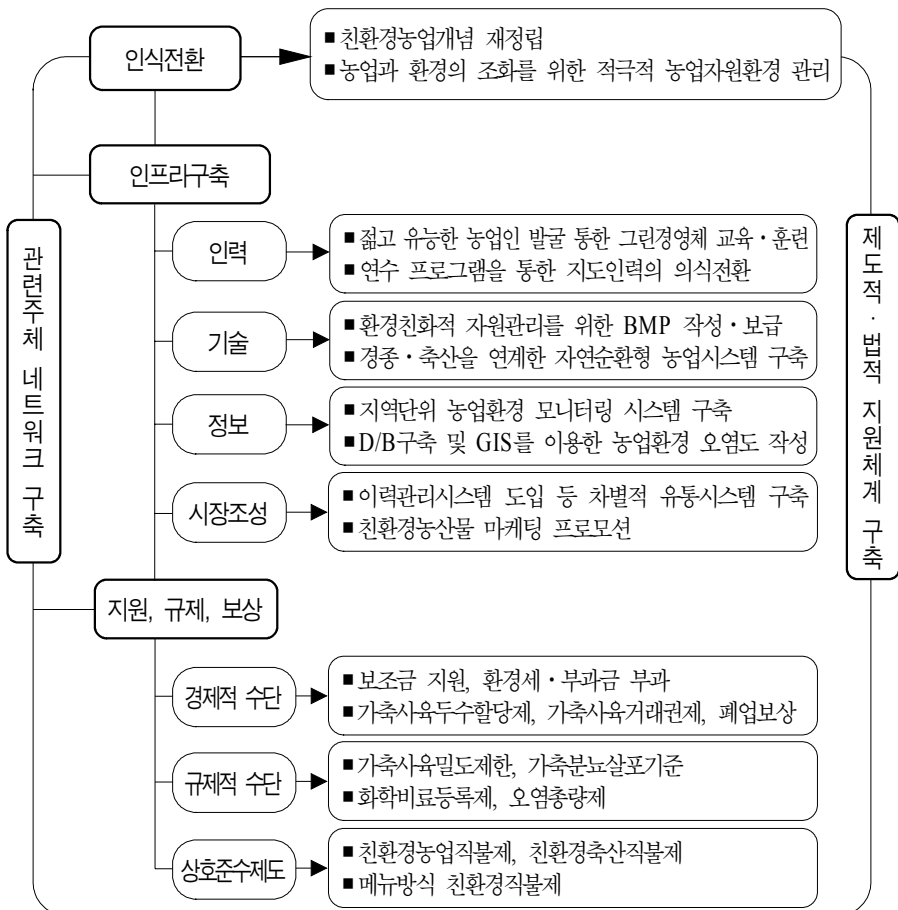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비전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국민(현재세대와 미래세대 포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그림 6-5 참고).

그림 6-5.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감축(Reduced) ↔ 재활용(Recycled) ↔ 재사용(Reuse)’ 등 3R을 기초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농법 측면에서 최대에서 최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고, 규제와 보상 및 지원수단 간의 적절한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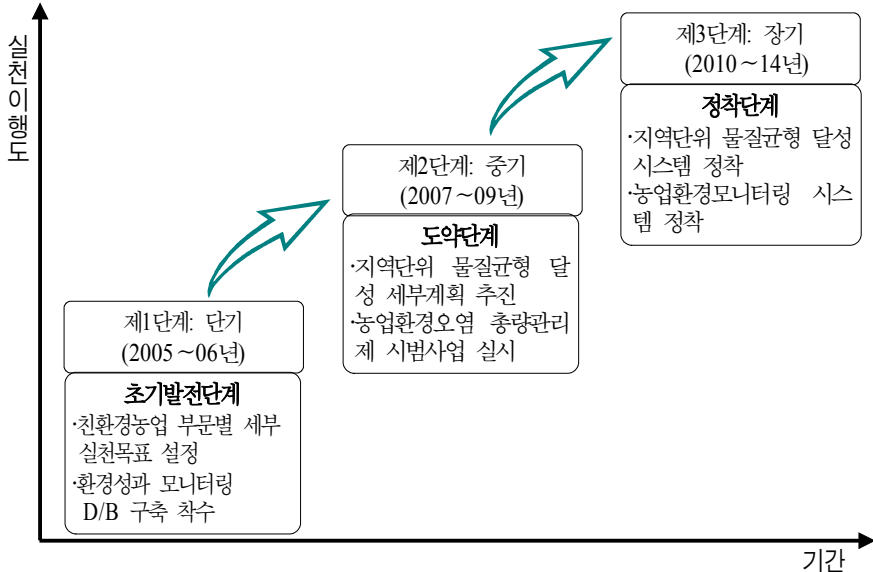
그림 6-6.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체계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적극적 농업환경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인력, 기술, 정보, 시장조성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용량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생산규모 조정 및 생산방법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 규제적 수단, 상호준수제도를 포함하는 지원·규제·보상 차원의 정책프로그램 개발과 선택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 평가는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²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 전체를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책추진 과정은 초기발전단계, 도약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그림 6-7 참고).

그림 6-7.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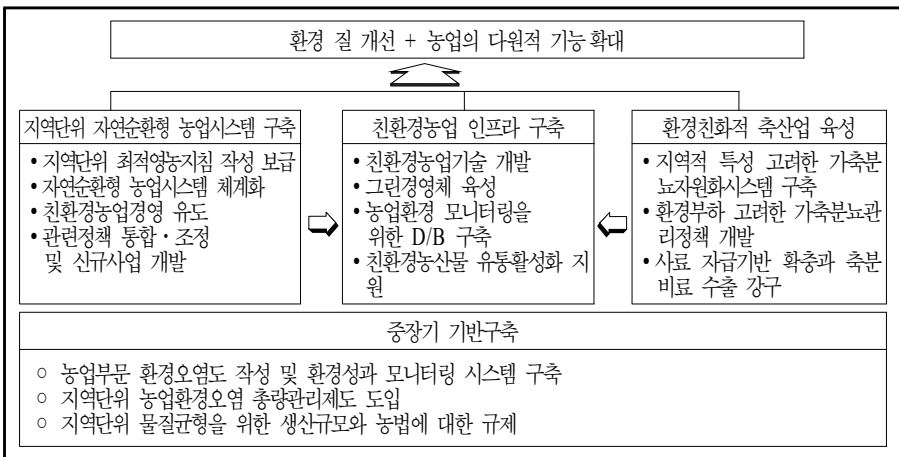


25) AHP는 1970년대 Saaty가 개발한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계량화가 곤란한 문제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

효과적인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농업지역을 선정하여 중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평가와 진단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계적인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과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면 [표 6-8]과 같다.

표 6-8.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 정책추진 로드맵>

	1단계(2005년까지)	2단계 (2007~09년)	3단계 (2010~14년)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모니터링 위한 D/B 구축 착수 • 친환경농업기술 진단 및 평가 • 그린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및 착수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프로모션 계획 수립	• D/B 구축 및 GIS 농업환경오염도 작성 • 지역별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보급 • 그린경영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관리 • 친환경농산물이력관리 시스템 보급	• 농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 농업부문 청정기술 개발 및 정착 • 육성된 그린경영체 핵심인력화 • 차별화된 유통시스템 정착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시스템 구축	• 지역단위 최적영농 자침(BMP) 작성계획 수립 및 착수 • 경종·축산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메뉴형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발 착수 • 지역단위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 계획 수립	• 지역단위 BMP 보완 및 보급 확대 • 유기경종·축산단지 조성 • 메뉴방식 친환경직불제 실시 및 확산 •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 지역단위 BMP 활용 일반화 • 유기적인 경종·축산 연계시스템 구축 • 메뉴방식 친환경 직불제 일반화 •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첫째 기술개발, 인력육성,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유통활성화 지원, 관련주체별 역할분담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과 환경친화적 축산시스템 정착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마지막 중장기 과제로 지역별 농업환경오염도 작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단위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역별 점검시스템을 확립하고, 점검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농업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계측시스템을 확립하여 농업환경 변화와 환경개선 효과의 지속적인 계측 및 평가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관리체계인 친환경농업 거버넌스 시스템(governance system) 구축이 요구된다.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소득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1990년 97.4%에서 2002년에는 73.0%로 낮아져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최근 농업소득 정체와 농외소득 감소가 주요인이다. 농업소득은 WTO 체제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 체결국가 증가와 DDA 농업협상에 따라 시장개방폭이 확대되면서 농업소득 불안정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외소득은 1997년까지 매년 크게 증가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농외소득 증대에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6-9. 농가소득 추이와 도농간 소득격차

(단위 : 천 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가소득(A)	13,105	14,505	16,928	20,31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농업소득	7,035	7,356	8,427	10,325	10,469	10,837	10,204	8,955	10,566	10,897	11,267	11,274
농외소득	3,662	4,423	5,040	6,184	6,931	7,487	8,677	6,975	7,034	7,432	7,829	8,140
이전수입	2,408	2,726	3,461	3,807	4,403	4,974	4,607	4,564	4,723	4,743	4,811	5,061
농외소득 구성비(%)	27.9	30.5	29.8	30.4	31.8	32.1	36.9	34.0	31.5	32.2	32.7	33.3
도시가계 소득(B)	13,903	16,273	17,734	20,416	22,933	25,832	27,448	25,597	26,697	28,643	31,501	33,509
상대소득 (A/B, %)	94.3	89.1	95.5	99.5	95.1	90.2	85.6	80.1	83.6	80.6	75.9	73.0

표 6-10. 농외소득 추이

(단위 : 천 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외소득	3,662	4,424	5,041	6,184	6,931	7,487	8,677	6,975	7,034	7,432	7,829	8,140	9,397
겸업소득	758	926	1,084	1,347	1,526	1,522	1,823	1,213	1,484	1,435	1,491	1,454	2,266
(비중)	20.7	20.9	21.5	21.8	22.0	20.3	21.0	17.4	21.1	19.3	19.0	17.9	24.1
사업외소득	2,904	3,497	3,957	4,837	5,404	5,965	6,854	5,763	5,550	5,997	6,338	6,686	7,131
(비중)	79.3	79.1	78.5	78.2	78.0	79.7	79.0	82.6	78.9	80.7	81.0	82.1	75.9

우리나라의 농외소득 비율은 농업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농외소득이 낮은 이유는 농촌지역에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

가 적거나 아니면 농가구원의 취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외취업자는 1995년 호당 0.37명에서 1999년 0.22명으로 감소했으며, 농외취업이 가능한 25~49세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중 호당 0.95명에서 0.84명으로 감소하였다.

일본과 대만은 1960년대부터 농촌공업화를 추진하고 재춘탈농과 겸업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가구원의 농외취업이 활발한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1998년), 농가가 구원 4.1인 중 농업취업자(1.0인)보다 농외취업자(1.4인)가 더 많은 상황이다.

표 6-11. 한국·일본·대만의 농외소득 비율

(단위: %)

연도	한 국	일 본	대 만
1970	15.6	55.6	51.3
1980	20.6	63.7	70.5
1990	25.8	64.7	71.1
2002	33.3	57.7	57.2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농외소득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일곱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2·3차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자연이나 전통, 향토문화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과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교통조건 발달 등 소비자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농촌지역으로 흡수하여 다양한 2·3차산업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표준화·규격화와 인증제도 도입, 상표등록 등 유통질서 확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촉진, 기술 및 경영 지도와 컨설팅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비농업활동 진흥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개별 산업체의 입지뿐만 아니라 생활편익시설 정비,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병행하여 농촌주민의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요구되는 등 종합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농외소득 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도서지역 등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농촌인구의 정착은 도시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차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과소화·공동화가 우려되는 중산간지역,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공업개발 활성화 및 농외취업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농촌지역에 2·3차산업의 입지와 경제활동이 용이하도록 공업입지정책의 정비를 통한 계획적 재배치와 이전업체 배려, 농공단지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화된 공업단지로 육성하고, ADSL 등 초고속통신망 우선구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겸업농자녀 등 지역주민을 산업인력으로 훈련, 농기구원의 현지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확대와 훈련비보조 현실화, 전직상담소 설치·운영, 농촌지역 기업이 현지 농가구원을 취업시키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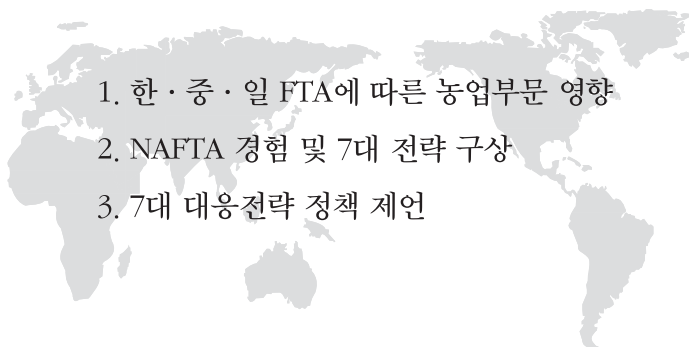
다섯째, 농업의 복합산업화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적할 수 있다.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정비를 통하여 전문경영인과 외부자본, 기술 및 경영의 농촌지역 유입촉진,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의 2·3차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약사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등 지나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산단지 조성, 생산자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센터,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관련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산업의 전문화 및 고급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도농교류사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산업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농업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산단지와 민속촌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특산단지’ 개발, 구멍가게(상업), 5일장 및 영세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원, 수송·저장·보관업 등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부문 육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나 생태, 음식물, 특산물과 연계된 향촌관광 및 문화산업 육성, 유·무형의 전통문화재나 자연경관, 특이한 자연생태 등이 있는 곳을 ‘향촌관광지’, ‘문화마을’ 및 ‘생태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과 농촌지역에 산재한 향교나 전통가옥을 활용한 전통예절·음식·공예품에 대한 교육장소 제공, 교육 및 문화 산업 육성도 한 가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특색 있는 주택사업 추진 및 노인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 개발, 도시민에게 ‘제2의 고향 갖기’ 혹은 농촌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 보유’ 규제 완화, 양로원·요양원·실버타운 건설 등 노인관련 산업의 육성도 농외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농촌지역 소득원개발 관련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발전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영국의 ‘농촌개발지역(Rural Development Area)’과 같은 권역을 지정, 각종 지원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겠다. 벤처농기업창업지원제도 정비와 농촌지역에 입지한 2·3차산업체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및 지역화 촉진 또한 검토할 수 있으며,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Agribusiness Incubator) 및 농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금(Venture Capital) 설치·운영, 경영컨설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창업보육사업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1.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그동안의 FTA 논의과정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국의 많은 농산물 품목에 대해 양허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 농산물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실시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쌀을 제외한 완전자유화 시나리오와 민감품목을 인정하는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CGE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 두 가지 방식으로 과급효과를 추정하였다.

- 시나리오 1: 쌀을 제외하고 완전자유화
- 시나리오 2: 쌀 제외, 민감품목 70% 관세인하, 기타품목 무세화

나. 거시경제효과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FTA로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먼저 쌀 제외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의 GDP는 수량기준으로 정태적으로는 0.47%, 동태적으로는 3.52% 증가하지만(금액기준으로는 정태적으로 2.29%, 동태적으로 4.54% 증가), 중국의 경우는 수량기준으로 각각 0.04% 및 0.88% 증가하며(금액기준으로는 -0.04% 및 0.69% 증가), 일본의 경우는 수량기준으로 각각 0.01% 및 0.22% 증가(금액기준으로는 1.43% 및 1.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등변화로 파악한 GDP 증가가 한국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45억 달러, 동태모형에서는 1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민감품목에서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의 분석

결과도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CGE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 시장규모가 큰 나라 쪽으로 산업특화가 발생하는 경향)보다 제품의 생산지역 특성(동종제품의 국가간 이질성)에 따라 발생하는 아밍턴 효과가 한·중·일 FTA에서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즉 한·중·일 FTA로 한국은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 확대되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향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FTA 결과 무역특화 효과보다 교역량증대 효과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다. 생산변동

한·중·일 FTA에 따른 생산변동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농업의 경우 정태모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물론 제조업에서는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FTA 효과가 대폭 확대된다). 이는 FTA에 의해 경쟁력을 기반으로 무역특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의 시사점(prediction)이 발생할 여지가 작다는 것을, 즉 한·중·일 FTA로 경쟁력 없는 농업품목은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과장된 우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곡물, 기타작물, 과일 및 채소 등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 FTA로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농업품목(쌀 제외)은 곡물, 기타작물 및 과일·야채 등이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중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 및 일본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곡물의 경우 정태모형에서 43.03%,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47.26%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

작물은 정태모형에서 15.54%, 자본축적모형에서 15.84%, 과채류의 경우는 정태모형에서 4.04%, 자본축적모형에서 3.60% 감소하고 있다.

곡물, 기타작물, 과채류의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의 경우, 농산물 상대가격체계가 시나리오 1에 비해 왜곡되면서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 곡물의 경우 -47.26%(시나리오 1)에서 -22.24%(시나리오 2)로 생산량 감소가 둔화되었으며, 채소 및 과일의 경우는 (-)에서 (+)로 부호가 전환되었다. 기타작물의 생산변동은 -15.84%에서 -19.69%로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기타가공식품의 생산은 시나리오 1의 34.23% 증가에서 19.15%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육류생산의 증가도 13.98%에서 9.89%로 둔화되었다.

현재 WTO/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내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발동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 CGE 분석결과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몇 개의 주요 농산물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을 인정받을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일반적으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유사할 것으로, 따라서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중·일 FTA의 경우 농업시장규모가 크고 경쟁력(RCA, TSI)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이다.

먼저 시나리오 1에 따른 농업부문의 산출액(중간재 포함) 감소, 즉 피해규모를 보면 그 규모가 예상보다 미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생산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곡물(약 8억 1천만~8억 9천만 달러), 기타작물(약 6억 3천만 달러), 과일 및 채소(약 4억 7천만~6억 1천만 달러 수준) 등이다. 이 세 품목에서의 산출액 감소는 정태모형에서 약 21억 달러 수준에 이르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약 19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육류 및 기타가공식품의 산출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정태모형에서는 각각 5억 3천만 달러, 17억 달러의 생산액 증가가 있으며,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는 각각 6억 1천만 달러, 20억 달러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다.

곡물, 과채류 및 기타작물의 70% 관세인하를 가정한 시나리오 2에 따른 산출액 변동은 생산량 변동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본축적모형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시나리오 1에서 8억 9천만 달러 감소했던 곡물의 산출액은 4억 7천만 달러 감소로 둔화되었고, 시나리오 1에서 4억 7천만 달러 산출감소를 기록했던 과채류는 시나리오 2에서 3억 8천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부 분야에서 관세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산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타작물의 산출액 감소는 7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증가하였다. 수출가능 품목인 기타가공식품의 경우 시나리오 2에서는 정태적으로 9억 1천만 달러의 산출액 증가가 예상되며, 동태적으로는 11억 8천만 달러의 산출증가가 예상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생산액 감소, 즉 피해규모는 예상보다 미미하다.

마. 한·중·일 FTA와 한·중 및 한·일 FTA의 차별성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항은 한·중·일 FTA의 농업개방 효과와 한·중 FTA 및 한·일 FTA 개별효과의 합계와의 유사성 또는 차별성 여

부다. 부분균형분석의 경우 분석체계상 양자의 효과를 차별화하기 어려우며, 결국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중 FTA 농업개방의 부정적 효과에 의해 압도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CGE 모형에서는 한·중·일 FTA 농업개방에 의해 새로이 균형에 도달하는 균형조건체계(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및 환류효과 반영)와 한·중 FTA 및 한·일 FTA에 의해 도달하는 균형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한·중 및 한·일의 균형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중·일 FTA와 한·중 FTA 및 한·일 FTA의 합계 두 경우는 비교될 수 없는 사항이다. 한·일 FTA 농업개방은 한국 농업에 많은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동일한 개방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GDP 증가 및 동등변화를 비교해볼 때, 한·중·일 FTA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한·중 FTA 및 한·일 FTA보다 상당히 크다.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중 FTA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에 대한 제3장의 분석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 이유와 관련하여 한·중·일 FTA의 중요한 의문점은 FTA 이후 농업부문 교역에서 특화전개 효과와 무역량증가 효과 중 어느 것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 이론은 무역패턴의 변화로 무역장벽에 의해 지연되었던 산업특화 혹은 품목특화가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서 수입재가 급증하고 국내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서는

FTA 역내 수출수요가 증가하여 국내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한·중 FTA로 비교우위가 없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으며, FTA 협상 체결의 민감한 장애요인으로 농업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 하나의 이론은 중국산 농산물과 한국산 농산물의 불완전 대체성(아밍턴 가정)으로 특화가 진전되기보다는 FTA 회원국간 무역량이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이 경우 관세 혹은 비관세 형태의 무역장벽 철폐는 회원국간의 무역량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무역량보다 크게 증가하며, 특히 소규모 국가(한국) 수출의 대규모 시장접근을 확대시켜 비교열위 품목일지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NAFTA 10년의 경험을 보면 FTA 이후 경쟁력을 반영한 특화가 진전되었다기 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경쟁력 및 비교우위 취약품목군에서도 FTA 이후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교열위 농업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소규모 국가가 대규모 시장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FTA 이익을 실현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부분균형분석에 기초한 비관적 견해와 달리 CGE의 긍정적인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한·중·일 FTA에서도 특화전개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인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이며, 비교열위 농산물이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단, 한·중·일 FTA의 경우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국내 산업간 자원이동의 유인이 크며, 이에 따라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할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 한·중·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무역패턴 변화에 따라 특화가 전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경쟁력 없는 취약품목은 수입수요 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략으로 FTA 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품목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겠다(5장 및 부록 4). FTA 체결 이후에는 FTA로 타격을 받은 취약산업을 보상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6장 1절).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군(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6장 3절).

FTA 특화전개 효과를 가정한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량증대 효과에 대비하는 정책적 구상일 것이다. FTA로 회원국간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중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산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동 FTA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차별화 전략을 거론할 수 있겠다(6장 4절). 국산농산물을 수입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재화로, 또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품질·한국특유 농산물을 중국의 고급농산물 수요시장 및 일본의 틈새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재배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가공 후 한·중·일 역내 시장에 재수출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FTA의 두 가지 직접적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직접적 대응전략만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완료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및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흐름 속에서 한·중·일 FTA 대응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농외소득 비중을 증가시키고(6장 5절), 전 국민적 합의 하에 농업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가는 대응책 마련(6장 2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 민감품목 선정

민감농산물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에 주는 파장일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수입국간 대체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제1기준(한국 및 중국의 가격경쟁력 격차), 제2기준(교역가능성: 과거 농산물 수입실적, 관세 유효성, 검역기준) 및 제3기준(지역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7-1]과 같다.

이 세 가지 기준에 한 번 이상 포함된 농산물은 총 43개 품목이며, 미국 등 10개 품목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다. 한국 농가소득 및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미국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고, 기타 3개의 기준 모두에 속하는 8개 품목은 고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다. 2개의 기준에 포함된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한 개의 기준에만 포함된 품목을 저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민감품목 중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동식물검역에 따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저민감품목을 제외한 22개 품목이다. 특히 고민감품목은 일차적으로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감축을 예외하거나 또는 최소 감축을 하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7-1. 민감품목 선정

분 류	적용예	품 목
초민감품목 (1)	관세 철폐 예외	미곡
고민감품목 (8)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 예외 또는 최소 감축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
민감품목 (13)	관세 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옥수수
저민감품목 (17)	중기적 관세 철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팔, 낙화생유, 파, 고구마, 수박, 소맥, 시금치, 양배추,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들깨, 생강

그러나 NAFTA의 경험, 특히 멕시코 사례를 볼 때 경쟁력에 근거한 특화전개로 취약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효과보다 FTA에 따른 교역량증가 효과가 더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의 경우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물론 취약 농산물에도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세계에서는 보다 일반적이다. CGE 분석결과도 이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FTA 체결 전에 추정된 피해액에 근거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신청이 생각보다 적었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농가지원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FTA 결과 특화전개보다는 교역량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한·중·일 FTA 협상전략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

화 또는 다자간 협상 수준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민감품목 선정에서 제시). 또한 FTA 체결 이후에는 무역자유화로 타격을 받은 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가 이루어지면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고관세 품목), 품질 차이가 작은 쌀, 고추, 마늘 같은 품목에서 소득 감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서의 소득보전방식은 크게 직접지불제방식과 보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품목별 소득보전대책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과잉생산에 대비하는 것이다. ① 최저보전가격을 설정하고 농가수취가격이 최저보전가격을 하회할 경우, 하회한 부분은 소득보전하지 않는 방안(일본의 과수경영안정대책) 및 ② 모든 생산농가에 휴경방식을 적용(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에서의 재원분담 주체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쌀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분담주체가 되고, 과수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소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를 분담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요한 행정 인프라 및 소득관련 자료를 수집·점검·평가하는 농가소득보전대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단일 농가안전망체계의 한 방안으로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농가소득안정계정 같은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양념채소류

국내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중국 농산물과 가격차가 커서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품질·차별화된 상품, 산지에 대해서는 생산·유통에서 철저한 차별화·고품질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념채소류의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폭을 충분히 보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보전대책이 필

요하며, 소득보전직불제 실시 기간은 농가의 시장적응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대상은 해당품목의 주산단지내 거주농가로 본인 소유농지에 3년 이상 재배한 농가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FTA 체결 이후 신규 재배농가와 작목전환보상을 받은 농가의 경우는 소득보전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추와 마늘은 현재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수입량에 의거한 시행요건은 시행기준연도 수입이 전년도 수입량에 비해 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경우로 하고, 가격하락에 의거한 시행요건은 고추, 마늘, 양파 모두 기준연도 평균가격이 시행 전 5개년 평년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일류

FTA 이행에 따른 과수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며 안정적으로 정착육시키기 위해서는 폐원보상 및 폐업지원이 필요하다.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폐원 및 폐업 지원은 과원 위치 여건상 고품질 생산이 어려운 노후과원이거나 부적지, 상습 재해피해 과원, 노령화로 인해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동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우량과원은 폐업을 자제하고 과원규모화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축산물

FTA에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쇠고기와 유제품이 민감품목으로 인정되어 관세감축률을 낮출 수 있다면 축산 부문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득보전직불제의 필요성은 낮다. 그러나 FTA 관세 즉시철폐의 경우 한육우에 대해서는 연간 6,000억~1,2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리당 6.9만원 정도 지급되어야 한다. 양돈의 경우 마리당 9,375원 정도, 육계의 경우는 마리당 158원의 소득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촌경제연구원). 이러한 직접지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즉 FTA 시행 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기준연도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나. 수출경쟁력 강화

쌀과 같은 곡물류를 제외하고는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원예, 과수 분야에서는 단순히 수세적인 입장 이외에도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수립으로 국내농산품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의 핵심은 역시 식품산업이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Food-Chain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비전하에서, 식품규제보다는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식문화 세계화 및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료조달과 식품생산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산업연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 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수출지원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키워드다. 바이어 중심의 수출방식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수출방식을 전환하고, 신규 수출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종묘 선정에서부터 생산 수확 후 관리, 해외마케팅까지 일괄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체계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해외 판촉활동도 박람회 참가, 판촉전, 해외광고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마케팅을 추진해야 하겠다. 그럼으로써 수출에 특화된 생산, 물류, 브랜드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농업) 전체 개념에서의 경쟁력 개념도 중요하지만 특정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산지의 경쟁력 개념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품목과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강화를 선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속성상 정책지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규모화된 주산지, 공동출하하는 산지의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등으로 설정하고, 경쟁력 개념을 단순히 가격경쟁력을 넘어 생산단계에서 유통 및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특정품목을 포괄하는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중국에 FDI 형태로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것을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중국, 한국 및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일본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라. 친환경·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국내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선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측면은 물론 원산지표시제 및 성분검사 등 유통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리 농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감 유지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화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타 작목으로의 전환검토가 필요하다.

마. 농외소득 증대

농가소득의 절반이 농업소득이며, 다시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소득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처럼 같이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농산물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일곱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2·3차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자연이나 전통, 향토문화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과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교통조건의 발달 등 소비자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농촌지역으로 흡수하여 다양한 2·3차산업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비농업활동 진흥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개별 산업체의 입지뿐만 아니라 생활편익시설 정비,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병행하여 농촌주민의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요구되는 등 종합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농외소득 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도서지역 등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농촌인구의 정착은 도시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차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과소화·공동화가 우려되는 중산간지역,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공업개발 활성화 및 농외취업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농촌지역에 2·3차산업의 입지와 경제활동이 용이하도록 공업입지정책의 정비를 통한 계획적 재배치와 이전업체 배려, 농공단지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화된 공업

단지로 육성하고, ADSL 등 초고속통신망 우선구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겸업농자녀 등 지역주민을 산업인력으로 훈련, 농가구원의 현지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확대와 훈련비보조 현실화, 전직상담소 설치·운영, 농촌지역의 기업이 현지 농가구원을 취업시키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다섯째, 농업의 복합산업화와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산업의 활성화를 지적할 수 있다. 농산물 가공·유통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정비를 통하여 전문경영인과 외부자본 그리고 기술 및 경영의 농촌지역 유입촉진,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의 2·3차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약사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등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산단지 조성, 생산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센터,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관련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산업의 전문화 및 고급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도농 교류사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산업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농업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산단지와 민속촌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특산단지’ 개발, 구멍가게(상업), 5일장 및 영세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원, 수송·저장·보관업 등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부문 육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나 생태·음식물·특산물과 연계된 향촌관광 및 문화산업 육성, 유·무형의 전통문화재나 자연경관, 특이한 자연생태 등이 있는 곳을 ‘향촌관광지’, ‘문화마을’ 및 ‘생태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 농촌지역에 산재한 향교나 전통가옥을 활용한 전통예절·음식·공예품에 대한 교육장소 제공과 교육 및 문화 산업 육성도 한 가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소득원 개발 관련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발전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영국의 농촌개발지역(Rural Development Area)과 같은 권역을 지정,

각종 지원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겠다. 벤처농기업 창업지원제도 정비와 농촌지역에 입지한 2·3차산업체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및 지역화 촉진 또한 검토할 수 있으며, 벤처농기업 창업보육센터(Agribusiness Incubator) 및 농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금(Venture Capital) 설치·운영, 경영컨설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창업보육사업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바. 경영혁신체 창출

농민 및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혁신체 창출이 요구된다. 현재 농민은 한편으로 UR 이후 농업개방 경험에 근거하여 개방농정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농업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농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민 및 정부는 정부지원정책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또한 농산물 수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농민에 대한 단기적·선택적 피해보상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농민의 장기적 잠재력 발전을 저해하고 도리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와 영리적 현실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민이며,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농민의 책임감을 복돋우고 혁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농민단체도 대정부 협상으로 보상을 극대화하는 역할에서 농업 기업가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하여 계약재배한 후 가공수출하는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또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후계자 육성 이외에도 신규 창업농)을 중점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증액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농가를

선별지원하고, 농업인 법인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공동컨설팅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전문경영컨설팅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사. 농업개방 예시제

과거 제조업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방 스케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추어 기업은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 개방체제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 및 속도를 공표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창의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WTO DDA 협상 결과 및 고령농 자연은퇴 전망, 그리고 사회보장성 예산확충 전망을 고려하여 품목별 개방시점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된 시점보다 더 빨리 개방함으로써 농가피해가 발생한다면 취약산업 피해보상대책에 근거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가병생 외. 2005. 「한·중·일 FTA가 3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연구」. 공동연구자료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 강문성 외. 2004.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정책연구 04-11. 대외경제정책연구
구원.
- 강문성·나수엽. 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KIEP.
- 고준성. 2003.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정책연구자료 2003-73. 산업연구원.
- 김석균. 2004. 「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 및 무역보완관계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4. 1.
578호, 1-25.
- 김용택·임송수·박준기·문한필. 2004.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연구보고
R4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원호 외. 200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
의 시사점』. 정책연구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호. 2004.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농정연구속보 2004-7(제9권).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 _____. 2005.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실태」. 제3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
지엄, 「세계화와 동북아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69-78쪽.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PRIMAFF),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CAAS/IAE).
- _____. 2005.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
별대책위원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 발표자료, 농협 서울지역본부 대강당, 2005. 7.5.
- 김한호 외. 2004. 「한·ASEAN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 김한호. 2005.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주최 한·캐나다
FTA 공청회발표논문.
- 남영숙 외. 200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2004 중국경제연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영숙·이창수 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림부. 2004. 『농업·농촌 종합대책』.
- 농협중앙회 조사부. 2002. 『한·중 신선채소류 품목별 경쟁력 비교』. 2002 연구보고서. 농협
중앙회 조사부.

- 대한상공회의소. 2004. 『주요국의 FTA 피해산업대책』. 경제연구총서 2004-378. 대한상공회의소.
- 박동규·임송수·김배성·김혜영. 2004.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 연구』. 수탁연구보고 C2004-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순찬·강문성. 2004.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0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승록. 2003.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03-10.
- 서장문 외. 2005. 『中日韓經濟合作促進農業繁榮』. 中國海關出版社.
- 서진교 외. 2004. 『쌀 협상 전략』.
- 서진교. 2003. 「관세화에 의한 쌀 시장개방 확대의 파급영향과 함축성」. 『쌀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 및 정책적 전략』, 한살회 총서 제14권, 사단법인 한국쌀연구회, 58-76.
- _____. 2004. 「쌀 협상 쟁점, 전망 및 대책」.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최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 발표자료.
- _____. 「이해당사국의 쌀 산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유철 외.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KIEP.
- 신관호 외. 200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 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9.
- 신동천. 1996.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44(2), 한국경제학회, pp.101-117.
- _____. 1998.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 _____. 2000. 『CGE모형 구축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작성방법 연구』, 조사/연구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신용대 외. 2000.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13.
- 유종일. 2003. 「참여정부의 동북아 비전 구상」. 국내정책세미나 자료. 『동북아경제중심: 주요 부문 로드맵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명근 외. 2003.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대 농산물 교역구조』. 연구보고 R4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4.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연구보고 R4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김태훈. 2000. 「한국 쌀농업의 선택」. 『농업경제연구』, 41(3). 한국농업경제학회, 31-57.
- 이창재 외. 20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제사회연구회 FTA 협

- 동연구시리즈 04-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식 외.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경제사회연구회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정빈. 2005. 「FTA 추진과 농업부문의 갈등 해결 및 피해대책 방향」.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정인교 외. 2003.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04. 「한·중·일 F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진홍상·박승록. 2005.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05-03. 한국경제연구원.
- 최낙균·박순찬. 2002.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KIEP.
- 최세균 외.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 C2001-25.
- _____. 2002.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 C2002-38.
- 최세균·어명근·서진교·박준기·이병훈. 200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정책연구보고 p.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환·신동천. 2004.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CGE 모형과 FCGE 모형을 이용한 비교 분석」, 『국제경제연구』, 10(2). 한국국제경제학회, 1-37.
- 최임봉. 2003. 『한중일 FTA 추진전망과 과제』. 산업은행.
- 한국개발연구원. 2001. 『한중일 경제협력의 추진방안과 주요부문별 과제』. KDI.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미국, 중미 FTA와 사탕산업 문제」.
- 한국무역협회. 2004. 「미국-호주 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연구소.
- _____. 2005. 『한·칠레 FTA 발효 1년: 평가와 과제』.
- 한국은행. 2003. 「중국의 FTA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한은정보』 51-55.
- _____. 2004. 『2000년 산업연관표』.
- 한두봉. 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고려대학교.

[영문자료]

- Armington, P. 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5, 159-178.
- de Melo, J. 1988.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Trade Policy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Journal of Policy Modeling*, 10, 469-504.
- Central Bank of Chile. 2004. 'The Agriculture of Mexico after Ten Years of NAFTA

Implementation’.

Cheong and Wang. 1999.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Choi and Schott. 2001.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eardorff, A.V. and R.M. Stern. 1986. *The Michigan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 Cambridge.

Dervis, K., de Melo, J. and S. Robinson. 1982.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Development for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Feenstra, R.C., J. Markusen, and A.K. Rose. 1998. “Understanding the Home Market Effects and the Gravity Equation: The Role of Differentiated Goods.” *NBER Working Papers* 680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Feng Lu. “Free Trade Area: Awakening Regionalism in East Asia”. The Institute of Northeast Asia Business and Economics, International Conference: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1-37, 2003.

Francois, Joseph and Brad McDonald. 1996. Liberaliz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GTAP Model. GTAP Technical paper No. 07.

Hai, Wen and Xi Zhang. 2004. *A Bilateral or Trilateral FTA?*

Head, K. and J. Ries. 2001. “Increasing Returns Versus National Product Differentiation as an Explanation for the Pattern of U.S.-Canada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91: 858-876.

Helpman, E. and P. Krugman. 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Krueger, A. O. 1999.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Under NAFTA”. *NBER Working Papers* 742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Krugman, P. 1980.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70: 950-959.

Lee, Jong-Wha and I. Park, “Free Trade Area in East Asia: Discriminatory or Nondiscriminatory?” The Institute of Northeast Asia Business and Economics(INABE), International Conference: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1-43, 2003.

Robinson, S. 1989. “Multisectoral Models,” in Chenery, H. and T.N. Srinivasav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2, 884-947.

- _____. 1991. "Macroeconomics, Financial Variables, a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World Development*, 19(11), 1509-1525.
- Rogowsky, Robert A. 2004.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resented to AEI-KITA Conference. (October 27)
- Schott, Jeffrey J. 2001.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 Shoven, J. and J. Whalley. 1984.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 341-354.
- Shoven, J. and J. Whalley. 1992. *Applying General Equilibri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2002 Effects of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Rural Economy/WRS-02-1.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01.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USITC.
- Whalley, J. 1985. *Trade Liberalization among Major World Trading Areas*. Cambridge, MA: MIT Press.
- WTO. 2004. 'WTO Doha Work Programme;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31 July 2004'. WT/GC/W/535. (July)

[기타자료]

- 喬娟. "中國 主要家畜 肉類產品 國際競爭力 變動分析". 「中國農村經濟」. 2001. 7.
- 孫東升. 「WTO 中國農產品貿易」. 中國農業出版社. 2001.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1. 사례 1: 요시노식품 유한공사

- ☐ 요시노(芳野) 식품은 일본의 치요다(千代田) 물산이 중국 칭다오에 투자한 식품가공회사임. 동 사의 주요 고객은 주요 외식산업 기업들이며, 아직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시장에서의 판매는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음.
 - 동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야채, 육류, 생선, 통조림, 냉동식품류 등이며 매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주로 절단한 야채를 가공포장하여 일본 외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를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당근, 감자 등으로 취급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음.
- ☐ 동사가 중국에 진출한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임.
 - 첫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야채를 가공(예; 파를 세척 후 30cm 정도로 절단하고, 이를 다시 잘게 썰어서 특수 기계로 처리하여 포장하는 과정)함으로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둘째, 중국 농산물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중국에서 가공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에서보다 더 높은 위생관리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 중국에 진출한 일본 식품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가동하고 있음. 산지에서 구입한 야채는 먼저 이 연구소의 검사를 거치며, 일본 세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국내산보다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함. 일본의 경우 검사농약은 200개 정

도(일본 검사기준이 200개)인데 이를 연구소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500개 농약품목을 검사할 예정에 있음. 따라서 위생상 문제는 없으며, 중국에서 쓰는 농약의 기준치가 일본보다 더 낮을 수 있음. 일본에서 사용 불가능한 농약의 기준치는 0.1ppm이나 중국에서의 기준치는 0.01 ~ 0.02ppm 정도임.

- 셋째, 청다오는 일본에서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임. 특히 채소를 절단하면 신선도가 급속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 신속한 채소수송을 위해서는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중요함. 동 시는 현재 채소 가공과정에서 특수처리가 가능한 장비를 일본에서 도입하여 채소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입 후 약 21일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²⁶⁾
- 넷째, 일본내 채소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음.

□ 동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일본 국내산보다 20~30% 정도 저렴함. 가격변동폭이 거의 없으며, 수출의 안정성을 위해 주로 장기계약 및 고정계약이 이루어짐.

□ 동사가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느끼는 애로사항²⁷⁾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채소의 조달을 계약재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계약농가 이외에 시장에서 채소를 조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즉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채소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조달선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계약재배의 경우 가격, 품질 관리 등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나 중국 농가가 이를 어기는 경우도 발생하여

26) 채소구입 후 컨테이너에 적납(9일)+컨테이너로 수송(7일)+판매기간(5일)=21일

27)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식품기업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계약이행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일본 농민단체의 반발임. 2~3년 전 중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가 크게 보도되어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임. 동 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지는 않고 있으나 언젠가는 일반 소비자도 판매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따라서 자사 수출제품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동 사는 일본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고품질의 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 재배 및 농약관리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전문적인 기업을 활용함. 이들 일본기업이 재배농가를 철저히 지도하는 방식으로 재배채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
- 둘째, 중국의 농산물 품질규격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중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산물 품질규격기준의 엄격화를 유도하는 것이 과제임.
- 셋째, 유기농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함. 향후 동 사는 유기농법을 통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시장에 진출한 일본계 식품가공업체나 외식업체에도 가공채소를 공급할 계획에 있음.

2. 사례 2: 이토추 유한공사

□ 이토추 유한공사는 냉동채소, 육류 등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산둥성에서만 10개의 중국 식품가공회사에 출자하고 있음.²⁸⁾

28) 중국 전체로는 40~50개 정도의 가공식품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가 가공한 식품을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 중국투자는 계약방식의 형태임. 이토추 유한공사가 직접 농지를 매입하여 생산하거나 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내 가공회사에 출자하거나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음. 즉 중국의 농지를 사들여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와 직접 계약함. 이에 따라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 직접 농지를 사들여 재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5~6년 전만 해도 중국산은 저가격·저품질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음.
- 2~3년 전의 농약파동 이후, 일본정부는 중국정부에 농약규제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중국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도매상, 슈퍼, 외식산업 등 주요 중국 진출기업들이 중국내에서 생산지도를 한 결과, 현재는 저가격이면서도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 더구나 일본의 주요 종묘회사(2개사 정도)가 개량품종을 중국에 공급하고 있어 이 또한 품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동 사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본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수입급증으로 일본내 생산이 감소한 경우는 우엉, 버섯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산 수입증가는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중국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즉 우엉이나 버섯, 종자 등은 일본내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나머지 품목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며, 특히 양파의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수입한 것을 중국으로 수입선이 대체한 것임.
- 품질확보를 위해 일본의 기술력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중국 생산농가에의 기술보급과 중국농민의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의 농업협력은 민간기업 수준에서만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협력은 거의 없음.
 - 동 시는 정부차원에서의 일·중간 농업협력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류(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입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²⁹⁾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약대책 등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 농민단체의 경우,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일본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공격은 없음. 농민저항 방식이 데모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 즉 이미지 추락이나 간접조사 등을 활용함.³⁰⁾

29) 현재 일본정부는 중국의 육류생산업체 인증을 억제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35개 인증공장이 있고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경우는 약 80개의 인증공장이 있으나 최근 4년 동안 인증공장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입을 증가시키려 해도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30) 동 시는 일본에서 2~3년 전 발생한 농약파동은 농민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위기 의식을 느낀 농민단체 등이 잔류농약을 조사하였고, 대중 수입농산물 중 10% 미만이 기준을 초과, 이를 마스크에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부록 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1995년 개발·운용하고 있는 KREI-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활용하였다. KREI-ASMO 모형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주요 농산물 수급과 총량지표 전망을 위한 동태적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이 모형은 급변하는 국내외 다양한 경제 및 농업 관련 정책과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하고, 모형구조의 안정성과 결과의 적합성 등을 보완하고 있다.

1. 분석모형의 기본가정 및 구조

가. 기본가정

KREI-ASMO 2005에서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외생으로 도입하고 있고, 경쟁적인 국내 농산물 시장구조를 가정, 농산물 수급균형에 의해 국내시장 균형가격과 균형물량이 도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품질은 동일하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국내 거래 및 수입을 서로 차별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수입산과 국내산 간의 품질차이는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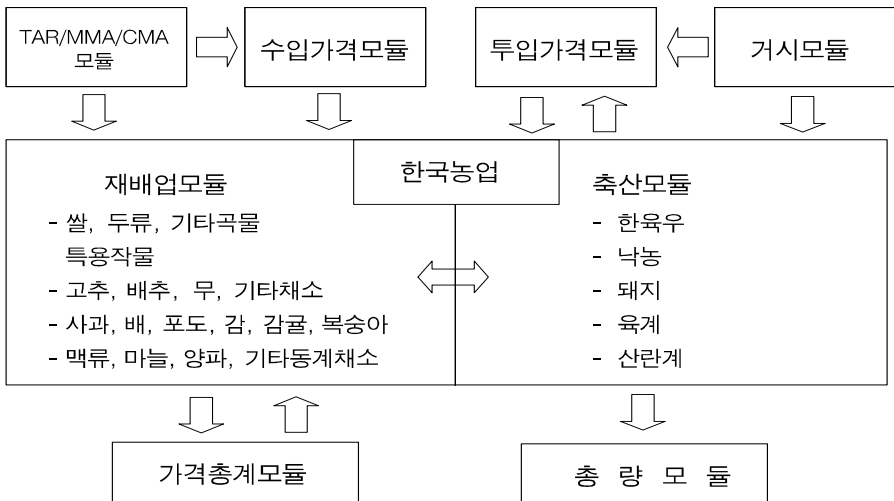
모형구조는 전반적으로 블록 축차적인(block recursive) 구조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한 중장기 수급구조 파악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가정하고 있다.

나. 모형구조

KREI-ASMO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모듈, 투입재가격 전망모듈, 재배업부문 전망모듈, 축산부문 전망모듈, 그리고 총량부문 전망모듈 등 크게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부그림 2-1 참고). 주요 거시변수 전망모듈은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전망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 KDI 등 관련기관 전망치 또는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투입재가격 전망모듈은 농기구 가격, 경상재 가격, 투입재 가격, 농업 노임, 농지 임차료 등을 전망하도록 설정되었다. 이 중 농기구, 경상재, 투입재 가격은 앞서 전망된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나, 농업 노임과 농지 임차료는 거시변수 전망모듈과 더불어 재배업부문 모듈과 연계되어 전망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그림 2-1. KREI-ASMO 구조 개요



주: TAR은 적용관세율, MMA/CMA는 최소시장접근물량(현행시장접근물량)을 의미.

재배업모듈은 크게 하계재배작목, 과수작목, 그리고 동계재배작목으로 구분된다. 하계재배작목과 동계재배작목은 생산자의 재배작목 선택의 상충(trade-off)관계가 반영되도록 연립방정식 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하계작목 중 하계노지채소는 다시 주요 채소 작목으로 세분되어 채소 작목들간 경합관계가 반영되도록 별도 모듈로 설정되어 있다.

과수모듈 내에 포함된 품목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그리고 복숭아 6개 작목이다. 각 품목은 별도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각 수요와 공급부문에서 작목 간 대체관계가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축산모듈은 한육우 모듈, 낙농 모듈, 양돈 모듈, 육계 모듈, 그리고 산란계 모듈로 구분·설정되어 있다. 각 모듈에서 도출된 소비량 정보가 다시 재배업모듈의 수요함수내 대체관계 반영을 위해 도입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재배업모듈, 과수모듈, 축산모듈에서 도출된 개별 농가판매가격은 각 작목의 가중치가 고려되어 농산물 농가판매가격(축산부문 제외), 축산물 농가판매가격, 총 농가판매가격 총계(aggregation) 산출에 이용되도록 짜여 있다.

총량모듈은 앞의 모듈에서 도출된 생산량과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작목 또는 작목군의 생산액(경상, 불변), 농업소득, 부가가치,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 농업 총소득, 농업 총부가가치가 계산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2. FTA의 농업영향 파급 경로

KREI-ASMO에서 관세율 감축의 파급과정은 개별품목의 생산 및 수출입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파급구조는 해당 관세율, 환율, 수입 제비용을 고려해서 수입통관가격이 도출되고, 이를 통해 수입수요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결정된 수입량과 수입통관가격은 각각 공급부문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도출된 시장균형가격은 다시 공급부문의 재배면적 또는 축산 사육부문에 피드백된다.

가령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고추의 관세가 철폐되고, 중국산 고추가 가장 낮은 가격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FTA로 고추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의 수출가격에 다 환율과 수입 제비용을 적용하여 고추의 국내수입가격이 결정된다.

국내 생산자 가격과 수입가격 중 낮은 것이 시장가격을 주도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주도가격 모형에서 고추의 시장가격은 중국산 고추의 수입통관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이 가격은 다시 경지배분 모형과 수요모형에 영향을 미친다.

노지고추, 배추, 무, 기타 하계노지채소로 구성된 하계 2차 경지배분 모형에서 해당작목의 금기 재배면적은 자체 및 관련 작목의 전기 농가판매가격과 농업노임에 의해 결정된다. 자체 공급탄성치는 양(+)이므로 고추가격이 하락하면 고추재배면적은 감소한다. 고추가격은 다른 작목의 재배면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산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작물은 공급 대체탄력성이 양인 반면, 경합관계에 있는 작목의 대체탄력성은 음(-)이다. 고추가격이 하락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배추 등의 재배면적은 증가한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재배면적이 결정되면 단수가 곱해져 국내생산량이 결정된다. 단수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면적 감소는 대개의 경우 생산량 감소로 나타난다.

수요모형에서는 해당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의 대체(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농산물 역시 수요가 증가(감소)한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시장균형을 달성하여 국내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고, 일정 마진율을 적용하여 농가판매가격이 도출된다.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한 것이 생산액이고, 여기에서 경영비를 제한 것이 소득이 된다. 따라서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증감은 생산량 및 농가판매가격의 변화 폭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경로를 따라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004년 관세

수준이 2017년까지 지속되는 기준(baseline) 시나리오와 다음에서 설명될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각 품목 및 농업내 과급영향은 적용되는 관세율 및 관세감 축를, 그리고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상이한 과급효과가 계속된다.

3. 분석 시나리오

가. 기준 시나리오

기준전망(baseline projection)을 위한 시나리오에서 쌀은 2004년 쌀 재협상 결과(WTO에 통보한 내용)를 반영하였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따른 쌀에 대한 특별조치를 향후 10년간(2014년까지) 더 연장하되, 유예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물량 수입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 40만 8,700톤(1988~90년 평균소비량의 7.96%)까지 증량한다. MMA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이고, 수입방식은 기존 국영무역방식으로 한다. 밥쌀용 시판 물량은 2005년 매년 MMA 도입물량의 10%에서 시작해서 2010년 30%까지 확대하고, 이후 30%를 유지한다.

쌀 이외 품목은 2004년 품목별 양허 관세수준이 전망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변수를 고려하였다.

쌀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쌀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실시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공공비축제(600만 석) 실시를 가정하였다. 사과, 배, 감, 감귤, 복숭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을 고려하되, 2012년부터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칠레 FTA에서 10년간 관세철폐를

약속한 포도와 복숭아는 2005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이후 완전개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나. WTO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

KREI-ASMO 2005를 이용하는 이 연구는 농업부문 중장기 과급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품목별 중장기 시장개방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쌀은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되었지만, 쌀 이외 품목의 시장개방은 WTO DDA 농업협상 및 FTA 결과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쌀 이외 품목은 WTO DDA 농업협상이 2006년 타결되어, 2007년 이행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개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WTO DDA 협상과정에서 2005년 10월 19~20일 개최된 FIPs(five interested parties: 미국, 브라질, 인도, EU, 호주 5개국 지칭) 제네바회의에 앞서 미국이 제안한 안에 이어(2005년 10월 10일), G20+그룹³¹⁾이 10월 12일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서 설정하였다. G20+그룹의 제안은 관세구간과 감축 폭에 있어 미국과 EU안의 중간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G20+그룹이 제안한 연구수행 시점상 가장 최근의 안을 WTO DDA 타결 시나리오로 선택하였다.

G20+그룹이 제안한 WTO DDA 선진국 시나리오에서 쌀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의 관세구간은 0~20%, 21~50%, 51~75%, 76%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간에 속하는 품목 관세를 5년간 45%, 55%, 65%, 75% 감축하는 것이다. 이행 최종연도에 모든 품목의 관세는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관세 상한이 100%이다. G20+그룹안은 관세율쿼터(Tariff Rate Quota: TRQ)

31) G20+그룹이란 WTO 협상에서 브라질과 인도가 이끄는 농산물 수출 개도국 진영을 일컫는 말로, DDA 협상 이후 미국과 EU로 대변되는 선진국그룹과 대립하고 있다.

가 적용되는 품목에 한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폭보다 작은 관세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 등 4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는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폭의 7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관세 상한은 일반품목과 동일하게 100%이다. 관세를 소폭 인하하는 대신 TRQ는 최근 3개년 국내 소비량의 6%에서 9%까지 증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2~04년도 평균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G20+그룹이 제안한 개도국 시나리오는 쌀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의 관세구간을 0~30%, 31~80%, 81~130%, 131% 이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간에 속하는 품목 관세를 10년에 걸쳐 25%, 30%, 35%, 40% 감축하는 것이다. 관세 상한은 150%이다. 즉 이행 최종연도에 모든 품목의 관세가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G20+그룹안은 개도국의 경우 TRQ 적용품목뿐만 아니라 TRQ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 등 4개의 TRQ 품목과 쇠고기, 사과, 배 등 3개의 비TRQ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때 TRQ 품목의 관세는 위에서 선진국 대우시 적용되는 관세감축 폭의 2/3 수준(일반 관세감축의 47%)을 감축해야 한다. 관세 상한은 일반품목과 마찬가지로 150%이다. 이와 같은 관세감축 이외에도 TRQ를 최근 3년간(2002~04년) 평균 소비량의 4%에서 10년간 6%까지 늘려야 한다.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비TRQ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일반품목 관세감축 폭의 55%를 인하해야 한다. 관세 상한은 150%이다. G20+그룹이 제안한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5년(2008~12년)이다. 2012년 이후에는 2012년의 시장개방 조건이 201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개도국의 이행기간은 10년(2008~17년)이다.

다. FTA 시나리오

2국간 FTA는 협정을 맺는 상대국에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해당품목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상대국의 수출가격이 경쟁국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국가로부터 농산물이 수입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해당품목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08년부터 FTA 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008~17년까지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쌀은 기존 시나리오 적용 내용과 동일하게 2004년 쌀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접근 물량만 늘리고 관세화는 10년간 유예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FTA 이행 첫해인 2008년부터 철폐하는 것이다. 단, 관세가 200% 이상인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는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되,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마늘, 감귤, 사과, 포도, 배, 딸기, 인삼을 민감품목으로 분류,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4. 추정 결과

가. 품목별 파급효과

1) 채소류

채소 소득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07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7년에는 2007년 대비 3.5% 적은 2조 8,5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10년간 관세가 완전철폐되는 시나리오 1에서 예상되는 2017년 채소 소득은 기준 시

부표 2-1. 시나리오별 채소류 소득 추정

(단위: 십억 원, %)

구분	연도	베이스라인	DDA-개도국	DDA-선진국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07	2,956	2,956 (0.0)	2,956 (0.0)	2,956 (0.0)	2,956 (0.0)	2,956 (0.0)
	2008	2,939	2,825 (-3.9)	2,765 (-5.9)	2,872 (-2.3)	2,601 (-11.5)	2,758 (-6.2)
	2009	2,927	2,845 (-2.8)	2,603 (-11.0)	2,779 (-5.1)	2,364 (-19.2)	2,624 (-10.4)
	2010	2,910	2,854 (-1.9)	2,459 (-15.5)	2,640 (-9.3)	2,163 (-25.7)	2,549 (-12.4)
	2011	2,917	2,857 (-2.1)	2,329 (-20.2)	2,544 (-12.8)	1,993 (-31.7)	2,555 (-12.4)
	2012	2,878	2,761 (-4.1)	2,047 (-28.9)	2,386 (-17.1)	1,741 (-39.5)	2,477 (-14.0)
	2013	2,873	2,689 (-6.4)	1,990 (-30.7)	2,234 (-22.2)	1,709 (-40.5)	2,348 (-18.3)
	2014	2,856	2,661 (-6.9)	1,967 (-31.1)	2,079 (-27.2)	1,718 (-39.9)	2,282 (-20.1)
	2015	2,847	2,580 (-9.4)	1,943 (-31.8)	1,936 (-32.0)	1,720 (-39.6)	2,210 (-22.4)
	2016	2,851	2,445 (-14.3)	1,936 (-32.1)	1,823 (-36.1)	1,736 (-39.1)	2,180 (-23.5)
	2017	2,851	2,420 (-15.1)	1,922 (-32.6)	1,713 (-39.9)	1,744 (-38.8)	2,149 (-24.6)
2007~17년 증감률		-3.5	-18.1	-35.0	-42.1	-41.0	-27.3
2007~17년 누적증감액		-712	-2,625	-7,601	-6,555	-10,073	-5,431

주: () 안은 베이스라인 대비 증감률임.

나리오 대비 39.9%, 2007년 대비 42.1% 적은 1조 7,1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5년간 관세가 완전철폐되는 시나리오 2의 2017년 채소 소득은 1조 7,440억원으로 시나리오 1보다는 310억원 많으나 기준 시나리오보다 38.8%, 2007년보다는 41.0%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와 마늘 등 고율관세품목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는 2017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24.6%, 2007년보다 27.3% 적은 2조 1,490억원으로 FTA의 추가적인 개방 피해가 가장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17년의 소득 누적 감소액은 관세감축이 가장 큰 시나리오 2의 경우 10조 730억원, 시나리오 1은 6조 5,550억원, 시나리오 3은 5조 4,3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2007~17년의 소득 누적 감소액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6조 8,890억원으로 시나리오 1보다도 소득 누적 감소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 감축이 가장 큰 시나리오 2의 경우보다는 누적 감소가 2조 4,720억원 적을 것으로 나타나, 관세 철폐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보다는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과일 소득

과일 소득은 베이스라인에서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2011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2012년 이후부터 감소하여 2017년에 기준연도 대비 1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시나리오 1에서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완만한 감소를 보이다가 2012년 수입제한이 해제되면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2017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62.8% 감소한 583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일 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FTA 시나리오 2에서 과일소득은 2008년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소득은 기준연도보다 61.6% 감소한

603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협상에서 사과, 포도, 배,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FTA 시나리오 3에서 2017년 과일 소득은 기준연도보다 31.4% 감소한 1,075억원일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 과일 소득의 누적감소액은 베이스라인이 215억원, 시나리오 1이 4,277억원, 시나리오 2가 6,255억원, 시나리오 3은 2,25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표 2-2. 시나리오별 과일소득 추정

(단위: 억 원, %)

구분	연도	베이스라인	DDA-개도국	DDA-선진국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07	1,567	1,567 (0.0)	1,567 (0.0)	1,567 (0.0)	1,567 (0.0)	1,567 (0.0)
	2008	1,603	1,580 (-1.5)	1,511 (-5.7)	1,566 (-2.3)	1,342 (-16.3)	1,565 (-2.4)
	2009	1,627	1,596 (-1.9)	1,492 (-8.3)	1,560 (-4.1)	1,350 (-17.0)	1,570 (-3.5)
	2010	1,652	1,637 (-0.9)	1,479 (-10.5)	1,557 (-5.8)	1,376 (-16.7)	1,580 (-4.4)
	2011	1,689	1,696 (-0.4)	1,474 (-12.7)	1,568 (-7.2)	1,402 (-17.0)	1,602 (-5.2)
	2012	1,525	1,481 (-2.9)	1,052 (-31.0)	1,168 (-23.4)	727 (-52.3)	1,288 (-15.6)
	2013	1,513	1,458 (-3.6)	984 (-35.0)	1,013 (-33.0)	680 (-55.1)	1,251 (-17.3)
	2014	1,514	1,459 (-3.6)	963 (-36.4)	909 (-40.0)	672 (-55.6)	1,213 (-19.9)
	2015	1,477	1,376 (-6.8)	920 (-37.7)	788 (-46.6)	644 (-56.4)	1,156 (-21.7)
	2016	1,452	1,281 (-11.8)	889 (-38.8)	686 (-52.8)	624 (-57.0)	1,119 (-22.9)
	2017	1,406	1,226 (-12.8)	850 (-39.6)	583 (-58.5)	603 (-57.2)	1,075 (-23.6)
증감률 (2007~14년)		-10.3	-21.8	-45.8	-62.8	-61.6	-31.4
누적증감액 (2007~14년)		-215	-884	-4,061	-4,277	-6,255	-2,255

시나리오 2에서 누적감소액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베이스라인 누적감소액보다 6,040억원, DDA-개도국보다 5,371억원, DDA-선진국보다 2,194억원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과일 소득은 관세의 단계적인 철폐 및 하락 수준에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축산 소득

축산부문 소득과 관련해서는 축종별 소득은 집계되지 않고 축산부문 전체에 대해서만 산출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이행 첫해에 베이스라인 대비 29.2% 소득이

부표 2-3. 시나리오별 축산소득 추정

(단위: 십억 원, %)

연도	베이스라인	DDA-개도국	DDA-선진국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07	2,073	2,073 (0.0)	2,073 (0.0)	2,073 (0.0)	2,073 (0.0)	2,073 (0.0)
2008	2,057	2,042 (-0.7)	1,948 (-5.3)	2,005 (-2.5)	1,456 (-29.2)	1,831 (-11.0)
2009	2,068	2,046 (-1.1)	1,892 (-8.5)	1,966 (-4.9)	1,441 (-30.3)	1,844 (-10.8)
2010	2,076	2,075 (0.0)	1,840 (-11.4)	1,925 (-7.3)	1,479 (-28.8)	1,840 (-11.4)
2011	2,089	2,119 (1.4)	1,795 (-14.1)	1,898 (-9.2)	1,522 (-27.2)	1,845 (-11.7)
2012	2,087	2,110 (1.1)	1,702 (-18.5)	1,839 (-11.9)	1,479 (-29.2)	1,831 (-12.3)
2013	2,087	2,099 (0.5)	1,694 (-18.9)	1,790 (-14.2)	1,492 (-28.5)	1,823 (-12.7)
2014	2,093	2,134 (1.9)	1,697 (-18.9)	1,743 (-16.7)	1,500 (-28.3)	1,823 (-12.9)
2015	2,104	2,114 (0.5)	1,702 (-19.1)	1,694 (-19.5)	1,541 (-26.7)	1,854 (-11.9)
2016	2,130	2,046 (-3.9)	1,715 (-19.5)	1,663 (-21.9)	1,602 (-24.8)	1,917 (-10.0)
2017	2,147	2,069 (-3.6)	1,714 (-20.2)	1,616 (-24.7)	1,655 (-22.9)	1,978 (-7.9)
2007~17년 증감률	3.6	-0.2	-17.3	-22.1	-20.1	-4.6
2007~17년 누적증감액	209	124	-3,032	-2,592	-5,564	-2,144

주: () 안은 베이스라인 대비 증감률임.

감소하고, 2017년에는 22.9% 소득이 감소하여 축산 소득은 생산액보다 높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나리오 1의 경우 이행 첫해에는 Base대비 2.5% 감소하나 이행 10년차에는 24.7%나 감소하여 오히려 시나리오 2보다 축산 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나리오 3의 경우는 2017년에 7.9%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업소득에 미치는 효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FTA나 DDA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2007년 농업총소득은 15조 2,550억원이다. 2008~17년까지 10년간 농업총소득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낸다. 2008년 15조 2,110억원에서 2017년에는 13조 5,610억원으로 감소한다. 2007~17년까지 11년간 농업총소득은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년간 농업총소득의 누적감소액은 7조 9,150억원이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이와 같은 농업총소득의 감소는 쌀, 채소, 과일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 분석기간 동안 축산소득은 소득 향상에 따른 주요 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증가로 오히려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FTA 시나리오 중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FTA 체결 즉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는 시나리오 2에서 농업총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2에서는 FTA 이행 첫해에 농업총소득이 전년에 비해 1조 3,750억원 감소하는 반면 시나리오 1과 3에서는 각각 2,390억원, 5,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2012년 식물방역법 해제에 따라 과일, 채소의 수입증가로 소득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베이스라인 대비 2012년 농업총소득 감소율은 각각 7.0%, 18.4%, 7.0%이다. FTA 이행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각각 16.3%, 15.0%, 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는 시나리오 1에서 이행기간 중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19조 6,090억원이다. 같은 기간 시나리오 2에서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28조 9,490억원이다.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시나리오 3에서는 17조 110억원의 농업총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이것은 FTA 체결시 주요 품목의 예외 없는 즉시 관세철폐는 우리나라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나리오 3 이외에 나머지 2개의 시나리오에서 FTA 이행이 종료되면 FTA 이행 전에 비해 농업총소득이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별로는 채소의 소득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총소득 기준 시나리오 1과 2에서 채소 소득 감소누적액은 6조 6천억~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과일 소득 감소누적액은 4조~6조원이다. 축산소득 감소누적액도 2조 6천억~5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대비 2017년 소득 감소를 면에서는 과일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2017년 과일소득은 2007년 대비 각각 62.8%, 61.6%, 31.4% 감소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별 2017년 채소소득은 2007년 대비 42.1%, 41.0%, 27.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축산소득은 2007년에 비해 각각 22.1%, 20.1%, 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FTA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나타났다.

DDA 협상 결과 이행 첫해인 2008년 DDA 개도국과 선진국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은 같은 해 베이스라인 농업총소득 대비 각각 1.2%,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 선진국 시나리오의 이행기간은 5년이다. 이행 5년째인 2012년 DDA 선진국 및 개도국 시나리오하의 농업총소득은 베이스라인 소득 대비 각각 0.4%, 9.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DDA 선진국 및 개도국 시나리

오하의 농업총소득은 같은 해 베이스라인 농업총소득 대비 각각 4.0%, 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DDA가 타결되면 FTA 효과는 미미한 것인가? 이행 첫해인 2008년 경우 DDA 선진국 시나리오의 경우 농업총소득은 14조 9,600억원이다. 이 같은 농업총소득은 10년간 관세철폐 시나리오보다는 적지만 즉시 관세 철폐를 상정하는 시나리오 2와 3보다는 각각 1조 800억원, 2,850억원 많은 액수다. 다시 말하면 DDA가 타결되더라도 이행 첫해에 FTA로 인해 농업총소득이 추가적으로 2,850억~1조 8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2017년에는 FTA 시나리오 1, 2에서 DDA 선진국에 비해 추가적으로 각각 9,080억원, 7,380억원의 농업총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비록 DDA가 타결되더라도 FTA는 추가적인 농업총소득 감소를 가져다준다.

2007~17년간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에서도 FTA가 추가적인 농업총소득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DA 선진국 시나리오의 경우 2007~17년간 18조 1,270억원의 농업총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FTA 시나리오 1, 2의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각각 19조 6,090억원, 28조 9,490억원으로서 DDA 선진국 시나리오하에서보다 1조 4,820억원, 10조 8,220억원 더 많다. 이 같은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을 DDA 개도국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³²⁾ 다시 말하면 10년간의 이행기간 동안 FTA는 DDA보다 1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농업총소득 감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FTA 시나리오 3는 DDA 시나리오보다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이 적다. 그러나 주요 민감품목을 모두 예외로 한 FTA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3과 같은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2) 2007~17년간 세 가지 FTA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DDA 개도국 시나리오에서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보다 각각 9조 7,750억원, 19조 1,150억원, 7조 1,770억원 많다.

부표 2-4. 시나리오별 농업총소득 추정

(단위: 십억 원, %)

구분	연도	베이스라인	DDA-개도국	DDA-선진국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07	15,255	15,255 (0.0)	15,255 (0.0)	15,255 (0.0)	15,255 (0.0)	15,255 (0.0)
	2008	15,211	15,036 (-1.2)	14,960 (-1.7)	15,016 (-1.3)	13,880 (-8.8)	14,675 (-3.5)
	2009	15,151	14,990 (-1.1)	14,643 (-3.4)	14,799 (-2.3)	13,529 (-10.7)	14,420 (-4.8)
	2010	15,048	14,972 (-0.5)	14,356 (-4.6)	14,487 (-3.7)	13,291 (-11.7)	14,201 (-5.6)
	2011	14,931	14,956 (0.2)	14,095 (-5.6)	14,270 (-4.4)	13,026 (-12.8)	14,084 (-5.7)
	2012	14,538	14,477 (-0.4)	13,186 (-9.3)	13,513 (-7.0)	11,861 (-18.4)	13,522 (-7.0)
	2013	14,341	14,204 (-1.0)	13,004 (-9.3)	13,019 (-9.2)	11,714 (-18.3)	13,264 (-7.5)
	2014	14,151	14,083 (-0.5)	12,827 (-9.4)	12,581 (-11.1)	11,631 (-17.8)	13,061 (-7.7)
	2015	13,933	13,739 (-1.4)	12,622 (-9.4)	12,137 (-12.9)	11,577 (-16.9)	12,873 (-7.6)
	2016	13,766	13,232 (-3.9)	12,462 (-9.5)	11,759 (-14.6)	11,562 (-16.0)	12,775 (-7.2)
	2017	13,561	13,023 (-4.0)	12,263 (-9.6)	11,355 (-16.3)	11,525 (-15.0)	12,658 (-6.7)
2007~17년 증감률		-11.1	-14.6	-19.6	-25.6	-24.4	-17.0
2007~17년 누적증감액		-7,915	-9,834	-18,127	-19,609	-28,949	-17,011

5. 요약

결론적으로 중국이라는 세계최대의 농업 생산국과 일본이라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순수입시장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한·중·일 FTA 체결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세와 각종 비관세 조치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경쟁이 제한되어 왔던 중국 및 일본산 농산물과 무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개방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수입 여부는 우리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요 농산물의 수입가능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지역의 핵심을 이루는 한·중·일 3국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과 생산물 구성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경합적이라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생산요소 부존 비율이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다. 한국은 토지생산성이 높고 일본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대신, 중국은 일본 및 한국보다 자본생산성이 높아 농업분야에서의 특화를 통한 산업내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쌀을 자유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주요 품목별 경쟁력에 대한 정성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국산 농산물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우위를 갖고 있지만 품질경쟁력은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축산물과 과일류의 경우 동식물 검역 문제로 수입이 금지되어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도 많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져 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농지 전용과 농업노동력의 이농, 그리고 북부지역의 수자원 고갈 등 농업 생산 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동질적인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지방정부(성)의 연합체로 볼 수 있어 특정 농산물의 한국 수입 가능성을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우선시하는 지역과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수출을 극대화하려는 동북지역 및 산둥성 등 도시근교 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 소비자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지리적 인접성과 생산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농산물 소비시장으로서도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곡물류 소비는 줄어들고 육류와 식용유, 과일 및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농촌지역에서는 곡물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부 연안지방 같은 고소득 지역에서는 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식량자급정책으로 시장규모에 비해 농산물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류와 식물성 유지류, 육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미 고급화된 일본의 농산물 시장과 중국의 고소득 계층 또는 도시지역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식품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후와 지형 등 천연조건에 의해, 또는 역사와 문화적 요인에 의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국내 농산물의 대일수출 효과

한편 한·중·일 FTA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

인 일본에 대한 수출도 대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 신선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현행 관세율이 대체로 낮아 가격하락 효과가 작고, 품목에 따라서는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대하지 않는 품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인 일본의 소비자 품질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고, 농산물 수출국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농산물은 수출 형태와 일본의 소비수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철폐 이후 수출증가 가능성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계절(주로 동절기)에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급조절용 수입품목이 있다. 한국산 오이와 딸기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일본의 국내 생산이 구조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산을 수입하는 품목으로, 일본 국내산에 비해 품질이 낮고 수출국간 경합이 심한 품목이 있다. 토마토, 사과, 배, 장미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셋째, 가격경쟁력과 함께 품질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이른바 블루오션(blue ocean) 품목이 있다. 파프리카와 신선육 상태의 돼지고기, 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수급보완용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일본의 국내 작황에 따라 수입 물량이 변동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출이 불안정하고, 관세를 철폐해도 수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구조적으로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품질이 낮은 품목들 역시 관세철폐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 수준이 낮은 데다 다른 수출국과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신선 농산물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품질경쟁력을 갖춘 파프리카와 배, 신선 돼지고기, 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식물 검역이나 잔류농약, 육종권

문제, 로열티 문제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에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관세가 철폐될 경우도 대부분 신선 농산물의 가격하락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일본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목들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 이후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와 배, 밤 등이며, 현재 구제역 등으로 인해 수출이 금지된 돼지고기도 동물검역 문제가 해결될 경우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백합과 국화 등 화훼류와 배추, 양배추, 채소종자, 가지와 멜론 등도 한국의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부표 2-5. 대일 농산물 수출품목별 유형과 향후 전망

품목	수출유형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기타 장애요인	경쟁국 유무	향후 전망
오이	수급조절	다소 우위	근접	훈증시 상품성 하락	중국산 염장오이	불안정
파프리카	구조적	다소 우위	근접	잔류농약 검출	네덜란드	증가
토마토	구조적	우위	근접	잔류농약 검출	미국, 캐나다	약간 증가
딸기	수급조절	우위	낮음(냉동)	육종권 문제	미국	불안정
사과	구조적	다소 우위	낮음	수출물량 확보	호주, 미국	약간 증가
배	구조적	다소 우위	낮음(저장성 우수)	-	-	증가
장미	구조적	우위	낮음(선별)	검역과 로열티	인도, 네덜란드	약간 증가
돼지고기	구조적	우위(신선육)	우위(신선육)	구제역, 콜레라	미국, 덴마크, 캐나다	증가(검역문제 해결시)
밤	구조적	다소 우위	우위	-	중국, 이탈리아	증가

자료: 어명근 외(2004)에서 발췌 및 분류.

토마토와 사과, 장미 등의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관세철폐 이후에도 수출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고를 비롯한 기타 버섯류와 난초 등은 대일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철폐시 일본산과의 가격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이와 딸기 등의 경우는 일본내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관세철폐 이후에도 수출증가 전망이 불투명하고, 일본 검역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출량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선정의 중요성

FTA는 WTO 협상과 달리 산업별·품목별로 개별 사정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취약산업이나 취약품목을 선정하여 관세철폐 예외 및 장기간 유예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한·중 FTA는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외협상에서 국내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품목을 얼마나 선정하느냐에 따라 해당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관세철폐 예외나 장기간 유예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취약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정해지며, 해당산업의 구조조정 방향뿐만 아니라 국내비준 가능성도 정해지게 된다.

한·중·일 FTA에 있어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것인지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즉 가장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 중 하나는 일차적으로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 또는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과급효과는 FTA를 맺은 국가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와의 FTA 효과가 전체 FTA 효과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과의 FTA 효과가 일본과의 FTA 효과보다 훨씬 크고, 결국 한·중·일 FTA 효과는 중국과의 FTA 효과가 주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에 있어 민

감품목 선정은 한·중 FTA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품목 선정 기준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또는 생산액),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재배면적, 지역집중도, 경쟁력, 시장보호 정도, 자금률, 구조조정 방향 등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완적인 기준으로서 교역가능성(검역 및 교역비중), DDA 농업협상 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서진교(2005)의 연구에서는 DDA 파급영향 분석을 위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는 일차적으로 3~5개년 평균 농업생산액, 재배면적(사육두수), 재배(사육)농가 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국경장벽으로서의 관세의 유효성, 해당품목의 관세조화 문제, TRQ 신설 또는 증량과 관세감축 간의 관계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으로 총 40개 정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다자간협상인 WTO 협상하에서의 검토조건이므로 양자간 협상에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상대국과의 경쟁력 차이에 따라 해당품목에 얼마나 영향(피해)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고려할 기준은 경쟁력 수준과 품목별로 예상되는 피해정도이며, 다음으로는 이들 품목이 얼마나 교역이 가능한지를 과거의 수입 실적과 국경장벽으로서 관세의 유효성이나 검역기준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고려할 변수로는 피해정도가 지역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변수로는 재배면적(사육두수)과 재배(사육)농가 수 및 지역집중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중·일 FTA에 있어

서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는 ① 경쟁력 수준과 품목별 피해수준, ② 교역 가능성 (과거 농산물 수입실적, 관세의 유효성, 검역기준) ③ 재배면적(사육두수)과 재배 (사육)농가 수, 지역집중도, 기타 검역기준 등을 택할 수 있다.

KREI(2005)는 특정국가에 관련 없이 전반적인 FTA 체결에서 민감품목을 선정 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또는 생산액),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재배면적, 지역 집중도, 경쟁력, 시장보호 정도, 자급률, 구조조정 방향 등의 기준과 보완적 기준으로 교역 가능성(검역 및 교역비중), DDA 농업협상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에서 제시한 일반 FTA의 민감품목 선정기준과 이에 따라 선정된 민감품목의 종류 는 [부표 3-1]과 같다.

부표 3-1. 동시다발적 FTA하에서의 민감품목 선정기준

선정 절차	해당 품목
1: 부가가치액 기준	돼지고기, 배추, 시유, 딸기, 수박, 오이, 무, 참외, 연초, 파, 콩, 상추, 닭고기, 토마토, 호박, 느타리버섯, 감자, 고구마
2: 교역가능성	돼지고기, 연초, 콩, 닭고기, 감자, 고구마, 배추, 시유, 딸기, 수박, 오이, 무, 참외, 파, 상추, 토마토, 호박, 느타리버섯
3-1: 관세수준	콩, 고구마, 감자, 돼지고기, 연초, 닭고기, 배추, 시유, 딸기, 수박, 오이, 무, 참외, 파, 상추, 토마토, 호박, 느타리버섯
3-2: 가격경쟁력	콩, 고구마, 감자, 돼지고기, 닭고기, 연초, 느타리버섯, 배추, 딸기, 수박, 오이, 무, 참외, 파, 토마토, 시유, 호박, 상추
3-3: 국내자급률	고구마, 감자, 돼지고기, 닭고기, 콩, 연초, 느타리버섯, 배추, 딸기, 수박, 오이, 무, 참외, 파, 토마토, 시유, 호박, 상추
최종(32개 품목)	미곡, 고추, 쇠고기, 인삼, 마늘, 분유, 양파, 참깨, 감귤, 사과, 포도, 배, 단감, 천연꿀, 복숭아, 고구마, 돼지고기, 닭고기, 콩, 연초, 느타리버섯, 배추, 딸기, 수박, 오이, 무, 참외, 파, 토마토, 시유, 호박, 상추

이들 32개 민감품목을 다시 관세철폐 예외 등 시장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민감품목과 관세 일부 인하 또는 TRQ 제공 조건 관세 유지/인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고민감품목, 그리고 관세철폐 기간의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철폐를 고려할 수 있는 민감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하여 32개의 민감품목을 민감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면 [부표 3-2]와 같다.

부표 3-2. 민감품목 분류

분 류	적용 예	품 목
초민감품목	관세철폐 예외	미곡
고민감품목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 예외 또는 최소 감축	고추, 쇠고기, 인삼, 마늘, 낙농품, 감귤, 사과, 포도, 배
민감품목	관세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	천연꿀, 복숭아, 양파, 단감, 돼지고기, 닭고기, 엽연초, 콩, 참깨, 감자
저민감품목	중기적 관세 철폐	노타리버섯, 토마토, 신선우유, 오이, 배추, 무, 파, 호박, 상추, 고구마, 수박, 참외

주: 품목의 나열 순서는 민감도 순임.

3. 한·중·일 FTA에서의 민감품목 선정

가. 1단계: 가격경쟁력 수준 비교

먼저 한국 농산물과 중국 농산물의 가격수준을 비교한 결과 주요 품목의 가격차이는 평균 5.8배다. 이렇게 가격수준만 볼 때 중국 농산물의 대한민국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은 가격차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피해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가격차이가 큰 품목을 1단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격차이가 큰 농산물로는 식량작물의 경우 쌀, 감자, 콩 등, 특용작물의 경우 땅콩, 참깨 등, 채소류의 경우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과일류의 경우

사과, 배, 포도 등, 화훼류의 경우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이 있다(부표 3-3 참고).

RCA 지수를 근거로 대중국 또는 대일본 농산물 교역에서 민감품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표 3-4]와 같다.

부표 3-3. 한·중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 비교

(단위: 원/kg, 원/송이)

구 분		중국가격(A)	한국가격(B)	B/A
식량작물	쌀	330	2,000	6.1
	감자	158	490	3.1
	콩	430	2,857	6.6
	평균			5.3
특용작물	땅콩	631	2,933	4.7
	참깨	803	12,733	15.9
	평균			10.3
채소	배추	100	674	6.7
	무	172	530	3.1
	풋고추	459	4,680	10.2
	마늘	229	1,610	7.0
	양파	201	550	2.7
	평균			6.0
과일	사과	717	2,147	3.0
	배	373	1,333	3.6
	포도	387	3,500	9.0
	평균			5.2
화훼	장미	143	250	1.7
	카네이션	39	110	2.8
	국화	72	102	1.4
	평균			2.0
축산물	소고기	2,006	26,200	13.1
	돼지고기	1,347	7,520	5.6
	닭고기	946	2,529	2.7
	계란	547	1,170	2.1
	평균			5.9
전체 평균				5.8

주: 1) 농산물가격 자료는 2003년 1월의 중품 도매가격으로, 한국은 전국평균이고 중국은 北京大鐘寺 농산물도매시장가격(화훼는 北京亮馬花卉交易市場 도매가격)을 적용하였음.

2) 환율은 2003년 1월 1일의 매매기준율인 1위안=143.32원을 적용하였음.

부표 3-4. 한·중·일 농산물 RCA 지수(1997~2002년)

품 목	한 국		중 국		일 본	
	수출 RCA	수입 RCA	수출 RCA	수입 RCA	수출 RCA	수입 RCA
쌀	0.02	0	0.85	0.01	0.02	0.42
밀	0	1.83	0.04	0.66	0	0.83
옥수수	0	5.07	2.74	1.82	0	2.44
대두	0.01	1.81	0.24	6.01	0	1.55
사과	0.48	0	1.16	1.05	0.89	0
배	4.4	0	1.41	0.14	3.01	0.01
복숭아	0.05	0	0.05	1.12	0.13	0
포도	0.02	0.2	0.01	0.41	0.02	0.09
오렌지	0.12	1.27	0.03	0.32	0	0.65
참깨	0.13	5.02	4.53	1.21	0.19	2.71
유채	0	0	0	5.09	0.01	3.67
마늘	0.27	0.65	10.06	0.01	0.01	0.49
생강	0.15	0.82	17.42	0.06	0.35	6.05
양파	0.21	0.13	1.29	0.22	0.12	0.78
파프리카	2.82	0	0.03	0.04	0	0.43
고추, 피망	3.3	1.59	6.16	0.11	0.34	0.86
쇠고기	0.02	4.13	0.01	0.14	0.12	3.03
돼지고기	4.49	1.07	0.6	0.18	0.01	3.67
닭고기	0.04	0.45	2.61	1.07	0.1	1.77

주: 1) 수출입 RCA 지수는 연도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평균치를 사용함.

2) RCAX와 RCAM 모두 1보다 큰 품목은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임.

자료: FAO, FAOSTAT(www.fao.org).

부표 3-5. 한·중·일 수출 RCA 지수에 의거한 한국농산물 민감품목

품 목	중 국	일 본
식량작물류	옥수수	
과일류	사과, 배	배
특용작물류	참깨	
채소류	마늘, 생강, 양파, 고추	
축산류	닭고기	

이렇게 1단계에서 가격수준과 RCA 지수 등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하여 민감 품목을 선정하면 총 22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부표 3-6.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옥수수
특용작물(2)	땅콩, 참깨
채소(6)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과일(3)	사과, 배, 포도
화훼(3)	장미, 카네이션, 국화
축산물(4)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나. 2단계: 교역가능성(과거 농산물 수입실적, 관세 유효성, 검역기준) 검토

1단계에서 비교한 가격경쟁력은 단순히 중국농산물 가격수준과 우리 농산물 가격수준을 평균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실제로 한·중·일간 농산물 교역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는 과거 농산물 수입실적,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수준, 또한 동식물 검역기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단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현재 쌀의 한·중간 도매시장 가격차는 약 6.1배로 나타났다. WTO에 양허하지 않은 유일한 품목인 쌀은 현재 5%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만 수입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중국산 쌀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42.6%이다. 만일 동북아경제협력체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 수입량이 급증하여 한국 농업의 근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관세보다는 동식물 검역과 쿼터 등 비관세 부문의 규제가 사실상 더 크게 작용하여 왔다. 만일 현행 동식물 방역법상 수입규제가 지속될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 등 신선 육류와 사과, 배, 복숭아 등 신선 과일류 수입은 불가능하며, 조제품 형태로만 수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류 가운데 옥수수와 소맥은 할당관세(0%)가 적용되는 사료용이 시장접근물량(TRQ)으로 수입되고 있어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급증 등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산 옥수수 수입은 지금까지 중국의 국내 작황과 재고량 등 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중국의 수출보조금액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량도 크게 변동하였기 때문에 향후 수입전망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다. 만일 중국이 국내 육류 수요증가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 소비가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옥수수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 증가보다 국제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중국산 옥수수와 소맥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20.4%와 9.9%로 나타났다.

대두는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급률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으로는 여전히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물량은 5%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TRQ)이며, 수입 용도는 주로 콩나물 콩이다. 2004년 중국산 콩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5.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사료용이나 착유용 대두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중국내 생

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양허세율 487%인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산 콩과의 도매가격 차이가 6.6배나 되는 중국산 대두 수입은 채유용과 사료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국산 콩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팥도 현재 시장접근물량(TRQ) 위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킬터내 세율이 약 30%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2005년 현재 양허세율이 420%로 높아 관세 철폐시 수입 급증이 예상된다. 2004년 중국산 팥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99.9%로 독보적이다. 메밀도 시장접근세율은 3%로 낮지만 2005년 양허세율이 256%로 높아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메밀의 생산은 중단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류는 현행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냉동 또는 초산 조제 등 가공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양허세율이 수입금지 수준으로 높은 것은 물론 시장접근물량(TRQ)에 대한 관세도 30~50%로 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관세철폐시 가격하락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3년 현재 한·중간 가격차이가 고추는 10배가 넘고 마늘도 7배에 달해 관세철폐시 국산 고추와 마늘의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생산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2004년 양념채소류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고추 89.9%, 마늘 100%, 양파 79.9%, 파 100%, 생강 98.8%로 지배적이다.

배추와 무, 당근 등 신선 채소류는 관세율이 27~45%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운송비와 가공비 절감을 위해 절임류나 건조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철폐시 가격하락 폭만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1/7~1/6에 불과한 배추는 최근 관세율이 20%에 불과한 김치 형태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관세철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배추와 무 모두 2004년 수입시장 점유율이 99% 이상으로 높았으며, 당근도 98%로 지배적이었다.

부표 3-7. 주요 수입농산물의 중국산 비중과 수입형태

(단위: 천톤, 백만 달러)

품 목	총수입량(수입총액)		중국산 비중(%)		수입 형태
	1998년	2004년	1998년	2004년	
쌀	62(21.7)	209.3(82)	67.3	42.6	메현미(관세율 5%) 형태
옥수수	7,119(913.7)	8,387(1,438)	36.5	20.4	중국산은 사료용(할당세율 0%)과 기타
소맥	4,696(664)	3,382(665)	0.4	9.9	중국산은 주로 사료용(할당세율 0%)
대두	1,413(379)	1,297(487)	1.1	5.9	중국산은 주로 대두 기타(세율 5%)
팥	18(6.2)	32.1(19.7)	99.9	99.9	종자용 외 기타(세율 30%)
고추	14(42.8)	66.1*(138.0)	81.6	89.9	냉동고추(세율 27%)와 혼합조미료(45%)
마늘	36(15.5)	56.2**(24)	99.9	100.0	냉동마늘(세율 27%)과 기타(30%)
양파	13(3.2)	54.2**(12)	36.1	79.9	중국산은 신선 및 건조(세율 50%)
파	27(5.6)	29.9**(10)	97.3	100.0	건조파(세율 30%) 형태
생강	3(1.1)	11.4(6.5)	99.1	98.8	신선과 건조(세율 377.3%). 가격축소 의혹
배추	5(2.8)	114.1*** (38.4)	99.3	99.0	절임(세율 27%) 및 김치(20%) 형태
양배추	2(0.4)	11.7**(1.9)	96.5	95.7	건조(세율 54%) 및 홍작시 신선(27%)
상추	0.1(0.1)	1.2(1.0)	0	28.2	양상추 및 신선냉장(세율 45%)
시금치	-(-)	0.6(0.3)	0	97.5	냉동시금치(세율 27%)
무	11(0.7)	18**(1.4)	99.9	99.4	건조, 무말랭이(세율 30%)
당근	15(2.8)	83.2**(23.5)	62.7	98.0	신선냉장 및 건조(세율 30%)
낙화생유	18(16.9)	34.3(24.3)	94.1	96.8	조제저장처리(세율 63.9%)
참깨	54(45.1)	79(81)	11.1	34.9	TRQ 물량(세율 40%), 가격차 3~4배
들깨	12(6.1)	22.9(11.8)	100.0	100.0	가격차 2배
인삼	-(0.7)	0.2(5.7)	93.3	95.0	백삼정(세율 20%)과 홍삼(쿼터세율 20%)
오이	4(4)	18(8.5)	14.8	63.5	중국산은 일시저장(세율 30%) 증가
토마토	21(17)	39(29)	17.6	38.4	페이스트(세율 5%) 증가 추세
딸기	0.6(0.9)	4.3(5.2)	68.9	83.3	냉동(세율 30%) 및 조제저장 증가
사과	0.3(0.3)	2.5(2.3)	71.4	75.2	주스(세율 45%) 및 혼합주스(세율 54%)
감귤 (조제저장)	0.6(0.8)	2.9(2.1)	35.9	93.8	조제저장(세율 45%)은 중국산, 신선과일 (주로 오렌지)은 미국산
감(건조)	0.1(0.1)	5.8(6.1)	100.0	100.0	건조감(세율 50%) 증가
복숭아 (통조림)	5(3.7)	5.9(5.4)	47.8	15.5	통조림(세율 50%) 증가

주: * 건조고추 기준 신선 또는 냉동고추 환산비율은 정진욱 외(2003) 참고.

** 신선채소 기준 신선채소 환산비율은 정진욱 외(2003) 참고

*** 절임배추 기준.

자료: 정진욱 외(2003), 농림부-농림축수산물수출입통계시스템(<http://www.maf.go.kr/user.tdf?a>).

땅콩과 참깨도 세율 40% 수준의 시장접근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에 비해 국내산 가격이 4~5배 높아 230~630%인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급증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현재 중국산 시장점유율은 땅콩이 96.8%, 참깨 34.9%로 나타났다.

부표 3-8. 주요 품목의 양허관세율(2004년)

양허관세율 범위	품 목	양허관세율
관세유예	쌀	
50% 미만	닭고기	18
	돼지고기	22.5
	과	27
	호박	27
	배추	27
	오이	27
	쇠고기	40
	느타리버섯	40.5
	수박	45
	사과	45
	복숭아	45
	상추	45
	배	45
	무	45
	딸기	45
	단감	45
	포도	45
	토마토	45
50~100% 미만	연초	54
100~200% 미만	양파	135
	감귤	144
	탈지·전지분유	176
200~300% 미만	인삼	222.8
	천연꿀	243
	고추	270
	감자	304
300% 이상	마늘	360
	고구마	385
	콩	487
	참깨	630

이와 같이 현행 수입형태와 중국산 수입비중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지역 경제 통합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쌀과 팥 등 곡물류와 대두, 참깨, 땅콩 등 유지종자,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배추와 무, 당근 등 채소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 육류 등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는 동식물 검역상 규제가 지속되는 한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수입증가 예상품목에서 제외하였다.

이상 2단계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민감품목은 총 27개 품목으로 [부표 3-9]와 같다.

부표 3-9. 교역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5)	쌀, 옥수수, 소맥, 대두, 팥
특용작물(5)	땅콩, 참깨, 낙화생유, 들깨, 인삼
채소(13)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당근,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과일(4)	사과, 감귤, 감, 복숭아

다. 3단계: 지역 파급영향

한·중·일 FTA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배면적(사육두수)과 재배(사육)농가 수, 지역집중도 등의 기준을 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품목별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국내농산물 생산 감소로 지역이 입을 피해 정도를 감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품목별 지역집중도는 [부표 3-11]과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우리 농산물의 민감품목을 설정하면 24개 품목이 된다.

부표 3-10. 지역집중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민감품목

구 분	품 목
식량작물(4)	쌀, 감자, 콩, 고구마
특용작물(2)	참깨, 인삼
채소(10)	배추, 상추, 무,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파
과일(8)	참외, 감귤, 포도, 복숭아, 수박, 배, 사과, 단감

부표 3-11. 품목별 지역집중도(2000년)

순위	품목	시·군별 재배면적에서 각 품목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CV)
1	감귤	0.009	0.075	800.75
2	참외	0.004	0.030	738.06
3	인삼	0.006	0.021	365.69
4	오이	0.007	0.024	352.86
5	상추	0.021	0.072	335.01
6	포도	0.006	0.018	307.91
7	복숭아	0.008	0.025	300.65
8	수박	0.007	0.022	295.82
9	배	0.017	0.049	294.17
10	딸기	0.003	0.007	280.74
11	사과	0.023	0.058	249.49
12	단감	0.017	0.042	242.18
13	파	0.015	0.036	241.23
14	양파	0.015	0.034	235.69
15	마늘	0.017	0.035	210.88
16	토마토	0.003	0.006	205.20
17	고구마	0.010	0.021	202.26
18	감자	0.016	0.032	200.81
19	무	0.017	0.016	95.49
20	콩	0.035	0.032	90.22
21	참깨	0.015	0.014	89.02
22	고추	0.049	0.042	84.86
23	배추	0.023	0.019	83.75
24	미곡	0.537	0.220	41.05

주: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표준편차/평균×100으로 정의되며 각 관측치가 평균 주위에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변이계수가 클수록 지역집중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료: 농업총조사(2000)

따라서 이들 3단계에서 제시되는 기준에 적용되는 농산물은 총 43개이며, 이 중 미곡을 초민감품목, 기타 세 개의 기준 모두에 속하는 품목을 고민감품목, 두 개의 기준에 속하는 품목을 민감품목, 한 개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저민감품목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민감도에 따라 민감품목을 구분하면 [부표 3-12]와 같다. 이들 민감품목 중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동식물검역에 따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저민감품목을 제외한 22개 품목이며, 특히 고민감품목은 일차적으로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 감축을 예외하거나 또는 최소 감축을 하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표 3-12. 민감품목 분류

분 류	적용 예	품 목
초민감품목 (1)	관세철폐 예외	미곡
고민감품목 (8)	TRQ 제공 조건에서 관세감축 예외 또는 최소감축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콩, 참깨
민감품목 (13)	관세철폐 기간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후 감축	인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토마토, 딸기, 오이, 감자, 땅콩, 상추, 옥수수
저민감품목 (17)	중기적 관세 철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팔, 낙화생유, 파, 고구마, 수박, 소맥, 시금치, 양배추,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들깨, 생강

부표 3-13. 주요 품목별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

(단위: %)

품 목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
콩	1,244.0
참깨	238.2
쇠고기	65.0
감자	50.7
고구마	27.5
우유	25.5
닭고기	17.3
건고추	13.7
감귤	12.7
돼지고기	12.3
토마토	11.7
마늘	7.6
파	4.2
인삼	3.4
오이	1.8
양파	1.7
포도	1.5

주: 수입량 비중은 2000~03년 기준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이며, 사료용 수입량도 포함.

자료: 『농림통계연보』(2004); 농림부,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농수산물유통공사.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³³⁾

1. 서론

본 장의 목적은 NAFTA하에서의 회원국간 농산물 무역량 변화와 농산물 그룹별 쌍방 무역패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있을 한국의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약 10년 기간 동안의 회원국간 농산물 무역패턴의 변화는 앞으로 있을 한·중·일 FTA 협상으로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무역특화 전개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열위 분야에서의 생산감소 및 수입증가가 예상보다 작았으며, 시장접근 기회확대로 비교우위는 물론 비교열위 농업품목에서의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였다.

본 장의 구성을 보면 2절에서 먼저 NAFTA의 역사와 이에 따른 각국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본다. 3절에서는 NAFTA하에서의 회원국간 농산물 무역변동과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무역 변동을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FTA가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NAFTA하에서 농산물 그룹별 쌍방 무역패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지역통합이 회원국간 산업내 무역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농산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절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3) 조규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수정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이 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따라 주로 미국의 입장에서 정리되었다. 그러나 미국 USDA(2002)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NAFTA하에서의 농산물 무역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미국 중심의 분석이 NAFTA하에서의 무역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무역정책의 변화

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NAFTA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무역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의 노력의 결실이다. NAFTA는 기본적으로 3개의 서로 다른 FTA(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협정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FTA로 1989년 1월 발효되었으며, 미국·멕시코, 캐나다·멕시코 FTA는 1994년 1월 시작되어 진정한 의미의 NAFTA는 현재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캐나다간 CUSFTA의 세 가지 제도가 후일 NAFTA에 그대로 준용됨으로써 NAFTA의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첫째, CUSFTA는 1998년 1월까지 9년의 기간 동안 농산물에 대한 두 국가간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였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규범(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을 만들었다. 셋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와 반덤핑(anti-dumping) 등의 무역분쟁 조정을 위한 쌍방 분쟁패널을 구축하였다.

CUSFTA하에서도 무역자유화의 몇 가지 예외품목이 존재한다. 미국의 캐나다 수입 낙농품(dairy product), 땅콩과 땅콩버터, 면화, 그리고 설탕 및 관련식품 등이다. 역방향에서도 예외품목이 존재하였다. 캐나다의 미국 수입 낙농품, 가금류(poultry), 달걀 및 마가린 등은 초기에는 쿼터할당을 통해, 이후에는 URAA 규정에 근거한 농산물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었다. 또한 과실류와 채소류에 대해서도 임시적인 보호가 인정되었는데 이러한 제한은 2008년 1월 철폐될 계획이다.

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발효된 NAFTA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점진적 철폐를 합의하였다. 대부분 품목의 경우 관세가 즉시철폐되었으나, 이외 품목의 경우 4년, 9년, 그리고 14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대멕시코 배 수출은 4년의 과도기간이 부여되었다. 멕시코는 NAFTA 이전에 미국산 배에 대해 20% 관세율을 부과하였으나, 1994년 NAFTA 협정과 함께 관세를 5% 삭감하였으며, 1995년 1월 다시 2.5%를 삭감하였고, 1996년 및 1997년 1월에 각각 7.5% 그리고 3.75%까지 삭감하였다. 관세의 완전삭감은 1998년 1월 이루어졌다. 4년의 과도기간이 주어진 것이다.

NAFTA 이전 미국의 대멕시코 농산물 수출의 약 25%의 경우 면허가 요구되었으나 NAFTA 체결과 함께 즉각적으로 관세 혹은 TRQ로 전환되었다. 밀, 담배, 치즈, 우유(evaporated milk), 그리고 포도 등은 관세화로 전환되어 9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되었고, 옥수수, 마른 콩(dry beans), 가금류, 동물지방(animal fats), 감자, 그리고 달걀 등은 TRQ로 전환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멕시코 수입 낙농품, 땅콩, 면화, 그리고 설탕 및 설탕가공품에 대한 쿼터할당을 TRQ로 전환하였다. TRQ 제도하에서 두 나라는 점진적으로 쿼터량을 늘리는 동시에 쿼터초과(over-quota) 물량에 대한 관세를 과도기간 동안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부분의 TRQ 품목의 경우 쿼터내 물량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국가가 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발동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되며, 쿼터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주어진 관세율과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MFN)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NAFTA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따라 NAFTA 회원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NAFTA 회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NAFTA 합의 관세감축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NAFTA는 회원국들의 보다 과학적이고, 차별 없는, 투명한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을 요구하고 있다. SPS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설립하여 개발, 적용 그리고 규칙강화 등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3. 농산물 무역량 변화: NAFTA내 무역과 NAFTA외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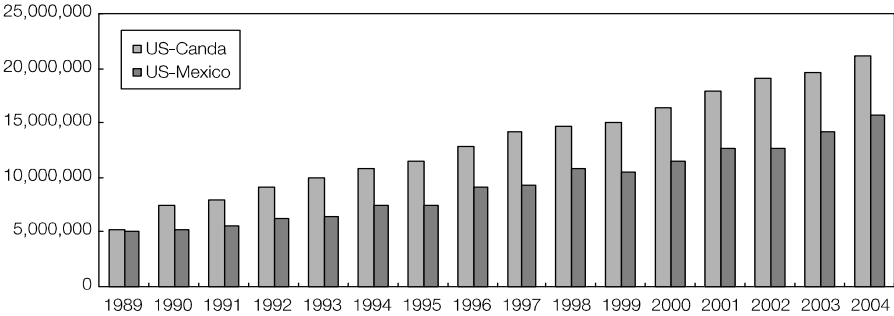
가. 무역량 변화

FTA의 제1효과는 관세 또는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로 체결국간 무역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회원국간 교역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교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라고 부른다(Krueger 1999). NAFTA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부그림 4-1]은 1989~2004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간 농산물 무역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9년 각각 약 50억 달러 정도의 무역실적을 보였던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농산물 무역은 협정 이후 상승추세를 지속하여 2004년에는 각각 250억 달러 및 1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무역량을 기록하였다. 1989년과 비교할 때 각각 5배 및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캐나다의 경우 CUSFTA 체결 첫해인 1989년부터 1990년 기간 동안 무역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과, 미국-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다음해인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부그림 4-1. 절대무역량 변동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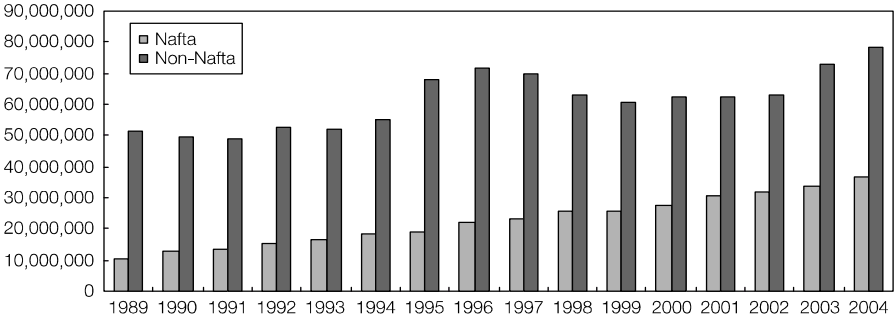


나. 무역점유율 비교³⁴⁾

회원국간 무역량 증가의 원인이 FTA 때문인지 또는 WTO/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의한 결과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원국간 무역과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무역량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부그림 4-2]는 미국과 NAFTA 회원국간, 그리고 미국과 비회원국 간의 농산물 무역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부그림 4-2. 미국의 무역액 상대적 비교(NAFTA 회원국과 비회원국)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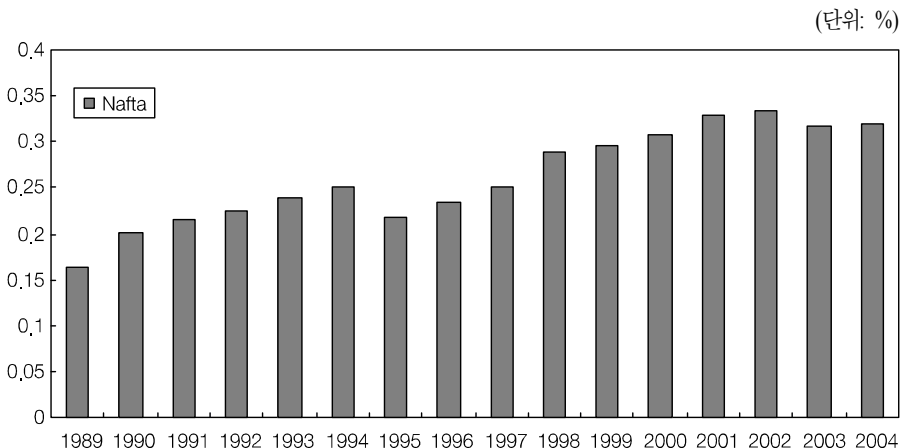


34) 3절과 4절에서 이용된 자료는 미국 USDA의 FATUS 데이터베이스다(<http://www.ers.usda.gov/Data/FATUS/>).

[부그림 4-2]에 의하면 미국과 비회원국과의 농산물 무역은 1989~93년 기간에는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1994~96년 기간 중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99년 감소하고,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DDA 협상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조적으로 미국의 NAFTA 회원국(캐나다와 멕시코)과의 농산물 무역규모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비회원국 간의 농산물 무역이 1989년에 약 500억 달러에서 2004년에 약 790억 달러로 약 1.6배 증가한데 비해, 미국과 NAFTA 회원국 간의 무역량은 1989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04년 약 37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부그림 4-3]은 미국의 총 농산물무역량 중 캐나다와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1989년 약 16%였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 약 33%까지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NAFTA의 경우 FTA로 회원국간 절대무역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회원국간 교역의 더 빠른 증가로 상대적 비중 또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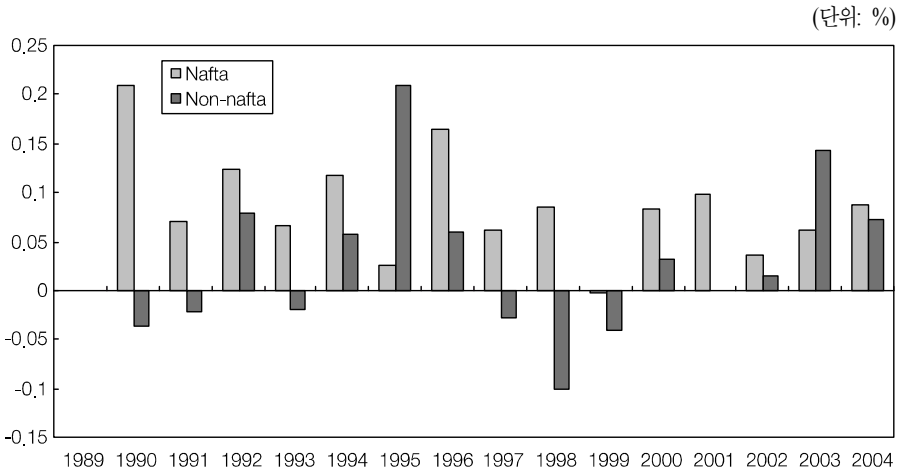
부그림 4-3. 미국과 NAFTA 회원국 간 무역점유율 변화



다. 무역성장률의 비교

[부그림 4-4]는 미국과 NAFTA 회원국, 그리고 미국과 비회원국 간의 1990~2004년 기간 무역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NAFTA 회원국 간의 무역성장률은 비회원국과의 성장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NAFTA 회원국 간의 무역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미국과 비회원국 간의 무역성장률은 그 변동 폭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 미국-NAFTA의 농산물 무역성장률이 20% 이상, 1996년에는 약 16%의 성장률을 보여 CUSFTA와 NAFTA 초기에 회원국간 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외적으로 1995년 비회원국과의 무역성장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4년 있었던 멕시코 페소화의 하락에 의한 멕시코 경제 붕괴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그림 4-4. 무역성장률 비교



4. 무역패턴 변화: 특화전개에 따른 품목별 변화

앞 절의 무역증대 효과와 함께 FTA가 초래하는 결과는 특화전개에 따른 무역 패턴의 변화일 것이다. 본 절에서는 NAFTA 회원국간 농산물 무역패턴 변화를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NAFTA 이후 회원국간 산업내 무역의 변화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가. 가축류(Animals & Products)

1) 미국·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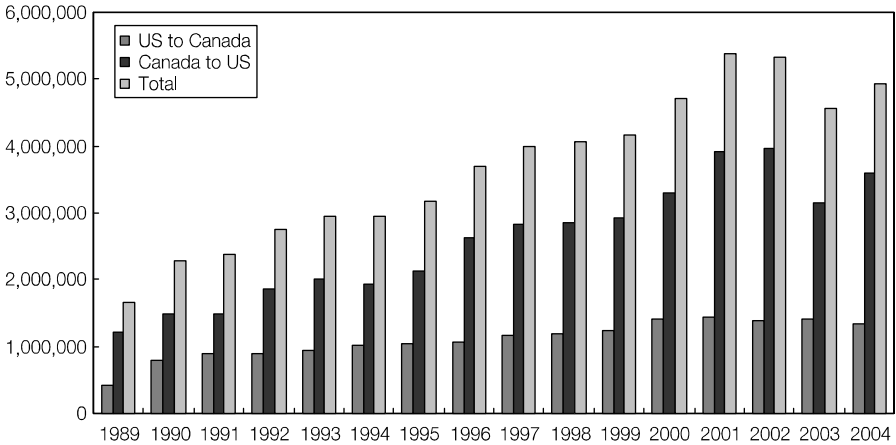
NAFTA 이후 미국·캐나다간 가축류 교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국가간 무역량은 1989년 약 16억 달러에서 2004년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1989년 약 4억 달러에서 2004년 약 1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은 CUSFTA 초기 12억 달러에서 2004년 36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하였다.

NAFTA 발효 이전 두 국가간에 상당 수준의 무역이 존재하였으며,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더욱 높은 수출수준을 보여 이 품목에 대한 약간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교우위는 기본적으로 NAFTA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역량 증가 결과와 함께 무역패턴의 변화, 즉 특화전개의 결과가 발생했을까? 즉 상대적 비교열위인 미국의 대캐나다 가축류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대적 비교우위 위치에 있는 캐나다의 대미 가축류 수출이 급증했을까? FTA로 무역패턴이 변화했다면 양국간 교역규모 대비 미국의 산업내 무역 점유율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부그림 4-5.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가축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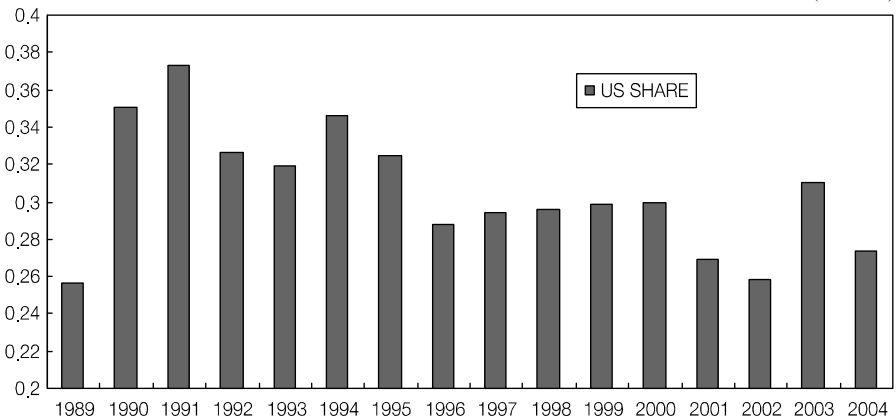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부그림 4-6]은 미국의 무역점유율(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이 양국간 가축류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CUSFTA 초기 미국 무역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관세감축 폭이 미국보다 컸기 때문이

부그림 4-6.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가축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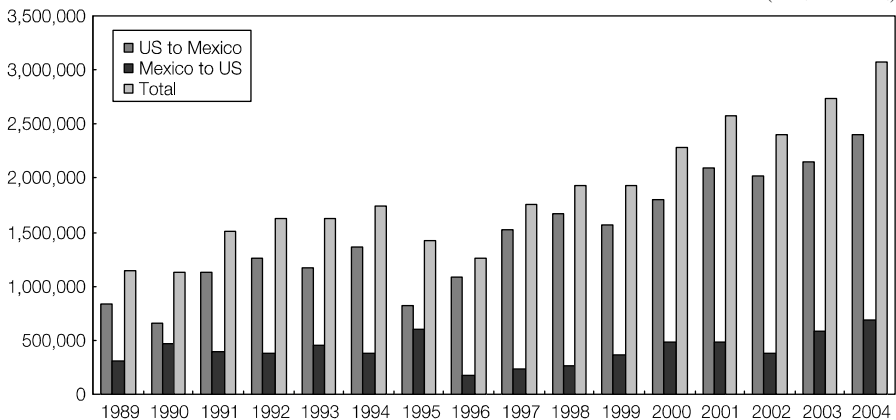
다. 이후 양국간 무역자유화 폭이 커지면서 미국의 무역점유율 상승세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1991년 약 37%까지 증가했던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4년에는 약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국간 특화가 진전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2) 미국-멕시코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도 NAFTA 이후 가축류 교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5년 멕시코의 경제위기로 두 나라간 무역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NAFTA에 힘입어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 2004년 약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부그림 4-7.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가축류)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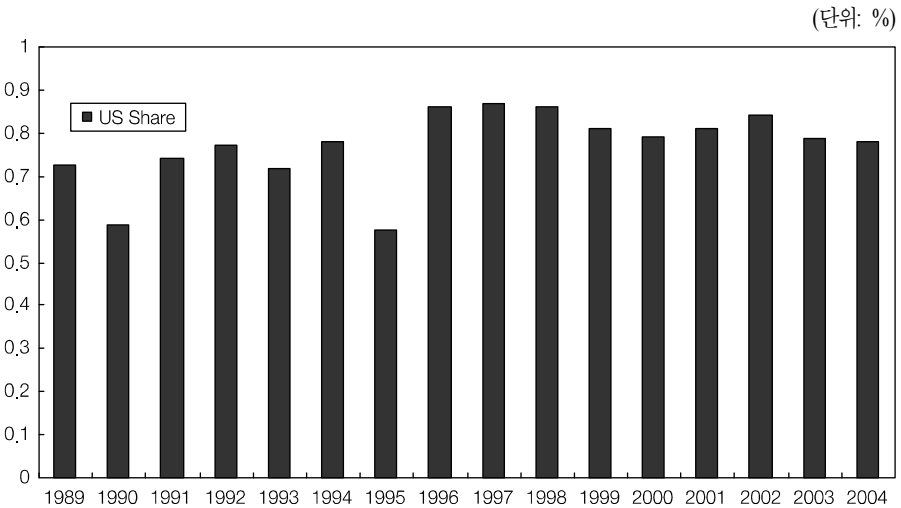


미국·멕시코간 산업내 무역구조는 미국·캐나다의 경우와 차별성을 보인다. [부그림 4-8]에서 알 수 있듯이, NAFTA 이행 이전 기간(1989~94년)에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미국이 가축과 동물류에서 멕시코에 비해 상당히 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FTA 이후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화가 전개되었다고, 즉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멕시코의 생산기반은 크게 위축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그림 4-8]을 보면 FTA 이후 양국간 무역패턴에 명백한 추세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무역점유율은 1995년 멕시코 경제의 붕괴로 크게 감소한 것 이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4년 약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FTA 체결 이전 농산물 무역점유율(비교우위)이 큰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비교열위 국가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완전특화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한·중·일 FTA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결국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이 생산된 지역의 특성을 갖는다는, 즉 소비자는 수입재와 국내재를 어느 정도 이질적인 재화로 인식한다는 아밍턴 가정이 특화전개이론보다 현실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그림 4-8.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가축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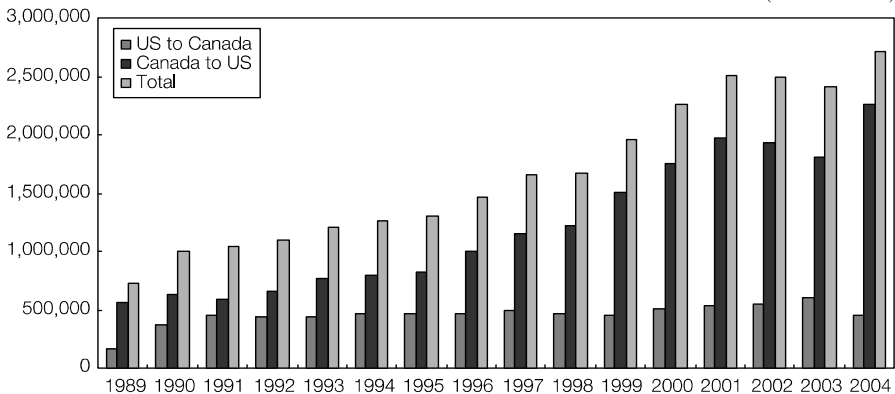
나. 육류(Red Meat & Products)

1) 미국 · 캐나다

NAFTA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육류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량은 1989년 약 7억 달러에서 2004년 약 2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CUSFTA 초기 급증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급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캐나다의 대미 육류 수출은 1989년 약 6억 달러에서 2004년 2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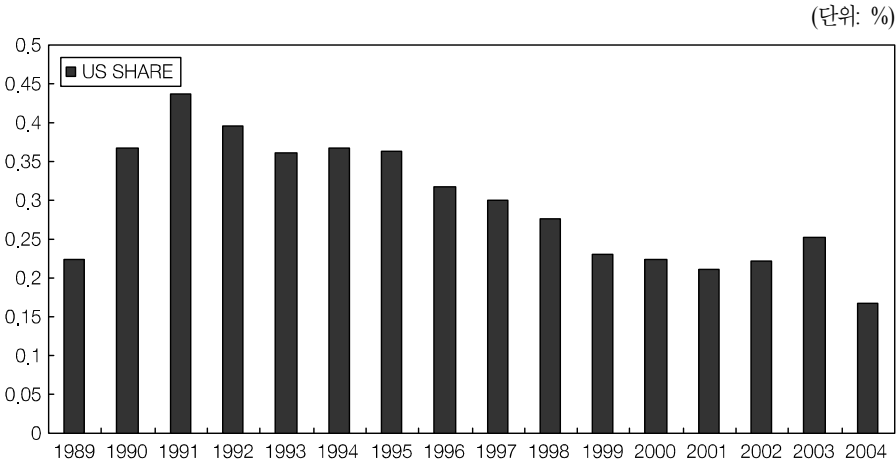
부그림 4-9.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육류)

(단위: 천 달러)



NAFTA 이전 캐나다는 육류 품목에서 미국보다 높은 무역점유율을, 즉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우위는 NAFTA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비교열위의 미국 육류가 특화전개로 생산기반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NAFTA 이행 초기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급상승한 후 199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NAFTA 이전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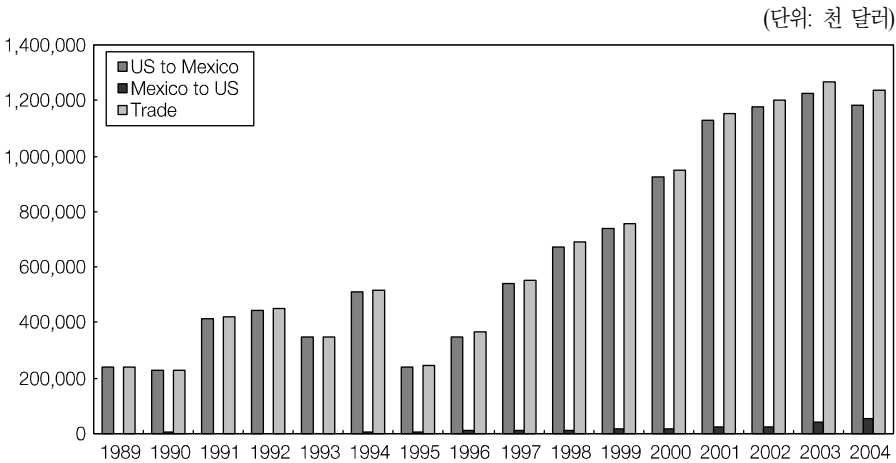
부그림 4-10.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육류)



2) 미국·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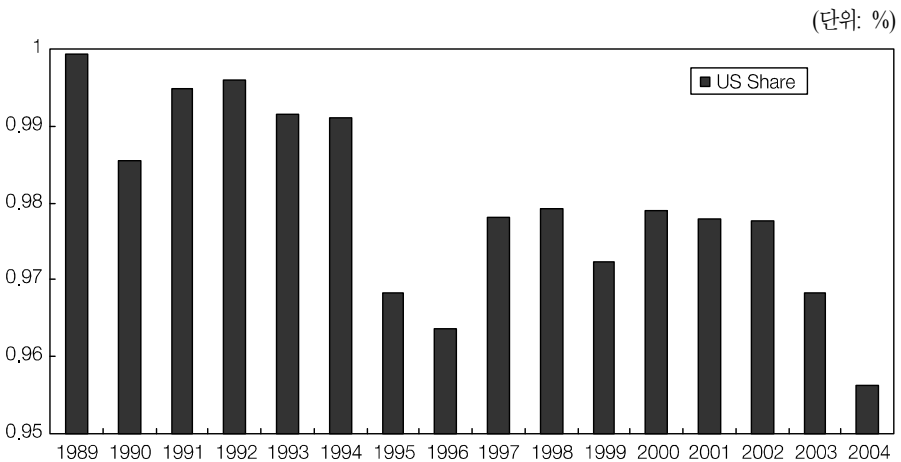
미국과 멕시코 간 육류 교역도 NAFTA 이후 급상승하였다. 1989년 약 2억 달러였던 교역규모가 1995년 이후 급증하여 2004년 약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부그림 4-11.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육류)



기본적으로 육류의 경우 미국이 멕시코에 비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 기간 중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비교우위를 근간으로 FTA 이후 특화가 전개되어, 즉 미국의 일방적 수출 증가로 멕시코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국의 무역점유율은 NAFTA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그림 4-12).

부그림 4-12.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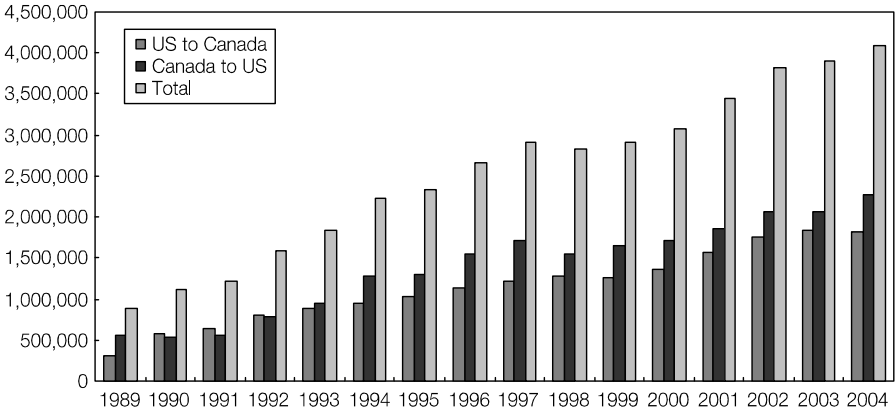
다. 곡물류(Grains and Feeds)

1) 미국-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중요한 곡물 수출국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NAFTA 이후 양국간 곡물 무역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9년 약 8억 달러였던 무역량이 2004년 40억 달러 정도로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역시 무역량증대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부그림 4-13).

부그림 4-13.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곡물류)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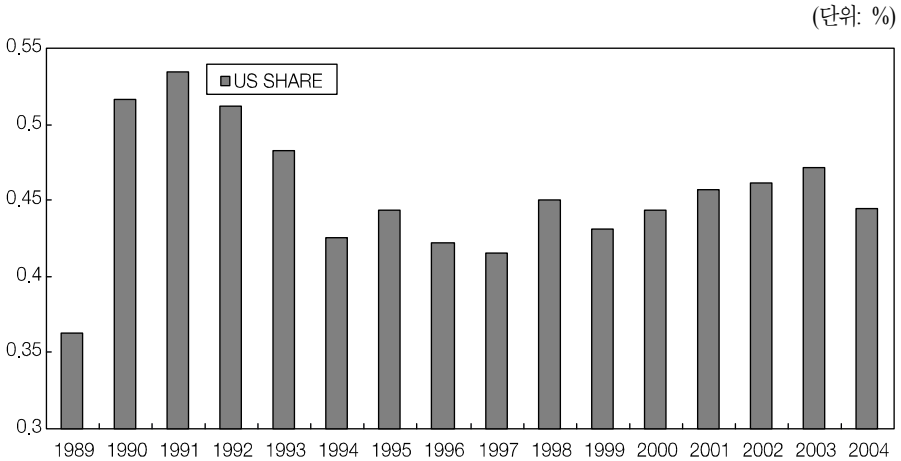


그러나 앞서 살펴본 농업품목 그룹과 달리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NAFTA 이행 초기인 1991년 미국의 점유율이 60%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1997년 이후 약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곡물류의 경우 미국의 국내보조가 집중되고 있어 무역왜곡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아시아의 환율 충격에 의한 곡물수요 감소로 미국의 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미국 의회는 긴급조치로 긴급시장손실보조(emergency market loss assistance: MLA)를 제정하고 1998년 약 29억 달러, 1999~2001년에는 연 평균 56.5억 달러 정도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2년 농업법 개정에서는 MLA의 제도화된 형태인 경기조정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제도를 도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밀 위원회(Canadian Wheat Board)가 주로 미국에 수출되는 곡물에 대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 곡물 무역의 경우 NAFTA 이후에도 무역왜곡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내보조 문제와 캐나다의 수출국영기업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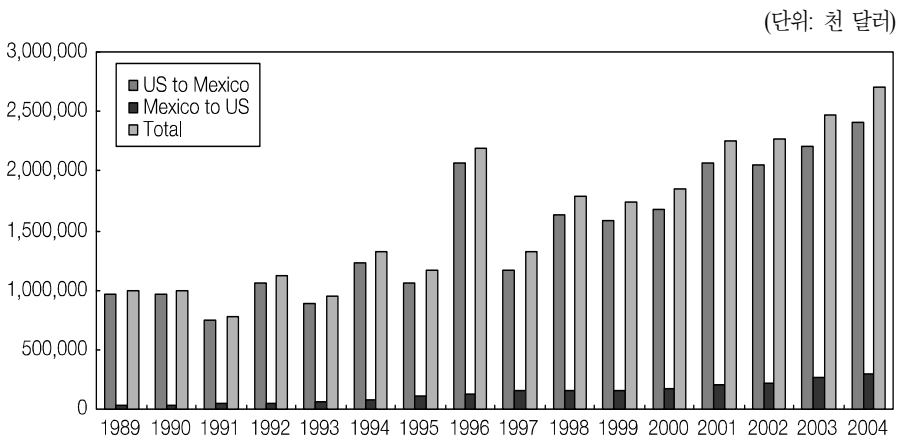
부그림 4-14.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곡물류)



2) 미국 ·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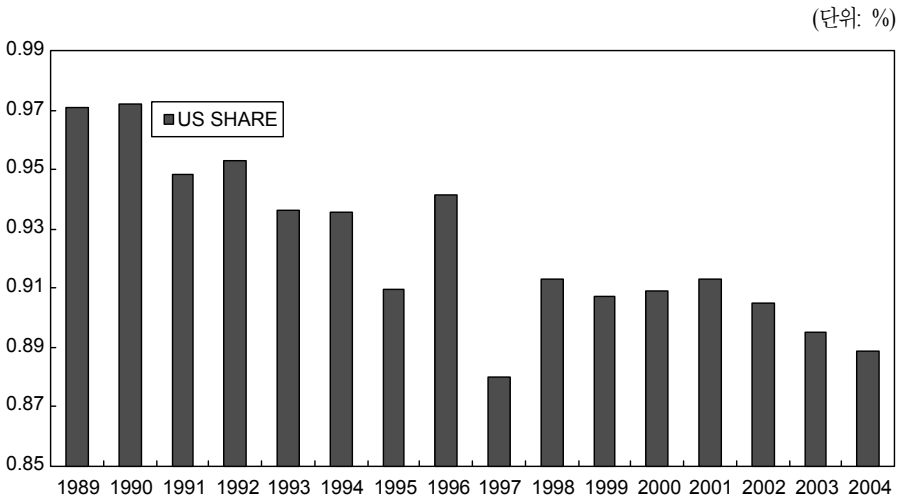
NAFTA 이후 미국-멕시코간 곡물 무역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약 10억 달러였던 무역량이 2004년 28억 달러 정도로 증가하였다.

부그림 4-15.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곡물류)



양국간 곡물 교역도 육류의 경우와 같이 미국이 멕시코에 대하여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화가 전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기보다는 무역량이 증가하는 결과만 보여준다. 멕시코 곡물 생산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육류의 경우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1989년 약 98%였던 무역점유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90% 이하로 하락하였다(부그림 4-16).

부그림 4-16.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곡물류)



라. 채소류(Vegetables & Preps)

1) 미국·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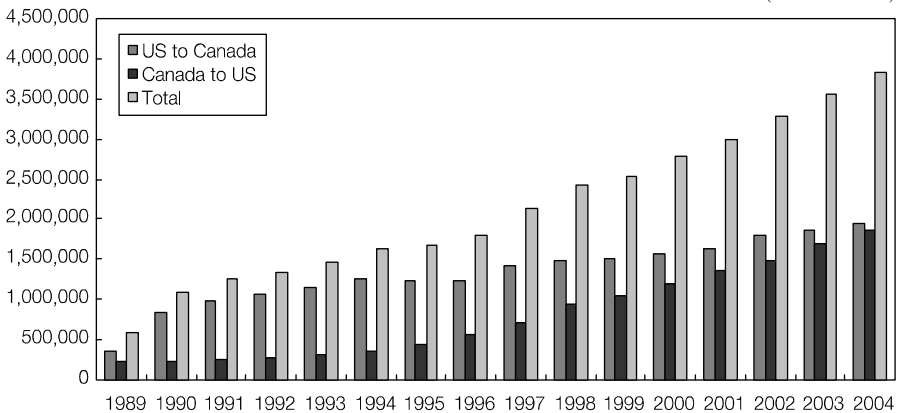
다른 품목그룹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의 채소류 무역은 CUSFTA와 NAFTA 체결 이후 무역증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1989년 약 5억 달러였던 채

소류 무역량이 2004년 35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 약 7배 증가하였다(부그림 4-17).

채소류의 경우 CUSFTA 체결 이전 미국이 무역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즉 캐나다가 경쟁열위에 있었으나, 미국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특화전개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약 80%였던 무역점유율이 점차로 낮아져 2004년 6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부그림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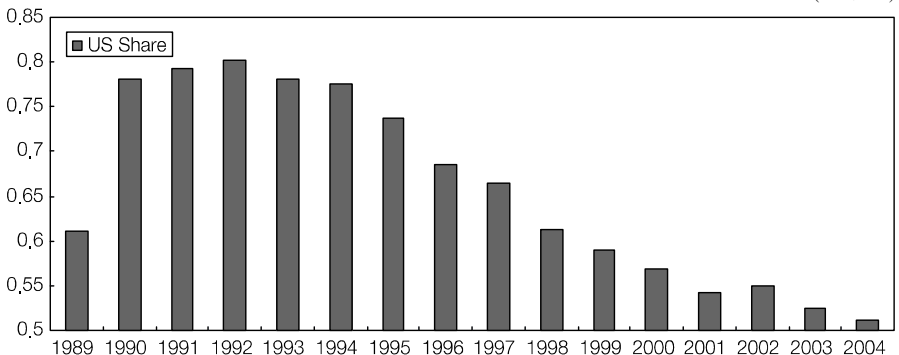
부그림 4-17.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채소류)

(단위: 천 달러)



부그림 4-18.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채소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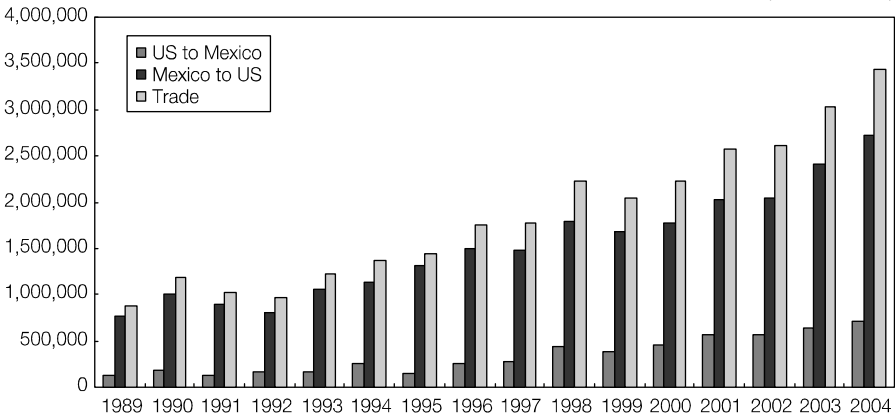


2) 미국·멕시코

NAFTA 이전 멕시코는 채소류의 미국시장 주요 공급국가로, 멕시코가 미국에 비해 높은 무역점유율을 보이는 비교우위 품목군이었다. NAFTA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무역량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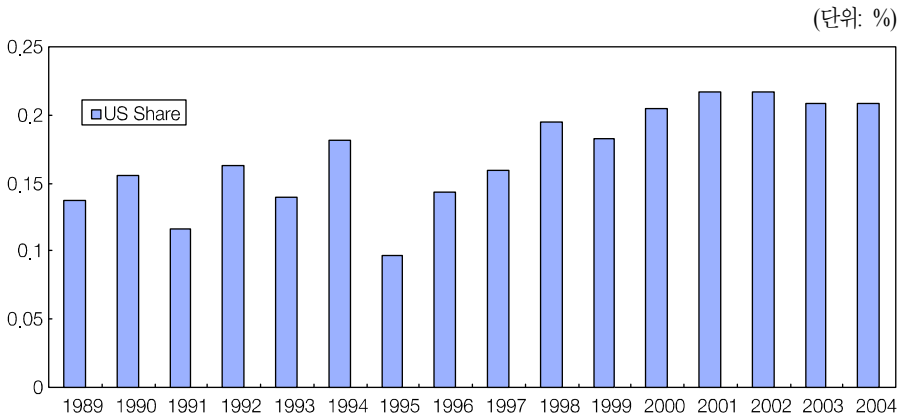
부그림 4-19.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채소류)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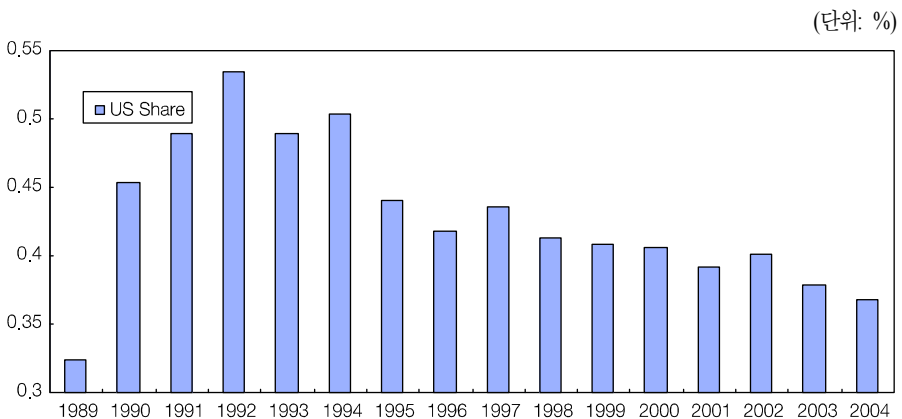
역시 멕시코의 수출이 급증하는 등 무역패턴의 변화, 즉 무역특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FTA 이후 약간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인은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채소류의 시장점유율 하락에 기인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USDA (2002)의 의하면, 미국시장에서의 캐나다 채소류 점유율은 상승 추세를 보여, 1990년 10%에서 2000년 2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무역 점유율 상승은 NAFTA 이후 멕시코의 대캐나다 미국시장 경쟁력 약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그림 4-20.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채소류)



미국시장에서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쟁관계에 관계없이 시장규모에 따른 무역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과 NAFTA 회원국(캐나다와 멕시코의 합) 간의 무역점유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역시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의 점유율이 CUSFTA 이행 초기에만 증가할 뿐, 1992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그림 4-21. 미국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채소류)



마. 과일류(Fruits and Pr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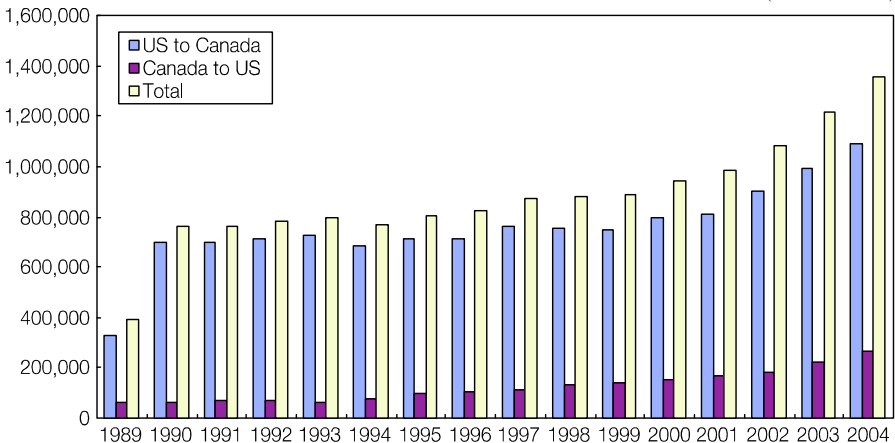
1) 미국·캐나다

미국은 FTA 이전 과일류에 있어서 대캐나다 비교우위를 보였다. CUSFTA 이행 초기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품목군과 달리 급속한 무역량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1990~96년 기간 중 무역량 변동이 없었으나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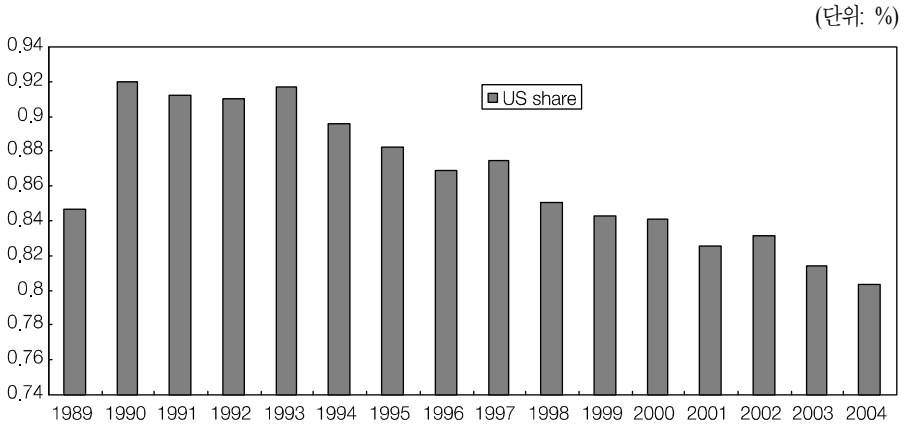
미국의 과일류 무역점유율은 다른 품목군과 같이 CUSFTA 이행 초기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후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1990년 92%에 달하던 미국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4년 약 80%를 기록하고 있다.

부그림 4-22. 미국-캐나다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과일류)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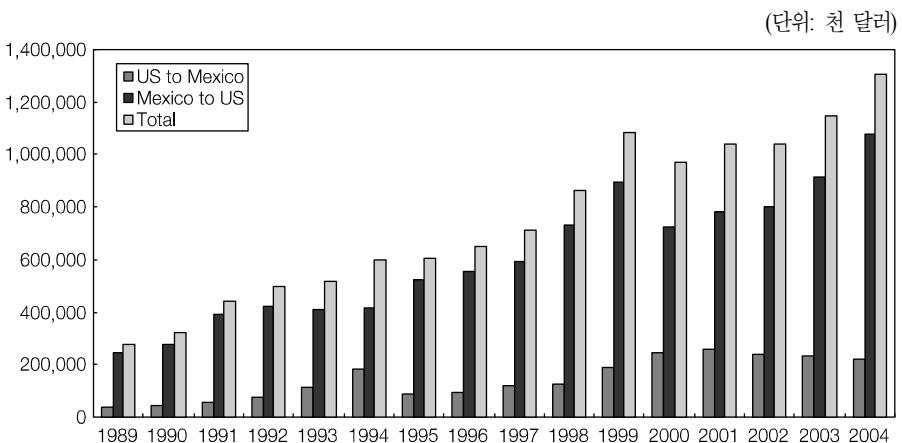
부그림 4-23.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점유율 변화(과일류)



2) 미국 · 멕시코

NAFTA 이후 양국간 과일류 무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약 2억 달러 규모이던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약 11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부그림 4-24.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무역량 변화(과일류)



미국의 과일류 무역점유율은 특별한 추세 없이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94년 기간 중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04년 기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은 1994~95년도의 멕시코 폐소화 폭락, 미국 사과에 대한 멕시코의 반덤핑 의무 부과, 식물위생(phytosanitary)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역 문제 등 1990년 중반에 집중된 FTA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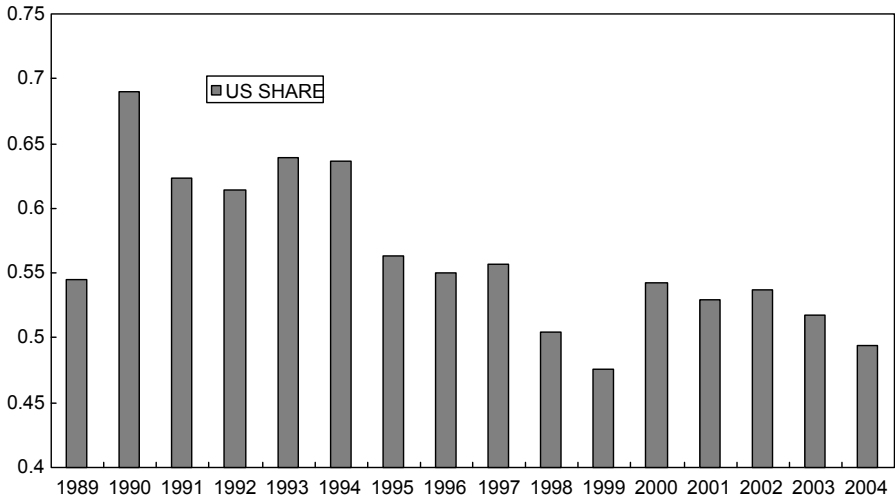
부그림 4-25.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과일류)



시장규모에 따른 무역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역시 미국과 NAFTA 회원국(캐나다와 멕시코의 합) 간 무역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품목군에서의 변화와 비슷한 현상, 즉 초기에 증가하다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부그림 4-26. 미국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무역점유율 변화(과일류)

(단위: %)



부 표

부표-1. 한·중·일 농산물 RCA 지수(1997~2002년)

품 목	한 국		중 국		일 본	
	수출 RCA	수입 RCA	수출 RCA	수입 RCA	수출 RCA	수입 RCA
쌀	0.02	0	0.85	0.01	0.02	0.42
밀	0	1.83	0.04	0.66	0	0.83
옥수수	0	5.07	2.74	1.82	0	2.44
대두	0.01	1.81	0.24	6.01	0	1.55
사과	0.48	0	1.16	1.05	0.89	0
배	4.4	0	1.41	0.14	3.01	0.01
복숭아	0.05	0	0.05	1.12	0.13	0
포도	0.02	0.2	0.01	0.41	0.02	0.09
오렌지	0.12	1.27	0.03	0.32	0	0.65
참깨	0.13	5.02	4.53	1.21	0.19	2.71
유채	0	0	0	5.09	0.01	3.67
마늘	0.27	0.65	10.06	0.01	0.01	0.49
생강	0.15	0.82	17.42	0.06	0.35	6.05
양파	0.21	0.13	1.29	0.22	0.12	0.78
파프리카	2.82	0	0.03	0.04	0	0.43
고추, 피망	3.3	1.59	6.16	0.11	0.34	0.86
쇠고기	0.02	4.13	0.01	0.14	0.12	3.03
돼지고기	4.49	1.07	0.6	0.18	0.01	3.67
닭고기	0.04	0.45	2.61	1.07	0.1	1.77

주: 1) 수출입 RCA 지수는 연도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평균치를 사용함.

2) RCAX와 RCAM 모두 1보다 큰 품목은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임.

자료: FAO, FAOSTAT(www.fao.org).

부표-2. 한·중·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 결과 비교

연구자	GDP 변화(%)			역내 무역수지 변화(억 달러)			비고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서장문 (2005)	2.9	3.83	0.42	-3.7	-2.3	-6.8	CGE 모형, 전 산업 대상
어명근 등 (2004)	-14.4 ~ -38.9** (농업소득)			-15.8 (농업부문)			PBT 개념으로 계측
정인교 등 (2003)	1.29 ~ 4.73	0.03 ~ 1.05	0.03 ~ 0.16				CGE 모형
정인교 (2004)*				-47.7 ~ -121.6	57.1 ~ -32.7	154.3 ~ -11.2	CGE 모형
이홍식 등 (2004)	3.10 ~ 5.15	1.71 ~ 3.08	0.75 ~ 1.43				중력모형 (무역개방도)
가병생 등 (2005)	0.69	0.27	0.05	-17.0	-12.7	-40.5	CGE 모형

주: * 3국간 수출증가액(79쪽)으로 무역수지 변화액을 산출하였음.

** 농업부문 시뮬레이션(KREI-ASMO)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임.

부표-3. 중국산 수입금지 식물

수입금지 식물	주요 관심금지병해충
벼·왕겨·벼짚과 그 가공품 (껍질을 벗긴 쌀은 제외)	- 벼줄기선충 [<i>Ditylenchus angustus</i>] - 벼이삭미이라병 [<i>Balansia oryzae-sativae</i>]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식물의 풋콩류 (코코넛·파인애플 및 푸른 바나나 제외)	- 지중해과실파리 [<i>Ceratiti capitata</i>] - 꿀과실파리류 [<i>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i>] 등
호두의 열매와 핵자	- 코드란나방 [<i>Cydia pomonella</i>]
고구마속식물, 나팔꽃속식물, 메꽃속식물, 마속식물 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카사바 생식물의 지하부	- 개미바구미 [<i>Cylas formicarius</i>] - 고구마바구미 [<i>Euscepes postfasciatus</i>]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 의 지하부	- 감자암종병 [<i>Synchytrium endobioticum</i>] - 감자갈죽병 [<i>Potato spindle tuber viroid</i>] 등
배나무아과·복숭아속식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과 생과실(복숭아속식물 제외)	- 배화상병 [<i>Erwinia amylovora</i>] - 사과빛자루병 [Apple proliferation <i>Phytoplasma</i>]
감귤류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 제외)	- 감귤그린병 [<i>Citrus huanglongbing</i> (greening) disease] 과 그 분포지역의 매 개충 [<i>Diaphorina citri</i> , <i>Trioza erytreae</i>]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개잎갈나무속식물 의 묘목류·목재류	- 소나무재선충 [<i>Bursaphelenchus xylophilus</i>] 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i>Monochamus</i> <i>alternatus</i> , <i>Monochamus carolinensis</i>] - 소나무종유식병 [<i>Cronartium colesporioides</i>]

자료: 국립식물검역소 자료에서 저자 정리.

부표-4. 중국산 축산물 수입금지 품목

구 분	수입금지 품목
동물	- 우제류동물(반추동물 제외) - 반추동물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 포함)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육가공품 포함)	- 쇠고기 - 돼지고기 - 산양고기, 양고기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타조고기 - 캥거루고기 - 자비우육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우제류 동물의 원피 - 원유 - 소의 정액 - 소의 수정란 - 산양·면양의 정액 - 시슴의 정액 및 시슴 생산물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서 저자 정리.

부표-5. 일본산 수입금지 식물

수입금지 식물	주요 관심금지병해충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식물의 풋콩류 (코코넛·파인애플 및 푸른 바나나 제외) - 자몽, 감귤, 레몬, 유자, 토마토생과실: 규슈와 류큐 열도에 한해 수입금지 - 두리안, 아보카도, 석류, 월귤: 일본 전 지역에서 수입금지	- 지중해과실파리 [<i>Ceratitis capitata</i>] - 꿀과실파리류 [<i>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i>] 등
고구마속식물, 나팔꽃속식물, 매꽃속식물, 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카사바 생식물의 지하부 - 일본 북위 30° 이남의 다이토 제도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 및 오가사와라 제도에 한해 수입금지	- 개미바구미 [<i>Cylas formicarius</i>] - 고구마바구미 [<i>Euscepes postfasciatus</i>]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 홋카이도, 규슈섬에 한해 수입금지	- 감자암종병 [<i>Synchytrium endobioticum</i>] - 감자갈죽병 [<i>Potato spindle tuber viroid</i>] 등
감귤류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 제외) - 오키나와현의 북위 27° 10' 이남의 난세이 제도에 한해 수입금지	- 감귤그린병 [<i>Citrus huanglongbing (greening) disease</i>]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i>Diaphorina citri</i>, <i>Trioza erytreae</i>]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목재류	- 소나무재선충 [<i>Bursaphelenchus xylophilus</i>]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i>Monochamus alternatus</i>, <i>Monochamus carolinensis</i>] - 소나무중유석병 [<i>Cronartium colesporioides</i>]

자료: 국립식물검역소 자료에서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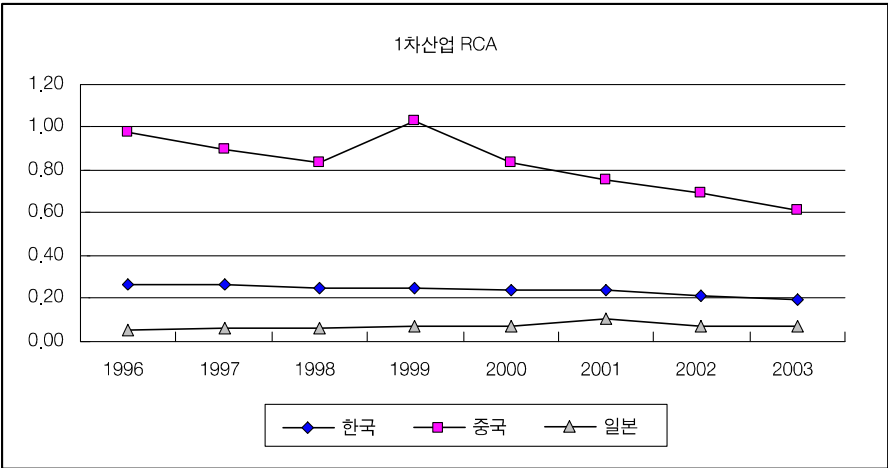
부표-6. 일본산 축산물 수입금지 품목

구 분	수입금지 품목
동물	- 반추동물 -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 포함)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육기공품 포함)	- 쇠고기 - 산양고기, 양고기 - 타조고기 - 캥거루고기 - 자비우육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소의 정액 - 소의 수정란 - 산양·면양의 정액 -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 광우병 관련 품목(반추동물의 뼈·뿔 등,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서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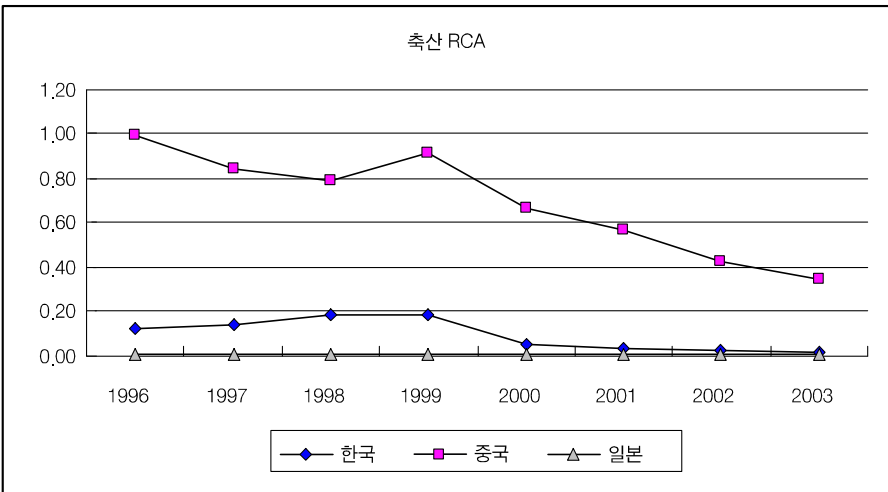
부 그림

부그림-1.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1차산업 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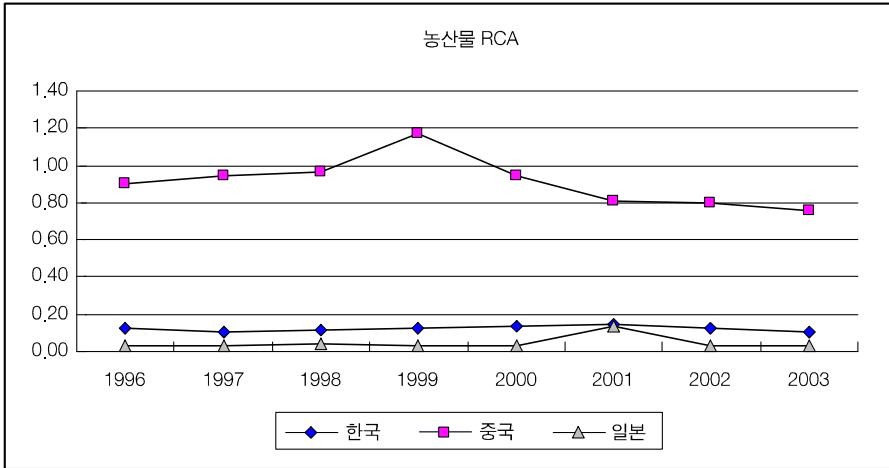
자료: UN COM TRADE.

부그림-2.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축산 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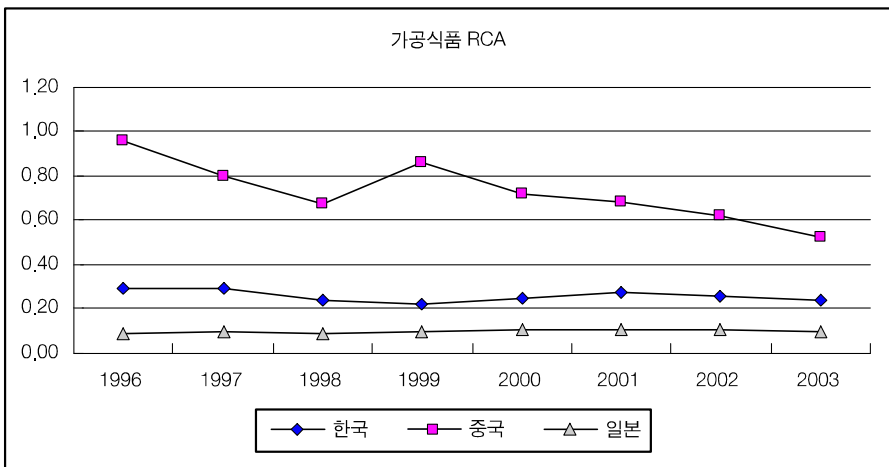
자료: UN COM TRADE.

부그림-3.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농산물 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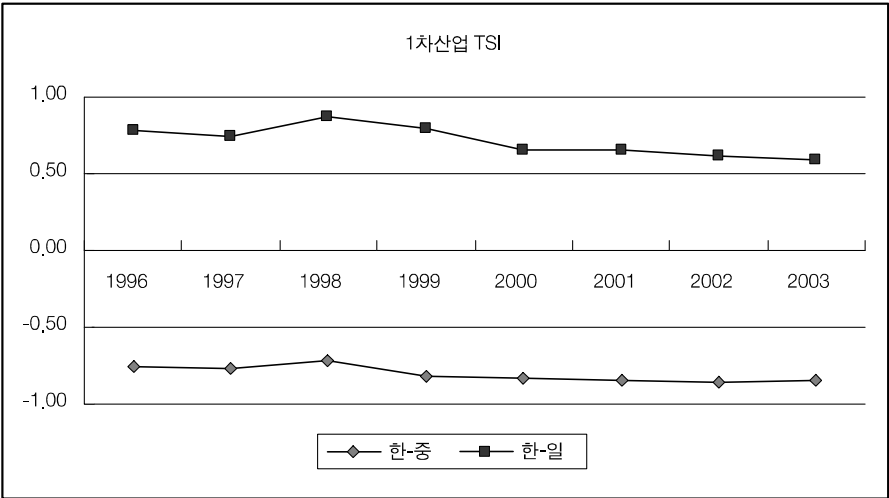
자료: UN COM TRADE

부그림-4.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농업경쟁력 변화(가공식품 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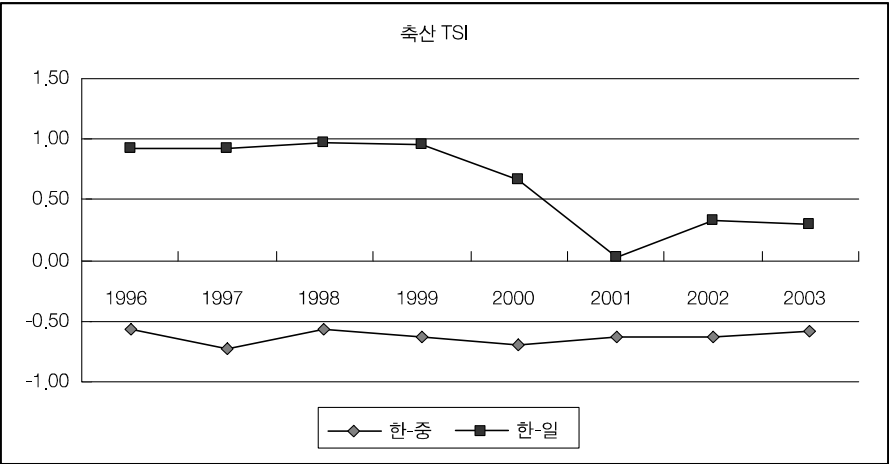
자료: UN COM TRADE

부그림-5.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1차산업 TSI)



자료: UN COM TRADE

부그림-6.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향성 변화(축산 TSI)



자료: UN COM TRADE



Executive Summary

China-Japan-Korea FTA: Effects 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Chang-Soo Lee, Ji-Hyun Park and Yong-Taek Kim

This study is the third-year result of a three-year series of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n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JK FTA):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report analyses the effects of a CJK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neglected in the second-year report, and looks a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cluding polic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o cope with a CJK FTA. The first report analyze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 trade structure between them. The second-year report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an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utiliz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 focusing on the specialization effects of an FTA, thus neglecting feedback effects of the macro-economy.

According to the CGE simulation result, the Korean agriculture sector will be damaged by a CJK FTA in terms of production growth and welfare, but

the analysis says that these reductions will be less than expected because of the trade-increasing effects of an FTA. The productions of grains (excepting rice), crops, vegetables, and fruits will decrease about 47.26 percent, 15.84 percent, and 3.60 percent, respectively, in the zero-tariffication scenario using the medium-run capital accumulation model.

NAFTA's ten-year history can also provide us with indications that agricultural products with comparative disadvantages would not be fully hit by the developments of specialization between FTA partner countries, and that small countries would experience more benefits from FTAs than large countries, due to increased access to large markets.

Based on the CGE simulation results and NAFTA, this report presents seven strategies and/or action plan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in fac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rom a CJK FTA. They are:

- the protection of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griculture-based income,
- strategies to differentiat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from imported ones, emphasizing high-quality, safety, and organic products,
- the expor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into niche markets of partner countries,
- a strategy for investing in China and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ve processes,
-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shares of non-agricultural incomes in farmers' total income, and
- enhancing the innovative roles of farmers and the farmers' association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well as agro-businesses.

KIEP 발간자료목록 (2004 ~ 2005. 12)

■ 정책연구

-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예의 시사점 / 김원호 외
-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 외
-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남영숙 외
-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방호경 외
-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 최낙균
-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윤창인
-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이창수
-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윤미경·윤창인·이상승
-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양두용 외
-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 김홍중 외
-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 정인교 외
-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강문성
-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이홍배 외
-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지만수 외
-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 홍익표 외
-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 안형도·오용협
-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전일수·홍석진
-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이상학
-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이형근
-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윤창인·이재협
-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남삼열 외
-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중·이창수·김군태·강준구·박순찬
-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 05-11 최근 해외자본 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백승관·신관호·전종규
- 05-12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오용협·김은경
- 05-13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비교: 환율 중심의 안정화 정책의 검토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 05-14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 율·왕윤중·오쿠다 사토루·정재완
-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
-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정승호·윤정혁·이상민
-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적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정성춘
-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동용승·이재영·정형곤·이종운·홍익표
-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비판과 평가 / 임혜준·유재원 공편저
-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김종혁

■ 지역연구

-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박복영
- 04-02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 김흥중·이철원·김병연

■ Policy Analyses

-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Hongshik Lee, and Junkyu Lee
- 05-03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 05-05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 Doo Yong Yang and Yung Chul Pa가

■ 정책토론회시리즈

-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홍수연
-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찬 외
- 04-02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 김원호·권기수·김진오
- 04-03 ASEAN + 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 04-04 폴란드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폴란드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4-05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 김홍중·김균태
- 04-06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 강준구·박지현
- 04-07 수입선 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김정곤·박혜리
- 04-08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박지현
- 04-09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강준구
-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 엄부영·강정실
- 04-11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
-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 최낙균 외

-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강정실
- 05-03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외
-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 김홍종 · 김균태 · 오형범 · 나수엽 · 하유정
-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권식
- 05-07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 송영관
- 05-08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창수 · 김우영 · 박순찬

■ 세미나자료모음

- 04-01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oon H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2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oon-K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3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 Yonghyup Oh, Deok Ryong Yoon, and Thomas D. Willett
-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Reconsid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홍종 편

■ APEC Study Series

- 04-01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 Assessment and New Challenges / Seok-young Choi
-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 OECD Study Series

-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 Doo-Yull Choi

■ Discussion Papers

-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ch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ng Yoon
- 04-02 A Critical Assessment of India's Banking Sector Reform / Tae Hwan Yoo
- 04-03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 Young-Sun Lee and Deok Ryong Yoon
-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 Working Papers

-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rphanides
-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4-03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 Sungil Bae and Tae Hwan Yoo
- 04-04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4-05 Expans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4-06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4-07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 Wanjoong Kim and Terrence Kinal
- 04-0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vidence from Geographical Features of International Consumption Risk Sharing / Yonghyup Oh
- 04-09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 Jong-Woon Lee
- 04-10 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 04-11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FTA Partners / Chan-Hyun Sohn and Hyun-Hoon Lee
- 04-1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ast Asia / Soon-Chan Park, Hongshik Lee, and Mikyung Yun
- 04-13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 Sung Jin Kang and Hongshik Lee

- 04-14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Zhaoyong Zhang
-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 Deok Ryong Yoon and Gongpil Choi
-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 Yonghyup Oh, Sophie Saglio, and Jacques Mazier
-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 Vivek Jayakumar, Tae Hwan Yoo, and Yoon Jung Choi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4-01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 Zhaoyong ZHANG
- 04-02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 Richard E. Baldwin
- 04-03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 Kiyotaka Sato
- 04-04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 04-05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Lee-in Chen Chiu
- 04-06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 Yin-Wong Cheung
- 04-07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CHEN Hong
-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 Françoise NICOLAS
-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 Sumio Kuribayashi
-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 James H. Chan-Lee
-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 임 명
-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Simon Hix and Hae-Won Jun

■ 지역리포트

- 04-01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박영호
-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철원
-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박영호
-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 박영곤
-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영 경제협력의 과제 / 김홍중·김균태
- 04-06 일·ASEAN FTA 추진현황과 전망 / 권경덕·김은지
-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이재영·신현준·김선영
-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배희연
-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獨 경제관계 / 김홍중·김균태·Bernhard Seliger
-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성춘

■ 지역연구회시리즈

-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김은경·김홍중
-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 김홍중
-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이종윤
-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장형수·정여천
-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 박승찬
-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미무라 미쓰히로
-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 유장희·김은미

■ 단행본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 이철원·정후영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 이경태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최낙균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강준구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김관호·원신희
-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이성봉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 이경태 편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조명철 편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 최낙균·윤창인·송유철·이성봉·김준동·양준석·이종화·손찬현·강문성·박순찬·윤미경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rean Crisis and Recovery / 김세직·David T. Coe eds.
-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 KOPEC·KIEP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안충영 편
- Toward a Transparent and Globalized Economy / 안충영 편
-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 김원호 편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2003/04 북한경제백서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 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종·손병해 공편저
- 한·멕시코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비전과 협력과제 / 한·멕시코 21세기 위원회

李彰洙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호주국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장(現, E-mail: cs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WTO 농산물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미곡을 중심으로』 (2005)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공저, 2004) 외

朴芝賢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jh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공저, 2005)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2004) 외

金鎔澤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yongkim@krei.re.kr)

著書 및 論文

『농업 중심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의 개발』 (2005)

『농림투융자 성과분석 및 향후 투융자 방향에 관한 연구』 (2003) 외

정책연구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05년 12월 20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1226-0 94320

정가 10,000원

89-322-1072-1(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역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B)발간자료, 전문가포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China-Japan-Korea FTA: Effects 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Chang-Soo Lee, Ji-Hyun Park and Yong-Taek Kim

본 연구는 FTA의 효과로 특화전개와 함께 무역량 증가를 전제하고 농업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째 FTA로 무역장벽에 의해 지연되었던 산업특화 혹은 품목특화가 빠르게 발생함으로써 한국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인지의 여부, 둘째 한·중·일 FTA의 농업개방 효과와 한·중 FTA 및 한·일 FTA 개별효과의 유사성 또는 차별성 여부, 셋째 한·중·일 FTA 체결시 민감품목의 선정 등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총 7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



ISBN 89-322-1226-0
89-322-1072-1 (세트)

정가 10,000원